제 2 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 The 2nd Single Moms'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새롭게 쓰는 한국의 모성권과 아동인권: 입양을 넘어 싱글맘가족 권리 보호로! Abandoning Discrimination, Adopting Mothers' and Children's Rights

> 2012_5_11 (금) 10:00~17:0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Friday, May 11, 2012 10:00 - 17:00 National Assembly Meeting Hall

프로그램

- 09:30~10:00 등록
- 10:00~10:20 환영사
- 10:20~11:00 축사 토크쇼 사 회: 김도현(뿌리의집 원장) 게스트: 최영희(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인재근(19 대 국회의원 당선자) 김영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회장) 조 형(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11:00~11:05 동영상 축사 및 축사 낭독 장 저마틴(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 바바라 마트라(유럽연합 여성권리와 성평등위원회 부의장)
- 11:05~11:30 금줄 세리머니 하나 크리스프(호주 입양인 성악가) 공연(피아노 연주: 유현경) 금줄 걸기 퍼포먼스-고수윤(미국입양인)/감은남(미혼모) 가야금 연주-장영주(중앙국악관현악단 단원)
- 11:30~12:00 기조연설: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CEDAW)과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비춰본 해외입양-국제기준과 유럽의 경우 존 사가(유럽연합 정치 분석가)
 - 는 사가(규입건업 성사 군식
- 12:00~12:30 기자회견
- 12:30~13:30 점심 식사(식사 제공)
- 13:30~14:40 학술세션: 새롭게 쓰는 모성권과 아동인권-미혼모와 그 자녀를 중심으로 사회: 박영미(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표: 오정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양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4:40~16:30 〈살아있는 책, 인간도서관〉대담 사회: 오한숙희(여성학자)
 - 패널: 김선영, 최형숙(양육미혼모)
 - 박희경(아이를 입양보낸 어머니)
 - 로라 클런더, 마이클 문(해외입양인)
- 16:30 함께 쓰는 미혼모와 아동의 권리 선언
- 16:40 폐회

Programme

Activity	Content
09:30-10:00	On-site registration (Refreshments served)
10:00-10:20	Hosts' welcome
10:20-11:00	Congratulatory talk show *Emee Kim Do-hyun *Guest: Choi Young-hee, Chair of National Assembly Women's and Family Committee ; In Jae-geun,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 Kim Young-ja, Korean Women Entrepreneurs Association representative ; Cho Hyeong, Women's foundation Chair ; Kwon Mi-hyeok, Korean Women United Representative
	*Video greetings from Jean Zermatten, Chair of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1:05-11:30	Geumjul Ceremony Overseas adoptee Hana Crisp(Australia), soprano, and Woo Hyun-kyung, piano, musical performance Hanging the geumjul performance Su-Yoon Ko(adoptee, U.S.) Kam Eun-nam(mother) Jang Young-ju, gayageum
11:30-12:00	Keynote speech CEDAW and UNCRC : International Standards for women's and
12:00-12:30	children's rights, John Sagar, EU Political Analyst Press conference
12:30-13:30	Lunch
13:30-14:40	Academic Session Rewriting mothers' and children's rights with mothers and children at the center. Moderator: Park Young-mee. Past Community Representative of Korean Women United Presenters: Prof. Oh Jeong-soo (Chungnam University Social Welfare Dept.) Dr. Lee Mijeong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Prof. Lee Yang-hee (Seonggyoongwan University)

14:40~16:30	Human Library talk show
	*Emcee: Oh Han Sook-hee(feminist scholar)
	*Panel : Child-rearing unwed mothers
	Choi Hyoung-sook and Kim Seon-yeong
	Mother who lost child to adoption, Park Hee-Kyeong
	Overseas adoptees Michael Moon and Laura Klunder(U.S.)
16:30	Declaration of Unwed Mothers' Rights and Solidarity Statem ent
16:40	Adjournment

목차 Contents

환영사	제인 정 트렌카(TRACK 대표) 09	
	목경화(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13	
Welcome Speech	Jane Jeong Trenka(President of TRACK) 11	
	Mok Kyung-hwa(President of KUMFA) 14	
동영상 축사	장 저마틴(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15	
축사 낭독	바바라 마트라(유럽의회 산하 여성권리와 성평등위원회 부의장) 16	
Congratulatory address	Jean Zermatten	
	(Chair of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15	
	Barbara Matera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Vice-Chair of the Committee	
	on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17	
금줄 세리머니 낭독문	제인 정 트렌카(TRACK 대표) 18	
	감은남(한국미혼모가족협회 울산지부 대표) 23	
Recitation during Gold Thread ceremony Jane Jeong Trenka(President of TRACK) 20		
	Gam Eun-nam(President of Ulsan KUMFA) 24	
기조연설문	존 사가(유럽연합 정치분석관) 25	
Keynote Speech	John Sagar(EU Political Analyst) 27	
학술세션	오정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0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3	
Session	Prof. Oh Jung-soo(Chungnam University Social Welfare Dept.) 36	
	Dr. Lee Mi-jeong(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70	
인간도서관	최형숙(양육미혼모) 78	
	김선영(양육미혼모) 85	

	로라 클런더(해외입양인) 99
	마이클 문(해외입양인) 101
Human Library	Choi Hyung-sook(Child-rearing unwed mothers) 81
	Kim Sungyoung(Child-rearing unwed mothers) 90
	Park Hee-kyung(Pseudonym, Mother who lost child to adoption) 97
	Laura Klunder(Overseas adoptee) 100
	Michael Moon(Overseas adoptee) 102

부록

김호수(Kim Ho-su)- 한국사회의 해외 입양과 친모에 관한 보고 104

2012년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 공동 NGO 제출 보고서 114

Appendix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Periodic Review 130

언론보도자료 Media 146

'제 2 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새롭게 쓰는 한국의 모성권과 아동 인권: 입양을 넘어 싱글맘가족 권리 보호로!'에 여러분 모두를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바람은, 오늘 이 회의실을 떠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깨닫고 한국 미혼모들과 그 자녀들의 인권, 경제권, 사회권, 시민권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2005 년 보건복지부에서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해외입양 프로그램의 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건복지부가 내린 답은 "국내입양을 촉진시키자."였습니다. 그 결과, 2006 년부터 매년 5월 11 일마다 정부는 '입양의 날'을 기념하느라 당일 하루에 약 1 억 원의 돈을 썼습니다.

모든 입양은 원가족으로부터 아이들을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011 년에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88.4%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국내입양아동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93.8%가 미혼모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 기록이 남아있는 총 입양인 2464 명 중 202 명만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복하자면, 전체 입양인 중에서 오직 8%만이 미혼모 외의 가족형태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미혼모들이 적게나마 힘을 부여받고 자신들의 자녀를 키울 수 있었다면 92%는 입양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입양인의 날'을 만들어 입양인 그 자체를 축복하고 우리 입양인 커뮤니티를 사회적으로 더 잘 이해시키고자 했다면 아마도 우리 해외입양인들은 그들과 함께 5 월 11 일을 입양의 날로 기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양의 날은 오히려 입양의 실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를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입양은 강요, 압박, 적절한 지원의 부족과 함께 그간 보건복지부의 무관심의 결과 해결되지 못한 심각한 차별을 기반으로, 구조적으로 미혼모와 아이들이 분리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입양기관의 민간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 침해와 밀접하게 연결된 관행을 지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동권리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같이 국가가 이미 승인한 바 있는 협정들과 인권에 대한 인식의 틀보다,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에 기반해 국가가 입양정책을 추진하다니, 당혹스러울 만큼 단순한 접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해외입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보다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아이들의 가족을 지원하자."입니다. 만약 가족 분리에 취약한 많은 아동들이 싱글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싱글맘 가족을 지원합시다.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은, "미혼모를 돕자." 또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하향식 자선(top-down charity)의 수혜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류와 시민에 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안에서의 동등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닌 권리와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미혼모 문제'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단어입니다. 사회가 미혼모를 대하는 방식이 문제이지, 미혼모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중 내내 미혼모들의 친구이자 동료, 투쟁의 지지자로 함께하기로 다짐합시다. 우리 모두가 오늘, 내주, 내달, 내년에도 함께하며 서로의 존재로부터 격려받고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태어난 한국 가족으로부터 해외로 입양 보내진 다섯 아이들 중 한 명으로서, 저는 우리를 떠나보낸 정부의 중심부인 이곳 국회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국 미혼모들과의 연대 속에서, 흩어진 모든 입양인 가족들의 재회를 꿈꾸며 지금 이 자리에서 제 2 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Welcome

Jane Jeong Trenka(President of TRACK)

It is my great honor to welcome you all to "The Second Annual Single Moms' Day Conference: Abandoning Discrimination, Adopting Mothers' and Children's Rights." It is my hope that by the time we leave this room today, we will all have learned something and will have recommitted ourselves to the ongoing struggle for the human, economic, social, and civil rights of Korean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Whe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ade the policy to promote domestic adoption in 2005, they asked the question, "How can we decrease the numbers of our overseas adoption program?" The answer was, "Let's promote domestic adoption." Therefore, each May 11 since 2006, the government has spent about 100,000,000 won in one day to celebrate "Adoption Day."

Every adoption begins with the separation of a child from his or her original family. In 2011, 88.4% of all international adoptees from Korea came from unwed mothers. Of documented domestic adoptees, 93.8% came from unwed mothers. In other words, of the total number of documented adoptees, only 202 out of 2,464 did not come from unwed mothers. Let me repeat: only 8% of all adoptees come from a source other than unwed mothers. In other words, adoption would not be "needed" in 92% of all cases if single moms were simply empowered and enabled to raise their own kids.

We might celebrate May 11 along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f they had declared "Adoptee Day" to celebrate adoptees themselves, and to spread social understanding of our community. But rather, Adoption Day is a day that celebrates the practice of adoption itself. We cannot abide by this because this practice in Korea is systemically tied to the practice of separating unwed mothers from their children by force, coercion, and lack of reasonable support, as well as extreme discrimination th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done absolutely nothing to alleviate. It is inappropriate to promote the private enterprise of adoption agencies when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the social welfare of their citizens. It is wrong to support a practice that is inherently linked to the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It is embarrassingly simplistic to base an adoption policy on the number of bodies exiting the country rather than human rights frameworks and treaties that the country has already ratified. such a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ked, "How can we decrease international adoption?" I think that's the wrong question. I think a better question is "How can we best care for children?" And the obvious answer to this question is, "Support their families." If many children who are vulnerable to family separation are born to single unwed moms, then let's support single mom families.

What I do not want to say is, "Let's help unwed mothers" or "Please help those who were born to unwed mothers." That's because nobody wants to be the recipient of top-down charity. What would be welcome is equal partnership in the struggle to realize our full human and civil rights. Rights. Justice. Not charity.

The "unwed mother problem" is a misnomer. It is not unwed mothers who are a problem, but the way that society treats them that is a problem. But we can change that. Let's all pledge to join unwed mothers year-round as friends, colleagues, and allies in the struggle. Let us all be strengthened and inspired by each other's presence today, next week, next month, and next year.

As one of five children sent overseas for adoption from my Korean family, I am thankful beyond measure to be here, in heart of the government that sent us all away. In solidarity with Korean unwed mothers and with the dream of reunion for all the scattered members of adoptees' family, I hereby open The Second Annual Single Moms' Day.

목경화(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제 2 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역사적인 행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제까지 혼외의 임신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미혼모들에게 낙태를 권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아시는 분은 입양을 권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고, 혼자서 아이 키우기가 어렵긴 하지만 열심히 키우라고, 우리도 돕겠다고 이야기해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를 혼자서 키우겠다고 하면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아이 인생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 아빠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등등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회가 바라는 것은 낙태 아니면 입양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새롭게 쓰는 한국의 모성권과 아동 인권: 입양을 넘어 싱글맘가족 권리 보호로!'에서는 미혼모가족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모성권과 아동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퍼런스를 주관해주신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님,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인 모임(TRACK) 제인 정 트렌카 외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해외입양인 및 자원봉사자, 미혼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Welcoming Speech

Mok Kyung-hwa (President of Korea Unmarried Mother and Family Association)

Dear Ladies and Gentlemen,

I welcome all of you to the 2nd Single Moms' Day International Conference. It is my honor to be a part of this historic event with you.

Until now, most people have suggested abortion or giving their child for adoption to an unmarried pregnant woman. No one has said, "congratulations!" or "I will also help you during this time." If single mothers try to raise a child by herself, most people discourage her by saying, "Why do you choose a hard life?" "You should think of the child's future." "Why do you ruin the child's father's future if you have this baby?" Korean society forces us to choose either abortion or adoption.

At this conference, we will review and think about the rights of the mother and the rights of the child and how we, as a society, can protect the single mothers' right to preserve the famil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am deeply grateful to Pastor Kim Do-Hyun of KoRoot, Jane Joeng Trenka of TRACK, numerous overseas adoptees, volunteers, and all the single mothers, who made it possible to hold this conference today.

Thank you.

동영상 축사

장 저마틴(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제 2 회 싱글맘의 날을 맞아 현대 과학기술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이자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한국과 세계의 싱글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싱글맘은 일반적으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고 그로 인해 그 자녀들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이런 엄마, 10 대 엄마를 포함한 젊은 엄마들을 위해 많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0 대 엄마는 엄마이자 아동으로서 우리의 보호와 주의를 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가 아주 성공적이고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Congratulatory Address

Jean Zermatten (Chair of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lid)

It's a very great honor and pleasure to be with you through technology for the 2nd Single Moms' Day in Korea.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very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of single mothers in Korea and in the world in general. Single mothers have very difficult circumstances in which to live in general, and the risks towards the children are very important. So our attention is recommended for this mother, and even when they are adolescent, young mothers. As adolescents, they are also children, and they deserve all of our protection, all of our attention. I wish you all a very good seminar, success, and very useful work.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바바라 마트라(유럽연합 여성권리와 성평등 위원회 부의장)

제 2 회 싱글맘의 날을 맞아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럽연합 인구 중 5%는 싱글맘입니다. 에스토니아와 라티비아를 포함한 몇몇 유럽연함회국은 싱글맘이 인구의 9%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종종 싱글맘이 무책임한 소녀라고 잘못 인식되기도 합니다만 사실 싱글맘의 85%는 25세부터 64세 사이입니다.

2011 년 9 월 29 일, 유럽연합 여성권과 성평등 위원회는 건강, 사회에서의 소외, 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싱글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싱글맘들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국가의 싱글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다양한 협정들이 이 보고서의 기초를 이루며 미래를 위한 정책적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한국과 유럽연합의 싱글맘들에게 동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제2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맺어지길 기원합니다.

Report (2011/2049(INI)) online at: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REPORT&reference=A7-2011-0317&language=EN

Congratulatory Speech

Barbara Matera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Vice-Chair of the Committee on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It is my pleasure to extend warm greetings to you South Korea on the occasion of the 2nd Single Moms' Day.

Five per cent of the female population in the EU is made up of single mothers, and in some member states including Estonia and Latvia, this percentage is as high as nine per cent. Single mothers are often falsely stigmatised as irresponsible young girls; in fact, 85 per cent of them are aged between 25 and 64.

Recognizing the need for government intervention on behalf of single mothers who face obstacles in terms of health, social exclusion, and employment, the EU Committee on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adopted a report on the situation of single mothers on September 29, 2011. The report outlines the general situation of single mothers in the EU, various agreements that were considered as a basis for the report, such as CEDAW and the UN CRC,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In the spirit of sharing, I hope that this report may be useful to the single mothers in Korea as well as the EU. I send my best wishes for a successful 2nd Single Moms' Day.

Report (2011/2049(INI)) online at: http://www.europarl.europa.eu/sides/getDoc.do?type=REPORT&reference=A7-2011-0317&language=EN

제인 정 트렌카(TRACK 대표)

금줄은 당신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생일이란 것이, 선물을 받고 케이크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생일을 축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여권에 있는 생일이 진짜 제가 태어난 날인지 아닌지조차 모릅니다.

입양기관은 제가 발견되었던 파출소가 이사를 갔고 그 당시 모든 기록들이 분실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거리의 주소가 바뀌었다고 하고 저의 어머니가 미혼이었다고 하는데 부모님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난 날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날은 제가 아는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날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곤 제 배꼽뿐입니다. 입양기관이 말하길 제가 발견되었을 때 배꼽에 탯줄이 붙어있었고 그것을 보고 제 생일을 추측했다고 합니다.

어림잡은 제 생일에 제 친구들은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삼겹살과 소주를 먹고 홍대 클럽에 가서 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생일은 축하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제 생일은 생각을 하는 날입니다. 요즘 저는 제 생일에 걷습니다.

생일 아침에, 저는 가장 편한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걷기 시작합니다. 비록 제가 태어난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을 찾기 위해 걷습니다. 저는 어디서 어머니를 찾아야 할지 알려주는 어머니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버스를 타고 아무 정류장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식당 아줌마가 요리를 하고 테이블을 닦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곤 이 아줌마가 혹시 내 엄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 엄마인지 알아볼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주문한 음식을 먹는 시간 동안 이 식당이 나의 어머니의 부엌이고 제 일상적 존재에 너무 익숙해져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저를 내버려두는 이 아줌마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아줌마와 함께 TV 를 봅니다. 잠시 후 저는 밖으로 나와 다시 걷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붐비는 지하철을 탑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젊고 아리따운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러고는 그 아기가 저이고 젊고 아리따운 여성이 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모유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제 어머니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어 쉽니다. 저는 이미 태어났고 어머니의 몸 밖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만들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성인이 된 뒤에도 제가 태어났던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이고, 제가 아이를 가지면 손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만 이 여성은 제 또래의 여성이고 그녀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녀의 아이가 아닙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문이 열리고, 저는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저는 계단을 걸어 올라와 거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생일에 제 어머니 또한 저를 생각하며 걷고 있을 거라 상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저와 어머니의 몸이 똑같은 주기로 울리는 종(bell)처럼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그 소리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저와 어머니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제가 태어난 곳에서 서로를 향해 걸으며 만날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걸어갈 때, 저는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걸어가 들녘과 강을 지나 별이 총총한 밤으로 갈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농부의 작은 오두막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태어난 날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날 어머니의 가족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머니는 부도덕하고 나쁜 여자로 그리고 저는 저의 어머니 말고는 어느 누구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남자의 쓸모없는 후손으로 여겨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겨울에 태어났고, 당시 어머니는 양수가 터져 치마의 뒤쪽이 젖은 채로 그녀가 사는 마을에서 강을 향해 걸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모의 집에 갔으나 이모는 이모부가 곧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하며 제 어머니를 폐가가 되어버린 오두막에 숨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치 없는 아이를 출산하는 부정한 여자의 산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어머니는 제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아기. 이 세상에서 저는 어머니를 사랑한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오두막에서 이틀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저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또다시 보석같이 맑은 밤이 찾아왔고 어머니는 제가 추위에 죽을 거라는 두려움에 점점 미쳐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결심, 아니 생존을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목도리로 단단히 싸맨 다음 이웃마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걸음을 재촉하기 위해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별을 큰 소리로 헤어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어머니는 한밤중에 저를 파출소 문 옆에 두고, 제 쪽을 보기 위해 길 건너편의 담 뒤에 숨었습니다. 저는 곧 울음을 터뜨렸고 한 경찰관이 나와 저를 파출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제가 태어난 날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죠. 할머니가 제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엄마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았고 제가 태어났고 당신이 엄마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금줄도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마와 나를 위한 금줄을 걸으려 합니다. 금줄의 한쪽 끝은 제가 걷기 시작하는 곳이고 다른 쪽 끝은 어머니가 걷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우리 금줄의 한가운데서 만나서 엄마와 딸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엄마예요!

우리가 작은 오두막에서 만났을 때,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했을 테지요. "넌 나를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지만 나는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안단다. 나는 그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데도 갈 곳 없는 그런 여자일 뿐이야"

저는 당신께 이렇게 답할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말은 틀렸어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어요. 당신보다 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한순간도 나의 엄마가 되기를 그치지 않은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The Geumjul is a Path to You

Script by Jane Jeong Trenka

From the time that I have understood that the meaning of a birthday is more than receiving gifts and eating cake, I have never liked to celebrate my birthday. Actually, I don't even know if my passport birthday is the day I was really born.

The adoption agency says that the police box where I was found has moved, and all the records from that time were lost. They say that the addresses of the streets have changed. My parents' names are unknown, though they say my mother was unmarried.

So I have no story of the day I was born; it is a day that no one I know remembers. All I have remaining of that day is my navel. They say that my umbilical cord was still attached when I was found, so that is how they estimated my birthday.

My estimated birthday. My friends want to take me out on that day. They want to eat samgyupsal and soju together, then go clubbing in Hongdae. But for me, my birthday is a day not for celebration. It's a day for reflection. These days, I spend my birthday walking.

In the morning, I put on my most comfortable shoes. I lock the door behind me, and just start walking. I am walking to find the place where I was born, even though I don't know exactly where it is. I don't listen to music because I am listening for my mother's whisper, telling me where to find her.

Sometimes I ride a bus and get off at any stop. I go inside a restaurant and order a meal, and I watch the ajumma cooking and wiping tables. I wonder if she is my mother. But there is no sign of recognition. I watch TV with the ajumma while I eat, pretending for a few minutes that this little restaurant is my mother's kitchen, and this ajumma is my mother, ignoring me now because she is so used to my daily presence. After awhile, I go outside again, and walk.

I take a crowded subway. I let a pretty young woman carrying her baby take my seat. I pretend that this baby is me, and the pretty young woman is my mother. My head is resting on her chest, where I can hear her heart, and I can smell the traces of her milk from the last time I fed. Even though I have already been born and live outside my mother, she is still making me. How amazing my mother is. She will tell me stories of the day I was born until I am an adult, and when I have my own babies, she will tell her grandchildren the stories again.

I like to imagine this, but this woman is a woman my own age. She is not my mother. And I am not her baby. At the next stop, the door opens, and I get off the subway. I go up the stairs, onto the street, and start walking.

I like to imagine that on the day of my birth, my mother is also thinking of me, and she is also walking. I like to imagine that our bodies are ringing like bells, at the same frequency, and we just have to listen to the song coming from our own bodies. If we find the song that matches, we will one day walk to each other, meeting at the place where I was born.

When I walk to my mother, I might walk out of Seoul into the countryside, past fields and rivers and into a starry night. My mother will be waiting for me, inside a small farmer's shack, and she will tell me all about the day that I was born.

She will tell me that on that day, she was not allowed inside her family's home, nor anyone else's home. She was considered to be an immoral and bad woman. I was considered to be the worthless offspring of a man in whom no one could find any value, except my mother, in the times when he was around.

She will tell me that on the winter day I was born, she had walked up the river from her village, the back of her skirt soaking wet from her water that had broken. She came to the home of her aunt. Her aunt said her husband would be home soon, so she hid my mother in a farmer's shack that had been abandoned. No one wants to see the labor pains of a corrupted woman giving birth to a worthless child. But when my mother saw my face for the first time, she knew I was a pretty and lovable baby. Her own precious baby. In the whole world, I was the only person who loved her. I did; I adored her. She was my whole world.

We stayed together in the shack for two days, she holding me next to her body to keep me warm. Another crystal clear night came, and gradually she became crazy from fear that I would die from the cold. Then, she did not so much make a decision as an act of survival.

She swaddled me in her scarf and started walking toward the next village. She counted the stars out loud with each step, to force herself to keep walking. One step, two steps, three. Under the blanket of night, she placed me near the door of a police box, and then hid herself behind a wall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to watch. It was not long before I cried. A policeman came out, then carried me inside.

Dear umma, on the day that I was born, no one was happy. No grandmother cut my umbilical cord. No grandfather gave me a name. No one made miyeok guk for you. No one hung a geumjul for me, announcing that I exist, declaring your motherhood.

So I will now hang a geumjul for both of us. One end is the place where I started walking, and the other is the place where you started walking. Let us meet in the middle of this geumjul, and together give birth to a new relationship as mother and daughter. I exist! I am your daughter! And you are my beloved mother!

When we meet in the little shack, you might say to me, "You were the only person who loved me, but I knew that someone better than me could love you. I was just a woman with nothing to give, and nowhere to go."

I will reply to you, "No, umma you are wrong. No one is better than you. No one could love me more than you. And how much I still love you – you who have never stopped being my mother."

금줄 세리머니 낭독문

아기가 태어났어요!

감은남(한국미혼모가족협회 울산지부 대표)

금줄을 아시나요? 한국의 풍습 중에는 아기를 낳으면 금줄을 다는 풍습이 있습니다, 금줄이란 마을 사람들과 외부 사람들이 성스러운 산고에 접근해서 아이와 산모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대문기둥에 쳐두었던 금기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새끼줄에 고추. 숯을 달고 딸이 태어나면 숯, 미역, 솔잎 등을 달아두었다고 합니다. 금줄의 또 다른 의미는 생명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금줄을 다는 것도 여의치 않고 시대적 변화 때문에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느 땐가 병원에서 조그만 액자에 금줄을 걸어 병실 문에 단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탄생은 만인에게 축복받아 마땅한 일인데도 축하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금줄 액자 한번 제대로 걸어 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임신 사실을 알고서부터 괴로움에 살아온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출산할 때도 누가 알까? 누가 묻지나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마음 때문에 아이한테 웃음 한번 제대로 편히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변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미스맘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린 또 하나의 가족이지 절대 숨겨야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출산을 앞둔 미스맘들은 아이를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축복 받아야 할 생명탄생의 순간을 숨기지도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을 위해 떳떳하게 금줄을 내걸 날이 오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어느새 훌쩍 자라 20 개월을 넘긴 딸아이를 위해 전 오늘도 열심히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A baby was born!

Do you know what a geumjul is?

According to Korean custom, when moms deliver a baby, people hang a straw rope.

What is the meaning of the geumjul?

Villagers and outsiders approach a holy delivery room and hang a straw rope across a gate to mark the interior as taboo to outsiders and prevent evil spirits from entering.

The rope is decorated with peppers, charcoal and straw to indicate that the baby is a boy, and with charcoal, seaweed and pine needles to show that it is a girl. It is a kind of celebration for birth.

Nowadays, the geumjul has mostly gone due to the changing times. One day, I saw a geumjul hanging on the door of an obstetrics clinic.

Birth should be celebrated by people, but some babies are not celebrated by people. I had a hard time when I discovered I was pregnant. When I was delivering my baby, I didn't have a great big smile for my baby because of my foolish mind.

But things are changing. Confident single mothers are speaking with one voice. They are making efforts to make their babies happy.

Single mothers are also a part of families, not to be hidden from society. I hope that pregnant single moms never give up their babies. They should celebrate birth. For our children's future, single mothers should make efforts every day to hang a straw rope, the geumjul.

Today, I am also going out into the unfriendly world, for my 20-month-old daughter.

존 사가(유럽연합 정치분석관)

유럽연합과 한국에는 공통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양성평등, 아동권리, 포용적인 사회 증진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통가치 중 일부일 것 입니다. 나라마다 고유한 구체적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제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가치를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우리는 서로의 경험과 실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공통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연합의 한부모 정책 상황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유럽연합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제, 즉 어떻게 하면 한부모와 그 자녀들이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도움을 확실히 받도록 할 수 있을까를 둘러싼 몇몇 논의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은 2011 년 유럽의회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구속력이 없는 결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한부모는 정확하게 집단화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종종 인구통계학에서 간과됩니다. 한부모가 되는 이유가 이혼, 별거, 동거 등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부모 연령집단은 40 년 정도 됩니다. 모든 사회경제적 배경에 걸쳐 한부모가 존재합니다. 어떤 때는 한부모 집단이 임시적 현상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배우자를 찾으면 한부모 생활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 다른 정책은 여러 형태의 한부모들에게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종종 특정한 한부모의 권리를 위해 로비하는 집단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약 3 분의 1 은 미혼모 자녀입니다. 몇몇 유럽 국가는 아동의 절반이 미혼모 자녀입니다. 한부모의 90%가 여성입니다. 유럽연합 각 국가는 한부모를 각각 달리 인식하고 다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지중해 국가와 남유럽 국가는 한부모의 아동 양육에 대가족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는, 강력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정부가 싱글맘에게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부와 동유럽에선 위의 두 방식이 혼재돼 있습니다.

유럽여성의 5%는 싱글맘입니다. 2030 년까지는 한부모가 지금보다 22-29%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부모의 증가가 큰 흐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글맘은 종종 단순하게 무책임한 십대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한부모의 85%는 25 에서 64 세입니다. 한창 일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2006 년, 유럽연합에서 12%의 양부모 아동이 빈곤위험에 처했던 것에 반해 32%의 한부모 아동이 빈곤위험에 처했었습니다. 유럽의 싱글맘은 아동을 양육하는 것과 빛을 지는 것 사이의 선택에 놓이기도 합니다. 싱글맘의 실업률이 높고, 그래서 빈곤은 싱글맘의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싱글맘 아동은 좋은 교육을 받을 자원이 적고, 그 결과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얻을 기회가 적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양부모의 엄마보다 싱글맘의 건강 상태가 통계적으로 더 안 좋습니다.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싱글맘은 양부모보다 더욱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통계적으로, 유럽에서 싱글맘은 기혼여성보다 교육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싱글맘이 얻을 수 있는 직무 대다수가 시간제 근로이고 급여가 낮습니다. 이것은 싱글맘 아동이 균형 잡힌 생활스타일을 갖기 힘들게 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어렵게 합니다. 유럽연합은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려고 할까요?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주도해야 할 것은 빈곤 타파입니다. 정부는 전체적으로 점점 더 경제성장 전략과 맞추어 조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현재의 조율 프로그램으로는 유럽 2020 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특별히 빈곤을 줄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유럽 2020 의 핵심 목표는 2020 년까지 빈곤층과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의 수를 2 천만 명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유럽연합협의회의 유럽위원회는 곧 유럽연합의 정부들과 유럽의회에게 아동빈곤을 타파해야 한다고 권고할 것입니다. 유럽위원회는 아동양육, 주택, 교육에 대한 원칙과 지표를 제안할 것입니다. 한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고 빈곤과 사회적 소외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알맞은 아동 양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지난 해 유럽의회는 구속력이 없는 결의를 통해 한부모와 그 아동의 기회를 향상시킬 방법에 대한 많은 권고를 했습니다. 이 권고는 모든 기관과 비공식적 조직이 싱글맘을 위해 협력하여 일하도록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기관과 조직들이 싱글맘에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싱글맘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는 권고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과 전화 헬프라인을 통해 싱글맘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모범 사례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싱글맘이 고립감을 덜 느끼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부모훈련 과정의 발전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과정에선 싱글맘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을 가르칩니다. 동시에 아동이 균형 잡힌 삶의 리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유럽의회는 싱글맘, 특별히 젊은 싱글맘들이 종종 임신 후 교육 받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싱글맘들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맘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 주면 결국 싱글맘들은 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서 좋은 직장을 구할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고 동시에 재정적 독립이 가능해집니다. 유럽의회의원들은 보육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회원 국가들에게 한부모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목적을 둔 정책을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엔 한부모를 위한 지원금, 세금감면 등의 적절한 입법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부모도 자녀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가정친화적인 근로 조건, 예를 들면, 근무시간의 유연성, 재택근무, 보육시설 및 육아실 제공 등을 통해 직장과 가정생활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하고 여기에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성글맘을 위한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조장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아버지의 참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동 양육 일을 아버지도 함께 나누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아동양육에 아버지가 거의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권고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발표는 유럽과 한국의 한부모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유사성과 차이를 보여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한 몇몇 제안은 대체로 다른 나라들에게 적용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발표가 오늘 토론에 어떤 결실을 맺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표는 제 개인적 의견으로 유럽연합의 공식적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Keynote Speech

John Sagar(EU Political Analyst)

The EU and Korea have many common values. Promoting gender equality, the rights of the child and social inclusion are part of these common values. Each country has its own specific circumstances. There is no one-fits all solution. I am not able to say what would be appropriate in Korea's situation. But as partners with common values, we can add value to each others efforts by sharing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I will therefore try to give an overview of single parenthood in the European Union. I will then describe some of the ideas that were discussed in the European Parliament last year on how to ensure that single parents and their children have full access to the opportunities and benefits of an inclusive society.

Much of my description comes from the discussion that surrounded a nonbinding resolu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in 2011.

Single parenthood is often an overlooked demographic category since it is actually a very difficult group to precise. It may come about as a result of divorce, separation or never having been married. It encompasses age groups spanning forty years. It includes all socioeconomic backgrounds. It is sometimes seen as a temporary phenomenon until the single parent finds a new partner. Different polices affect these different kinds of single parents in differing ways. There is therefore often no specific lobby group working for single parents' rights.

In Europe about 1 in three children are born into unmarried households. In some countries this figure is 1 in 2. Nine out of ten single parents are women.

In the European Union there are different perceptions and polices towards single parenthood in each Member State. To make a generalization, in many Mediterranean and southern Member States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xtended family will help in the raising of single parent children on a voluntary basis without reimbursement. In the northern and Nordic states, strong government welfare systems are in place to offer single mothers benefits and social assistance polic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Member States there is a mix of styles.

Five percent of European women are single mothers. By 2030 there will be between 22% and 29% more single parents than now. The increase in single

parenthood is therefore part of a very large trend. Single motherhood is often falsely stigmatized as consisting of only irresponsible teenagers. In truth, 85% of all single parents in the EU are single mothers between the ages of 25 and 64 – the key working age.

In 2006, 32% of single parent households in the EU were at risk of poverty as opposed to 12% of couples with children. In addition to the gender pay gap, European single mothers have the difficult choice between taking on debt and caring for their children. In addition to high unemployment rates for single mothers, the cyclical nature of poverty strongly affects the dependent children of single mothers. These children have fewer resources to succeed in education thus creating fewer opportunities to enter the workforce at a competitive level.

Statistics would suggest that the health status of single mothers is also statistically more unstable than those of mothers in dual parent families. Single mothers are under more stress since they singlehandedly perform the tasks normally performed by two parents.

Statistically, single mothers throughout Europe are less educated than their married counterparts. This hindrance is especially burdensome as it prevents entry to the workplace and the acquisition of experience needed to gain a better job later in life. Moreover, many of the jobs available for Single mothers are only part time ands of the underpaid variety making it very difficult to ensure a balanced life style for their children or to move up within the working world.

How is the European Union reacting to this situation. First, I have to say that social issues of this kind, in particular the elimination of poverty are primarily the role of national governments.

That having been said, the national governments increasingly use coordination mechanisms in regard to overall economic growth strategies. The current coordination programme – Europe 2020 specifically includes the goal of reduc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 key aim of Europe 2020 is to reduce the number of or people living at risk of poverty or social exclusion in the EU by 20 million people by 2020.

The European Commission will soon issue recommendations to EU Member State governments in the Council of the EU and to the European Parliament on ways to combat child poverty in the EU. The Commission will propose principles and indicators in key areas such as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including child care, housing and education. Affordable child care is seen as essential if singe parents are to be able to enter the labour market and avoid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Last year, a non-binding resolu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made a number of recommendations on how to improve opportunities for single parents and their children. It encouraged the work of all organizations and informal networks working for single mothers. It encouraged associations working in support of single mothers to provide training courses aimed at facilitating employment and raising self esteem. It encouraged the development of online chat forums and telephone helplines aimed directly at single mothers in order to reduce isolation and allow them to exchange views and best practices about needs.

It called for the development of parental training courses to prepare and teach single mothers the best ways of dealing with the difficult job of raising a child as a single parent while providing the child with a balanced life rhythm.

Parliament underlined the need to facilitate access to training for single mothers, especially young mothers, who often stop their education when pregnant, this would enable them to obtain qualifications and maximize their chances of getting high-quality work and gaining financial independence; MEPs stressed the need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childcare facilities such as kindergartens

The Parliament encouraged Member States to introduce policies aimed at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single parent families in the form of a oneparent benefit, tax deductions for single parent households or other fiscal deductions for single parents appropriate to their national legislation

It asked parents to ensure that child allowances from non-custodial parents are paid regularly;

The parliament underlined that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work-life balance by introducing family friendly working conditions such as flexible working hours and teleworking and by developing child care facilities and nurseries etc;

To facilitate work-life balance for single mothers, Parliament underlined the need for greater involvement of fathers is necessary – noting that shared custody of children is almost non-existent in some EU Member States.

My remarks will have show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hallenges facing single parents in different parts of the EU and Korea. Some of the suggestions will be more or less relevant in different countries.

I hope that it may contribute to your fruitful discussions today.

These remarks are personal to the author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학술세션 1: 미혼모와 자녀의 인권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의 방향

오 정 수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이 글은 싱글맘과 그 자녀인 아동의 인권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미혼모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혼모의 자녀인 아동을 위한 바람직한 아동가족서비스와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양육되며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환경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아동복지의 기본원리이다. Zuckerman(1983)의 방어선 개념에 의하면, 가정은 아동에게 1 차적인 방어선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가정에서 부모-자녀의 역할관계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가정의 기능을 회복, 유지, 강화함으로써 가정이 1 차적인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입양서비스는 가족의 붕괴나 해체로 인하여 출생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대리가정서비스로서 2 차 방어선을 제공하는 것이며, 시설보호는 가정에서의 아동양육이 충족될 수 없는 아동에 대하여 집단보호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3 차 방어선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기본원리이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사회서비스와 정책을 통한 국가적 대응체계가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시설보호와 해외입양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81 년 아동복지법 개정이후에는 아동복지서비스가 다양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아동과 그 가정을 위한 다채로운 보호서비스, 지원서비스들이 개발되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으나 유독 싱글맘과 자녀를 위한 아동과 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는 그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싱글맘과 그 자녀인 아동의 권리와 복지의 박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복지의 기본원리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훼손됨으로써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필자의 시각이다. 이 글에서는 아동가족서비스의 기본원리를 새롭게 조명하고, 한국의 아동가족서비스와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미혼모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아동가족서비스정책과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한다.

2. 정책과 서비스의 기준으로서 아동복지의 기본원리

아동복지서비스의 실천은 아동과 부모의 권리,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며. 다운즈 등(Downs, Moore, McFadden, 2009; 오정수·정익중, 2008:133-4)은 아동복지서비스의 실천에 적용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제 1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 4 원칙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원칙 (Permanency) : 안전하고 영구적인 가정(safe and permanent home)이 아동을 위한 가정 최선의 환경이다.

아동복지의 가장 우선적인 원칙은 가정의 Permanency 이다. 아동은 의존적이고 미성숙한 존재로서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외부의 보살핌, 보호 그리고 지도가 필요한 존재이며, 미래에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그 역할을 학습해 나간다. 아동이 보살핌과 보호를 받고 사회화를 이루어 가는 이러한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영속적인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는 영구적인 가정은 최선의 환경을 제공한다. 아동의 욕구는 지속적인 양육, 지지 및 자극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성장 발달할 기회를 갖는 것이며, 가정은 보살핌을 제공하는 보호자와의 안정된 관계를 제공하는 최선의 장이다.

특히 아동복지서비스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에 의하면, 엄마와 아동의 정서적 유대에 의하여 강화되는 강한 애착은 유아의 인격발달과 일평생을 통한 건강한 가족관계의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아동의 인지발달, 뇌의 형성과 기능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u>싱글맘과 아동으로 구성되는 미혼모가정도</u> <u>Permanency 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한, 안전하고 영구적인 가정으로 아동을 위한 최선의</u> 환경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제 2 원칙 (Safety) : 아동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아동은 음식, 의복, 주거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랑을 제공하는 보호자와의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자라야 한다. 아동의 가정이 이러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 1 원칙과 제 2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u>싱글맘의 자녀인 아동이 미혼모가정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또는</u> 방임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인 한, 그 가정은 아동을 위한 안전한 양육장소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제 3 원칙 (Protection) : 아동의 욕구가 가족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을 때 아동복지서비스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지, 보호하여야 한다.

제 3 원칙은 제 1 원칙과 제 2 원칙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원칙이다. 즉, 아동의 욕구가 가족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는 한, 서비스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서비스는 아동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가족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족은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소득보장, 의료보호, 주거에의 접근 등 아동양육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

<u>미혼모가정이 싱글맘의 준비되지 못한 불리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으로 인하여 아동의</u> 양육과 보호가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미혼모가정을 해체하여야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미혼모가정이 아동양육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하고

<u>지지, 보호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 또는 사회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 3 원칙의</u> 기본정신이다.

제4원칙 (Placement) : 아동을 배치하는 결정은 가족의 연속성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존중하여야 한다.

만약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불가피하게 분리되어야 하는경우, 아동을배치(placement) 하는 결정은 가족에 대한 아동의 정서적인 애착(attachment)과 연속성(continuity)을 유지하는 데 서비스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혈연관계는 이러한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을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분리시킬 때, 아동을 그들이 알고 있는 친척에게 보내는 것,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하게 하는 것 또는 친구나 교사, 친척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과 접촉을 유지하게 하는 것 등이 이러한 연속성을 고려한 조치다. 입양을 통하여 영구적인 배치를 하는 경우에도 공개입양의 방법으로 생물학적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미혼모가정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싱글맘과 아동을 분리시켜야 하는 경우에도</u> 영속성의 원칙에 따라 영구배치(permanent placement)하여야 한다. 더욱이 최근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출생가정 밖의 영구배치를 하는 경우에도 가정재결합과 배치를 동시적 목표로 설정하고 일차적으로 가정재결합(reunification)을 목표로 한 일시적인 배치를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연속성을 고려한 배치(장기가정위탁, 입양)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서비스의 실천원칙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학대아동보호, 가정위탁, 입양 등의 서비스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어 왔으며 서비스 현장에서 적용되어 활용하고 있다.

3. 미혼모가정의 아동을 위한 현행 정책과 서비스 비판

한국에서 미혼모가정을 위한 아동과 싱글맘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그 인권이 침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시설보호나 입양을 넘어 싱글맘과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아동가족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이 필요하겠다.

1)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

현행 아동복지법은 제 3 조 기본이념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이익은 싱글맘과 그 자녀인 아동으로 구성되는 가족이 안전하고 영구적인 가정(permanent home)으로 유지되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기본원리이며,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은 이 기본원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시설보호나 입양 등 대체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온 우리나라의 관행은 아동복지의 기본원리와 아동의 이익 최우선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2) 건강가정의 개념

한국의 가족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 2004 년 제정되어 2005 년부터 시행중인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싱글맘과 아동으로 이루어진 생활단위로서 미혼모가족은 일반적인 혼인 ·혈연관계에 의한 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듯한 뉘앙스를 갖게 되었다. 더욱이 건강가정이란 개념으로 인하여 싱글맘과 그 자녀인 아동으로 구성되는 가족은 사별이나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동거가족 등과 아울러 "비건강가정"이란 의미의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위험을 갖게 되었다. 건강가족기본법에 의한 이러한 법적 개념은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제정 당시부터 가족의 정의를 둘러싼 쟁점이 부각되었다. 특히 이 법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인 혼인·혈연·입양에 의한 공동체만을 가족으로 규정하는 정의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유형을 "비건강가족"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여러 개의 대체법안 또는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족의 정의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 의원안(가족지원기본법안)- 가족정의: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가 되는 공동체로 하되,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공동체, 민법상 후견인이 있는 공동체, 미혼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공동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체는 이 법에 따른 가족으로 봄(안 제 2조)

B 의원안(평등가족기본법안)- 가족정의: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하여 결합하거나 동거하는 공동체,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공동체로 함(안 제 3 조)

C 의원안(건강가정기본법 개정법률안)- 가족정의: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외에도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고 있는 공동체를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아동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 3조) 3) 아동가족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입양과 시설보호서비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가 미흡하였던 시기에 태동한 아동복지의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해외입양과 시설보호는 한국의 아동복지 역사에서 양대 주류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해외입양에 대한 비판과 시설보호의 폐쇄성과 한계에 비판은 아동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정상적인 아동복지의 기본원리와 원칙에 기초하여 수립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보호대상아동과 취약한 위기가정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일차적으로 출생아동과 가정을 중심으로 실행되어야 하지만 미혼모와 그 자녀인 아동은 아동가족복지의 일차적인 정책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가정의 해체를 전제로 한 사후 문제해결 방식의 정 책은 입양과 시설보호에 우선순위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취약계층의 가정해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국가의 소득보장 및 서비스 지원체계로서 보편적 아동양육수당, 보육지원, 가족지원서비스가 부재한 것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이 사후문제 해결방식과 선별적 아동보호서비스로서 입양과 시설보호 중심의 서비스로 기울 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4)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의 중심축과 아동보호조치의 공공성의 부재

지역사회에서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아동과 그 부모의 욕구를 일차적으로 사정하여 단기적, 장기적 보호, 사회서비스의 지원과 배치의 방향을 정하여 주는 공공 아동복지의 전달체계와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과 조직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한국의 아동 복지정책에서 가장 취약한 문제점이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와 조치는 시·군·구 의 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에서의 지원과 보호, 가정위탁, 입양, 시설입소 등 조치는 공공부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아동상담소의 아동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소관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으로 공공아동상담소를 공공아동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공공아동상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으로 흡수되었다(오정수·이혜원· 정익중, 2006: 203). 더욱이 시·군·구의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이 1-2 명 정도이며 다른 업무와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미혼모와 아동에 관한 아동보호와 조치에 관한 책임성 있는 양질의 지원과 보호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부실한 공공아동복지행정과 중심축이 부재한 상황 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새로운 전달체계가 난립되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부분의 아동복지업무는 이들 민간기관에 위탁조치되었다. 이러한 민간전달체계 의 난립과 업무위탁은 아동복지행정의 공공성을 약화시켰고, 미혼모와 아동의 권리를 보호 하여줄 공공행정은 상실되었다.

4. 새로운 정책의 방향모색-미혼모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1) 아동복지의 기본원리와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을 존중하는 정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글맘과 아동으로 구성되는 미혼모가족의 여성과 아동의 권리보장은 아동가족서비스정책과 서비스의 기본원리인 가정의 Permanency 라는 기준에서 출발해야 한다. 미혼모가정이 Permanency 의 기준에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족시키는 한, 그 가정은 아동을 위한 안전하고 영구적인 가정이 될 수 있으며, 아동을 위한 최선의 환경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이 또한 아동과 그 보호자인 싱글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2) 가족지원 중심의 아동과 가족복지정책 강화

입양과 시설보호 등 대체보호가 아동보호 조치의 우선순위가 되어온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은 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가족지원에 대한 비용과 대체보호를 위한 비용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는 가족지원서비스가 대체보호에 비하여 비용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이익과 행복의 관점에서도 두 가지 정책을 비교하여 싱글맘과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3) 가족과 건강가정의 개념

정책당국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논란이 되어온 가족과 건강가정의 개념을 싱글맘과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을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8 대 국회가 종료되면 대체 또는 개정법안들도 폐기될 것이다. 19 대 국회 회기 중에는 이러한 가족의 개념과 가족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들이 활성화되어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되기를 기대한다.

4) 아동보호조치의 공공성의 강화

미혼모와 아동의 발생단계부터 이들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공복지행정이 강화되는 것이 요청된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아동가족전담 행정팀을 꾸리고 훈련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책임성 있는 공공행정을 통하여 미혼모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오정수·이혜원·정익중 (2006).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미국·영국·일본을 중심으로, 나눔의집.

오정수·정익중 (2008). <u>아동복지론</u>, 학지사.

장인협·이혜경·오정수 (2009). <u>사회복지학</u>, 서울대출판부.

Downs S. W., Moore E., McFadden E. J. (2009). <u>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policy and practice</u>, 8th ed., Boston: Allyn and Bacon.

Zuckerman E. (1984). Child Welfare, New York: John Wiley & Sons.

The Outlook of Policy and Service for the Human Rights of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Jeong-su Oh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in South Korea, the human rights of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are not fully guaranteed. This thesis is focused on giving directions about desirable children family services and children welfare policy regarding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which would aid in the removal of the prejudice and stigma toward single moms and to strengthen public assistance as social policy.

A widely accepted and basic principle of children welfare is that being raised at home is the most important environment for child development. According to Zuckerman(1983), home functions as the first line of defense to children. Even if there is an obstalce in the rol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 and child in the family, this principle works to recover, maintain and strengthen the function of home. Adoption services provide a second line of defense as a substitute home service when a child cannot be protected due to family breakdown or disorganization. Institutional care provides a third line of defense as group institutional care and treatment services for children from dysfunctional families form another facet of the basic principles of child welfare. The Korean War (1950–1953) caused chaos in South Korea thereby impeding the implementation of an adequate system for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 social welfare programs for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have mainly developed into institutional care and international adoption. Since the Children Welfare Law was enacted in 1981, many types of protective and supportive services have been developed and evolved however,, family welfare policy and service for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continue to lag way behind.

As I show in this paper, the most fundamental problem of the deprivation of rights and welfare for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is that the basic principles for child welfare are being totally neglected and damaged. This thesis sheds new light on the basic principles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By analyzing the problem of South Korea's child and family services policy, it shows necessary changes to 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policies that would better ensure the rights of single moms and their families.
2. The basic principle of child welfare measured by policy and service

The practice of child welfare service is based on social awareness and values regarding the rights of children and parents in conjunction with the national governments' roles and responsibilities. Ideally such welfare services would be carried out through a series of principles as set out below. Social welfare experts (Downs, Moore, McFadden, 2009; Jeong-su, OH, Ik-jung, Jeong, 2008:133–4) apply four principles step-by-step to practice child welfare service.

First principle (Permanency): The best environment for children is a safe and permanent home.

The priority principle of child welfare is Permanency. Children are dependent, immature and need to be protected, taken care of and disciplined from the outside.

Through socialization, they gradually learn to play a necessary role in future society. Permanency provides the best environment for child development. The optimum opportunity for children is to be cared for with a consistent, nurturing, supportive and motivating environment. Home is the best place for providing such stable relations with a guardian who cares about the children in their care.

Attachment theory, which is fundamental to child welfare services, says a strong attachment bond, strengthened by the emotional bond between moms and children, plays a key role in maintaining healthy family relations. It affects not only a child's cognitive development but also their brain development. Single mom family homes should be protected as being the best environment for children if they meet the standards for Permanency.

Second principle (Safety) : Children should be able to develop in a safe environment without physical, sexual and emotional abuse.

Children should be able to develop safely: involved in a relationship with a guardian who meets fundamental needs such as food, clothing and housing. However, if a home no longer provides a safe environment for children; the First principle and Second clash.

Third principle (Protection): Child welfare services strengthen, support and protect family functions when a family satisfies the requirements for child rearing.

The third principle is the practical principle to solve a dilemma when the First and Second principle clash. As long as a family satisfies a child's

fundamental needs, services strengthen and support family functions. Services then should not be aimed at separating a child from his/her family but at preserving the family. A family deserves to be guaranteed a proper income, health care and housing by local communities for child rearing.

Even though child rearing and protection are threatened by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due to unprepared single moms, this is no ground for dismantling single mom families. The basic spirit of the Third principle is that the country and society should act primarily to strengthen, support and protect single moms in raising their children.

Fourth principle (Placement) : A child's best interest considering family maintenance should be respected when deciding about placement.

In the case that a child is separated unavoidably from their family, the decision of placement focuses on emotional attachment and continuity. Blood relationship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inuity. Considering continuity, when children are separated from biological parents, it is preferable for them to be sent to relatives, to live with siblings, or stay in close touch with people such as friends and teachers. It is also preferable that children maintain relationships with biological parents through open adoption when they are placed permanently.

In the situation of single mother families, children have to be plac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ermanency if it is unavoidable that the child and moms have to be separated, Recently, child welfare services set up simultaneous goals promoting reunifications and placement continuity when children are placed permanently. At first, temporary placements are made for reunification. If they fail, continuity considered placements such as long term foster homes and adoption are made.

3. Criticizing current policies and services for single mom families

What reason can we find for the fact that the rights of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are not guaranteed, their human rights are violated and single mom families are destroyed in South Korea? Beyond institutional care and adoption, we need to analyze service problems and to seek alternatives to protect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1)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e current Child Welfare Law, article 3 states that benefits for children are considered a priority in terms of all activities related to children and this basic principle should be applicable to single mothers' families as well. Child benefits are the basic principle and ideology of child welfare, which can be used to maintain a safe and permanent home for the families consisting of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South Korean practice, which prioritizes alternative care such as institutional care and adoption, is against the rule of the basic principle of child welfare and the priority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2) Concept of healthy families

The basic law referring to family welfare, which was enacted in 2004 and has been in force since 2005, states that the family is a basic unit of society consisting of marriage, blood ties and adoption. In a healthy family it is said that the desires of family members are satisfied and basic human rights are guaranteed.

Article 3(definition) The definitions of legal terms used in this law are below.

1. The family is a basic unit of society consisting of marriage, blood types and adoption.

2. The home is a living unit, providing support, nurturing, protection and education as a living community, where family members live together.

3. In a healthy home it is said that the desires of family members are satisfied and basic human rights are guaranteed.

4. The healthy home project sets its sights on taking actions to prevent and solve home problems and strengthen family functions such as support, nurturing, protection and education.

According to the definition above, single mom families are not categorized as other normal families which consist of marriage and blood relations. Because of this narrow concept of a healthy home, single mom families — along with families are comprised of children and single parents due to death or divorce and,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nd living together — are stigmatized as an unhealthy home. This definition causes the danger of social prejudices and discriminations against single mom families.

The definition of the healthy family in this law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the law was enacted. Due to the definition of families consisting of marriage, blood ties and adoption, which is the traditional family concept, critics have said that many types of families in our society can be defined as unhealthy families. Therefore, alternative and amended laws are suggested below.

The original bill of A (family support law) - definition: Basic family concepts are a community consisted of marriage, blood ties and adoption. Also, the communities such as common-law marriage, unmarried couples with children and the community determined by an executive order are considered as a family. (Article 2)

The original bill of B (equal family law)- Communities include families consisted of marriage, blood ties and adoption and families determined by an executive order. (Article 3)

The original bill of C (healthy family revised bill)- definition: the law was revised to include communities such as common-law marriage, foster kids' organizations along with communities consisted of marriage, blood ties and adoption. It established the definition of a child. (Article 3)

3) Priority of child family welfare policy: adoption and institutional care services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international adoption and institutional care are two mainstreams of child welfare history, which arose at the time when the national children's welfare system was insufficient for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Criticisms against international adoption and closed and limited institutional care are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basic framework of child welfare policy needs to be built up using the basic principles of child welfare set out in this paper.

Assistance and support for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and families in crisis situations should be done primarily for babies and their families.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however, are not the first priority in terms of child family welfare. A delayed response policy in the realm of family breakdown has resulted in giving priority and necessity to adoption and institutional care. Lack of child support benefits, child care assistance and family assistance services are factors of South Korea's child welfare policy which focuses on adoption and institutional care as a delayed response policy and selective child protective services.

4) The absence of a central system to deliver central child welfare services and actions for child protection being made public.

The most vulnerable part of South Korea's child welfare policy is that it lacks not only the delivery system of public child welfare, which reflects the desires of a child and a parent when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are found in local communities, but also the specialized manpower and organizations.

According to child welfare law,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found local communities are protected and dealt with by the chiefs of municipality, district and borough. Actions such as family assistance and protection, foster homes, adoption and entering institutional care are regarded as public sector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child welfare workers at public child counseling centers should take action to solve the pending issues. Due to the reshuffle of local governments, public child counseling centers were integrated into an administrative agency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Seoul and Pusan city governments which are operating public child counseling centers used as public child welfare centers are exceptions to this. (Jeong-su, Oh, Hye-won, Lee, Ik-jung, Jeong, 2006: 203) On top of that, each government has only one or two public child welfare workers who are

juggling multiple roles at work. Under these conditions, we cannot expect high quality assistance and protective services for single mom families.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public child welfare administration the new ways of delivering service systems, such as home foster assistance centers and healthy family assistance were flooded with requests and most child welfare aid was entrusted to private organizations. Many delivery systems and entrusting work to others serves to weaken child welfare administration for the public. Public administration for protecting the right of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is nowhere to be found.

4. Seeking the way of new policy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single mom families

1) The policy for child welfare basic principle and the priority principle of children benefits

As aforementioned, guaranteeing the rights of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should start from by the principle of Permanency standards. If policy meets single moms' needs to maintain their families by permanency standards, the home is a safe and permanent place and provides the best environment for children. This is the best choice for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2) Strengthening child and family welfare policies centered by family assistance

Reflection is needed regarding the current reality of a government welfare program, which prioritizes alternative protection such as adoption and institutional care over family preservation. Authorities should strengthen assistance for single mom families. In the aspects of cost efficiency, family assistance costs should be compared to alternative ones. An example of a developed country proves that family assistance is more cost-effective than alternative protection. Also, in terms of child benefits and happiness, the policy should move forward guaranteeing the rights and happiness of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3) Concept of family and a healthy home

Authorities should re-examine the concept of healthy family law,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since it was enacted, and put varying families structures, including single mom families, into law. The alternative and revised bill will be scrapped when the 18th National Assembly ends. Following this, I hope that the 19th National Assembly will have many political discussions about family concepts and assistance so it will lead to the creation of laws guaranteeing the rights of vulnerable people.

4) Publicizing actions taken for child protection as reinforcement

Documentation and raising awareness through press coverage is required to understand problems and desires for protecting and assisting single mom families from the very early stages. It is required that the rights of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should be protected and assisted through the administrative team for children and families in local governments and responsible public administration of trained social workers.

References

Downs S. W., Moore E., McFadden E. J. (2009).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policy and practice, 8th ed., Boston: Allyn and Bacon.

Zuckerman E. (1984). Child Welfare, New York: John Wiley & Sons.

Jeong-su, Oh, Hye-won, Lee, Ik-jung, Jeong(2006), World child welfare services: Dealt mainly with United States of America, U.K and Japan, The house of sharing.

Jeong-su, Oh, Ik-jung, Jeong(2008), Child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department.

Downs S. W., Moore E., McFadden E. J. (2009).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policy and practice, 8th ed., Boston: Allyn and Bacon.

Zuckerman E. (1984). Child Welfare, New York: John Wiley & Sons.

이미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면서

우리사회에서 미혼모 이슈는 해외입양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이미정 외, 2009), 해외입양아동 대다수가 미혼모의 자녀이기 때문이다.¹ 입양이 요보호 아동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복지 대안이지만, 1993 년 헤이그협약은 각 국가가 입양에 앞서서 아동이 친부모와 헤어지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허남순·윤성승, 2005). 미혼모에 대한 우리사회의 외면은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혼외출산에 대한 도덕적 단죄는 미혼의 어머니를 입양으로 내몰았고 가족과 사회의 냉대 속에 자녀를 떠나보낸 슬픔을 감추어야 했다. 미혼모에 대한 포괄적 통계가 부재한 이유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서 기인한다(이미정, 2010).

최근 우리사회에서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전국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미혼모가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향은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 외, 2009). 미혼모 당사자와 원가족의 태도를 봐도 혼외임신이나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대규모 해외입양 송출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미혼모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도 최근 미혼모의 양육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우리사회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미혼모 가족을 지원하는 기초적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과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비스가 수혜 대상자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 국민기초생계보장, 영유아보육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다. 미혼모 대상 면접 및 사례조사에 의하면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혼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미혼모에 대한 연구는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시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지역사회 미혼모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동안 미혼모에 대한 특성은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통해 대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설을 입소하지 않은 미혼모가 시설을 경험한 미혼모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최근 혼인관계 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복지 문제를 입양을 통해서 해결하던 경향에서 점차 스스로 키우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홀로 지역사회에서 양육하는 미혼모 삶의 실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및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생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조사자료를 토대로 출산을 전후로 한

¹ 본 원고는 2010 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지원으로 수행된 『양육미혼모 지원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미혼모의 경제활동의 변화 및 거주지 변동, 자녀연령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한다. 또 미혼모들이 당면하는 미혼 임산부로서 직장과 구직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복지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의 문제도 논의하고, 이들 토대로 관련 정책을 제안하려고 한다.

II. 기존 연구 및 연구방법

1. 양육미혼모 관련 기존연구

미혼모에 대한 기존 연구 대다수가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은 시설 미혼모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시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해나가는 미혼모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들에 대한 연구가 향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허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미혼모는 자신과 자녀를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 양육미혼모 사례발굴과 관련 연구가 어렵다. 최근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미혼모 발굴의 어려움으로 여전히 양육미혼모 연구는 시설 입소자 사례에 의존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초기 연구는 혼외출산을 사회문제나 부도덕한 현상으로 보는 사회적 통념에 입각하여 결손가정, 빈곤가정, 무분별한 성행위, 성에 대한 지식 부족을 미혼모 발생과 연결 짓고 있다(공일숙, 2005; 이삼식, 1998). 1990 년대 초반의 한 연구는 관련 정책이나 연구가 미혼모를 성적 일탈자나 사회적 일탈자로 보고 있으며 '요보호 여성'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한다.(박흥주 외, 1993). 대체로 이들 연구는 미혼모의 낮은 교육수준, 성장가족의 빈곤과 정서적 결핍, 성적 무분별, 자아정체감, 성교육부재라는 측면에서 미혼모를 이해하고 있었고, 성교육 강화를 예방책으로, 출산한 아동은 입양 보내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박흥주 외, 1993).³

기존 미혼모 관련 연구를 통해서 양육미혼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공일숙, 2005; 박흥주 외, 1993).⁴ 시설 입소 미혼모 중 양육미혼모 비율은 1984 년 5.8%, 1998 년 7.2%이고 2001 년 11.0%로 나타났다(강영실, 2002; 안순덕 외, 1984). 양육미혼모 비율과

² 미혼모 시설을 통해서 자녀 양육경험이 축적된 미혼모 사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미혼모자시설'은 출산을 앞두고 입소한 임산부의 산전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미혼모들은 입소 기간 중 자녀를 입양 보내거나 산후 몸조리 후 아이를 데리고 시설에서 나온다.

³ 1990 년대에 입양 결정은 미혼모와 아기에게 최선의 선택으로 당연시되었고, 양육하고 싶어하는 미혼모는 부모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리한 것을 바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애란원 2010:45).

⁴ 1989 년부터 애란원은 양육미혼모를 위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동돌보기와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서 양육미혼모의 자립기반 마련을 도우려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입소기간 1 년이 필요하였지만, 정부나 서울시는 6 개월 입소기간이 넘어가는 사례에 대해서 행정 관리감독 차원에서 지적하는 등 양육미혼모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애란원, 2010).

관련하여 최근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2005 년 허남순팀은 동년 8 월 전국 11 개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228 명을 1 차로 조사하고, 동년 9 월 16 개 미혼모보호시설에 입소한 1,120 명을 대상으로 2 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육하려는 미혼모 비율이 31.7%라는 수치는 이 연구에서 조사된 것으로 1 차 조사 228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허남순 외, 2005:32). 2006 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도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 222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미혼모 시설 입소자 190 여명 중 출산 후 양육의사가 있는 경우는 33.0%로 나타났다(김유경 외, 2006).⁵

90 년대 말 양육미혼모들은 육아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장시간 근무나 휴일근무 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많으며 시간당 임금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한다(박숙희, 2001). 아기를 영아원이나 보육원에 맡기고 일한 엄마들은 아기와 떨어지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하였고, 친구나 가족과 사는 양육미혼모는 눈치를 보며 불편하게 지낸다(박숙희, 2001). 양육미혼모 스스로는 아이 키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주위의 부정적 시선을 두려워한다(박숙희, 2001). 양육 미혼모가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미혼모에 대한 편견으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이종수, 2003). 일하는 양육미혼모들은 병원 데려가기와 직장회식 참석이 어려워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거의 대다수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데, 이유는 교육관련 비용 부담, 아기 맡길 곳 없음, 교육받을 시간이 없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수, 2003). 양육 미혼모 중에는 보육료 부담이나 부상으로 위탁가정에 2개월 맡긴 경우도 있다(이재정, 2003).

양육미혼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접근하기보다는 각 집단 특성에 적합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강영실, 2002). 아이아빠와 결혼이나 동거가 예정인 엄마들과 홀로 양육을 선택하는 엄마들이 상황이 다르고,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연령별 차이가 많기 때문에 미혼모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접근이 필요하다(강영실, 2002).

2. 연구방법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출산이후 자녀양육과 관련된 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혼모 대상 FGI 는 2009 년 11 월부터 2010 년 7 월까지 총 6 회 실시하였고 총 17 명이 참석하였다. 인터뷰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들과 친분이 있는 미혼모를 연구진이 소개받았다.

전국 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관계자들의 협조를 얻어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중간의집), 모자보호시설(모자원),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를 소개받아 눈덩이 표집으로 조사 사례수를 확보하였다.⁶

⁵ 미혼모시설에서 194 명과 양육모그룹홈에서 28 명이 조사되었다(김유경 외, 2006).

⁶ 설문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연구진 참석 하에 질문지를 배포, 회수하기도 하고 양육미혼모와 미리 연락을 취하고 후에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받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설문지는 연구진 참여 하에 미혼모가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한 것이다. 이메일로 조사한 경우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온라인

조사는 2010 년 4 월부터 8 월까지 실시하였는데, 방문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충청강원권(원주), 경상권(대구, 부산, 울산), 전라권(순천, 전주, 해남, 무안)으로,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17 부이다. 설문지 개발 단계에서 미혼모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양육미혼모의 생활실태를 검토하고, 정부 서비스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미혼모들과 수차례에 걸쳐 모임을 가졌다. 이를 근거로 구조화된 질문지와 개방형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Ⅲ. 양육미혼모의 생활현황

1. 조사대상 미혼모의 특성

기존의 미혼모 연구 거의 대부분이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유는 지역사회 거주자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 조사대상자 발굴이 어렵기 때문이다. 표집의 틀이 되는 모집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2010 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양육미혼모를 찾기 위해 눈덩이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시설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를 조사하고 조사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양육미혼모를 소개받는 방식으로 표집하였다.⁷

2010 년 본 연구조사에서 수집한 양육미혼모 사례의 대다수인 86.2%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데, 기존의 시설중심으로 수집된 양육미혼모 자료와 차이를 보인다. 2010 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양육미혼모 자료의 연령분포를 보면 19 세 이하가 3.4%에 불과하여 2009 년 정부 관련부처가 보유한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자료의 26%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4 세 이하가 21.3%에 불과하여, 2009 년 정부의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자료의 63%와 비교하여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25-29 세 40.2%, 30 세 이상 38.5%로 25 세 이상의 비율이 78.7%로 조사대상 대부분이 20 대 중후반과 30 세에 분포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4.5%이고 고졸 45.1%, 대학재학 이상의 50.4%로 고졸 이상의 비율이 95.5%로 2009 년 양육미혼모의 68.3%에 비해 고졸 이상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1⟩ 조사대상자의 현재 거주지

(단위: %, 명)

구	나의집	시설	부모님	형제	친구의	친척분	아는분의	기타	합계
분			집	자매의 집	집	의 집	집		
비	47.4	13.8	17.2	9.5	6.0	2.6	0.9	2.6	100
율	(55)	(16)	(20)	(11)	(7)	(3)	(1)	(3)	(116)

카페인 '미스맘마미아' 소속 회원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설문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응답이 가능하다고 밝힌 미혼모를 대상으로 설문 응답을 받았다.

⁷ 비확률표집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양육미혼모 전체에 대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사회 미혼모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 양육미혼모 표집과정은 서론의 연구방법 부분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림 III-1〉 조사대상자의 현재 거주지



주: 사례수 116 명

2010 년 양육미혼모 자료에서 조사대상자의 거주지도 기존의 연구와 큰 차이가 있는데, 시설 거주자는 13.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47.4%, 부모님집 17.2%, 형제자매 9.5%, 친구집 6.0%로 조사대상 양육미혼모의 40% 정도는 부모님 집 등 다른 사람에게 주거를 의지하고 있다. 이처럼 2010 년 조사 자료에서는 시설 밖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양육미혼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 출산 전후 양육미혼모 거주 여건

임신과 출산 과정에는 가족이나 친지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대다수 미혼모는 반대로 편견, 비난, 갈등을 경험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양육미혼모가 임신과 출산에 이르는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 조사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 시기에 가족과 친지의 사회적 관계망에 기초하여 다양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받는데, 미혼모들은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다. 예기치 못한 혼외임신으로 많은 미혼모들을 1 차적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경험한다.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미혼모들이 시설에 도움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에 도움을 청하지 않고 스스로 임신과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양육미혼모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시설에 의지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양육미혼모들이 어떠한 곳에서 기거했는지 살펴보자.

2010 년 양육미혼모 연구에서는 출산당시 미혼모 시설에 거주한 비율은 46.7%이고 53.3%는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출산을 했다. 출산 당시 시설 의존 비율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19 세 이하는 100%, 20-24 세 52.9%로 24 세 이하 집단에서는 시설 입소 경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반면, 25-29 세 45.5%로 30 세 이상 40%로 연령층이 높은 집단에서는 시설에 의존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시설 입소자 중 24 세 이하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시설관련 정부통계에는 포착되지 않지만, 시설을 경험하지 않는 지역사회 미혼모들의 연령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 연령별 출산당시 미혼모 시설 거주 여부



(단위: %)

출산을 전후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혼모자시설 외에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나 모자보호시설(모자원) 같이 양육을 지원하는 시설 이용 여부도 조사하였다. 출산당시 미혼모자시설 이용자 비율이나 양육관련 시설을 포함한 시설 이용 경험자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시설을 이용한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출산에 임박하여 미혼모시설을 이용한 비율은 46.7%이고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시설을 이용한 비율은 47.0%로 큰 차이가 없다. 출산 당시 시설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모가 양육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나 모자보호 시설(모자원) 입소나 이용과 관련된 정보가 미혼모시설 이용자에게 많이 제공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 년 조사에서 시설 거주 양육미혼모 비율은 13.8%인데, 시설에 있다가 지역사회로 나온 양육미혼모 사례가 전체 조사대상 중 3 분의 1 이 된다. 조사대상 양육미혼모의 절반 이상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시설에 전혀 의지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표 Ⅲ-2〉 출산 전후 거주지

(단위: %, 명)

구분	시설	나의 집	부모님 집	형제자매의	친구의	지인의 집	합계
vil Ó	42.0(40)		01.1(0.4)	집	집	0.(2)	100(114)
비율	43.0(49)	22.8(26)	21.1(24)	5.3(6)	5.3(6)	2.6(3)	100(114)

출산을 전후로 미혼모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미혼모들이 어디에 기거하면서 출산을 하였는지 살펴보자. 〈표 III-2〉는 양육미혼모들의 출산 전후 거주지 분포를 보여준다.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43%가 시설에 거주하였고,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양육미혼모는 22.8%가 자신의 집, 21.1%가 부모님 집, 5.3%가 형제자매의 집에서 거주했다.



<그림 Ⅲ-3> 현재 거주하는 곳

출산당시 거주지에 추가하여 현재 아기를 키우면서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 살펴보자. 시설에 거주하는 비율은 13.8%로 출산전후 46.7%와 비교해 크게 감소하고 나의 집에 거주하는 비율은 47.4%로 나타난다. 부모님 집과 형제자매 집이 각각 17.2%, 9.5%로 양육미혼모의 26.7%인 4 분의 1 정도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나머지 12.1%는 친구, 친지, 아는 사람의 집에 기거하고 있어 불편한 상황에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양육미혼모 가족의 소득 및 지출

가. 소득수준

조사 대상 양육미혼모의 52.1%가 직업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지만 나머지 47.9%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다. 양육미혼모들이 어떠한 종류의 소득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지 살펴보자. 수입원별로 소득 유무에 대해서 조사하였는데, 개인별로 한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가질 수 있다. 기초생계비 소득이 있는 경우는 54.7%, 한부모가족지원 복지급여를 받는 경우 22.2%, 부모님/형제자매 도움 18.8%, 아기아빠 /아기아빠 가족 도움이 8.6%로 다양한 형태의 수입원을 갖고 있다.⁸ 직업활동, 기초생계비, 가족의 도움이 주요한 소득원임을 알 수 있다.



〈그릮 III-4〉 수입원별 소득 유무

주: 1. 응답자 사례수 117 명2. 소득원이 여러 가지인 사람은 중복 응답함.

<그림 Ⅲ-5> 2010 년 양육미혼모 월평균 소득

(단위: %)



주: 응답자 사례수 111 명

⁸ 직업활동과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되는데, 아르바이트와 비교하여 직업활동은 지속적이며 전일제로 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10 년 양육미혼모의 소득분포를 보면, 50 만원 미만이 7.2%, 50-100 만원 미만은 36%, 100-150 만원 30.6%, 150 만원 이상 26.1%로 100 만원 이상이 56.7%이다. 시설 이용 여부별로 소득분포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아래 제시된 〈표 III-3〉은 미혼모시설 이용 경험별 총수입 분포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 양육미혼모가 경험이 없는 미혼모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다.

<표 Ⅲ-3〉시설이용경험별 총수입 분포수

(단위: %, 명)

구분	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전체
시설이용경험 유	11.8(6)	45.1(23)	27.5(14)	11.8(6)	3.90(2)	100(51)
시설이용경험 무	3.4(2)	28.8(17)	32.0(19)	18.6(11)	16.9(10)	100(59)

〈그림 III-6〉 시설이용경험별 총수입 분포



(단위: %)

100 만원 미만 소득자가 시설 이용 경험자의 경우 56.9%이지만 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는 32.2%에 불과하다. 반면 150 만원 이상 소득자는 시설 이용 경험자의 경우 15.7%이지만 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는 35.5%로 2 배 이상에 달한다. 이 같은 소득 분포 차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위의 자료를 근거로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현재의 소득수준을 낮춘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시설이용자와 시설 미이용자 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거주유형별로 소득분포를 보면, 시설이나 부모님 집에 의존하는 경우 소득 수준이 낮다. 50 만원 이하 소득자 비율이 시설, 부모님집, 나의집, 기타를 보면 각각 56.3%, 25%, 5.5%, 4%로 시설과 부모님집의 비율이 높게 타나난다. 100 만원 미만 소득자 비율은 시설, 부모님집, 나의집, 기타가 각각 87.6%, 70%, 32.8%, 48%로 부모님집이나 시설에 있는 비율이 더 높다. 150 만원 이상 소득자는 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29.1%이지만, 부모님집 5%, 기타 12%이지만 시설에는 아무도 없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도 거주유형이 현재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보다는 양육미혼모의 사회경제적 역량에 따라 거주유형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단귀·%, 명,
구분	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전체
시설	56.3(9)	31.3(5)	12.5(2)	0(0)	0(0)	100(16)
나의집	5.5(3)	27.3(15)	38.1(21)	18.2(10)	10.9(6)	100(55)
부모님의 집	25(5)	45(9)	25(5)	5(1)	0(0)	100(20)
기타*	4(1)	44(11)	40(10)	8(2)	4(1)	100(25)

〈표 Ⅲ-4〉 현재 거주유형별 총수입 분포

(단위: %, 명)

주: 기타에는 '형제자매의 집', '친구의 집', '친척의 집', '아는 분의 집', '기타'가 포함됨.

〈표 Ⅲ-7〉 현재 거주유형별 총수입 분포 1



자료: 2010 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그림 III-8〉 현재 거주유형별 총수입 분포 2



⁽단위: %)

어린자녀의 존재유무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변수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자녀연령별 소득 분포를 보기위해 자녀연령을 0-18 개월, 18-36 개월, 36 개월 이상의 세 집단으로 분류하고 소득분포를 제시하였다.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소득수준이 낮은데, 0-18 개월과 18-36 개월 집단의 소득분포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36 개월 이상 집단과의 차이는 상당하다. 100 만원 미만 소득자가 36 개월 이상은 13.3%에 불과하지만 0-18 개월, 18-36 개월은 각각 56%, 51.6%로 높게 나타났다. 만 3 세미만 자녀를 둔 양육미혼모의 경제활동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표 Ⅲ-5〉 자녀연령별 총수입 분포 그림

(단위: %, 명)

구분	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전체
0~18 개월 미만	12(6)	44(22)	26(13)	10(5)	8(4)	100(50)
18~36 개월 미만	3.2(1)	48.4(15)	25.8(8)	12.9(4)	9.7(3)	100(31)
36 개월 이상	3.3(1)	10(3)	43.3(13)	26.7(8)	16.7(5)	100(30)

자료: 2010 년 본 연구 양육미혼모 데이터 주: 기타에는 '형제자매의 집', '친구의 집', '친척의 집', '아는 분의 집', '기타'가 포함됨.

<그림 Ⅲ-9> 자녀연령별 총수입 분포





나. 양육미혼모 가족의 지출

양육미혼모 가구의 지출은 자녀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녀연령을 0-18 개월, 18-36 개월, 36 개월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지난 1 개월간의 총지출을 분석하였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규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100 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비율이 0-18 개월, 18-36 개월, 36 개월 이상 집단 각각 58.1%, 48.4%, 36.7%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감소한다. 반면, 150 만원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율은 0-18 개월, 18-36 개월, 36 개월 이상 집단 각각에서 11%, 12.9%, 33.3%로 자녀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지출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 III-6> 자녀연령별 총지출 분포

(단위:%)

구분	50 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150 만원 미만	150~200 만원 미만	200 만원 이상	합계
0~18 개월 미만	23.6(13)	34.5(19)	30.9(17)	5.5(3)	5.5(3)	100(55)
18~36 개월 미만	6.5%(2)	41.9(13)	38.7(12)	9.7(3)	3.2(1)	100(31)
36 개월 이상	10.0(3)	26.7(8)	30.0(9)	23.3(7)	10.0(3)	100(30)

<그림 Ⅲ-10〉 자녀 연령별 총지출 분포





주: 응답자 사례수 116 명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0-18 개월 미만보다 36 개월을 키우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8 개월 미만보다 36 개월 이상 자녀를 둔 양육미혼모의 소득이 더 높으며 이것이 지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표 Ⅲ-7〉 자녀 연령에 따른 기초생계비 수급여부

(단위: %, 명)

구분	기초생계비 수급여부	전체		
Ττ	받음	받지 않음	건계	
0-18 개월 미만	58.9(33)	41.1(23)	100(56)	
18-36 개월 미만	58.1(18)	41.9(13)	100(31)	
36 개월 이상	43.3(13)	56.7(17)	100(30)	
전체	54.7(64)	45.3(53)	100(117)	

2010 년 조사대상자의 54.7%가 기초생계비를 받고 있는데, 자녀연령별 기초생계비 수급여부를 보면, 자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급비율인 감소한다. 18 개월 미만 집단의 수급비율이 58.9%인 반면 36 개월 이상은 43.3%이다. 수급여부 뿐만 아니라 수급액도 자녀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18 개월 미만의 수급액 중간값은 63 만원, 18-36 개월은 50 만원 36 개월 이상은 32 만원으로 자녀 연령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자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기초생계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의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18 개월 미만 집단의 소득수준이 36 개월 이상보다 낮으며 소득수준은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기초생계수급자는 의료보호 1.2 종, 보육료 등에서도 정부 서비스의 지원을 받는다. 기초생계수급자이라는 점은 소득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보육 등 여타 부분에 있어서 정부서비스를 지원받아 지출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해도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Ⅲ-8〉 자녀 연령에 따른 기초생계비 수급액 중간값

(단위: %, 명)

구분	기초생계비 수급액 중간값
0-18 개월 미만	63
18-36 개월 미만	50
36 개월 이상	32

< ₩ III-9> 자녀 연령별 거주 유형

(단위:%, 명)

구분	나의 집	시설	부모님의 집	기타	전체
0-18 개월 미만	30.9(17)	12.7(7)	30.9(17)	25.5(14)	100(55)
18-36 개월 미만	51.6(16)	16.1(5)	6.5(2)	25.8(8)	100(31)
36 개월 이상	73.3(22)	13.3(4)	3.3(1)	10(3)	100(30)

주: 응답자 사례수 116 명.

⟨표 Ⅲ-10⟩ 자녀 연령별 월지출액 중간값

(단위: 만원, 명)

구분	월지출 총액(중간값)
0~6 개월미만	48 만원 (15 명)
6~12 개월미만	91.5 (24)
12~18 개월미만	108 (16)
18~36 개월미만	100 (31)
36 개월이상	111.2 (30)

〈그림 III-11〉 자녀 연령별 월지출액 중간값





자녀연령별 지난달의 총지출 중간값 분포가 〈표 III-10〉에 제시되었는데, 자녀 연령별로 차이를 보인다. 6 개월미만 집단의 총지출 중간값이 48 만원으로 여타 집단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6-12 개월 미만의 지출수준은 91.5 만원으로 12 개월 이상 집단과 비교해 10-20 여만원 낮은 수준이다. 12 개월 이상 집단은 100 만원 이상인데, 12-18 개월 미만 108 만원, 18-36 개월 100 만원, 36 개월 이상 111 만원으로 나타났다. 6 개월 이하 자녀를 둔 양육미혼모의 총지출이 낮은 것은 직업활동 제한, 시설 거주, 부모님 집 거주, 기초생계수급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있다.

자녀연령별 지출의 차이가 정부서비스나 가족의 현물지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출 중간값이 〈표 III-11〉에 제시되었는데, 거주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설거주자 지출은 33.5 만원이고 부모님집 거주자는 62.9 만원이다. 자신의 집 거주자의 지출은 118 만원으로 가장 높고 기타 친구, 아는 사람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지출이 101 만원이다.

〈표 Ⅲ-11〉 현재 거주유형별 월지출액 중간값

(단위: 만원, 명)

구분	월지출 총액 중간값		
나의 집	118(55)		
시설	33.5(16)		
부모님의 집	62.9(20)		
기타	101(25)		

주: 기타에는 형제자매의 집, 친구의 집, 친척의 집, 아는 분의 집, 기타가 포함됨.

〈그림 III-12〉 현재 거주 유형별 월지출 총액 중간값

(단위: 만원)



〈표 III-12〉에는 기초생계수급 여부별 월 지출이 제시되어 있는데, 수급자의 경우 월 지출 중간값은 83 만원이지만 비수급자는 114.3 만원으로 나타나, 기초수급자의 월지출액이 낮다.

〈표 III-12〉 기초생계비 수급 여부별 월지출액 중간값

(단위: 만원, 명)

구분	월지출 총액 중간값	
기초생계비 받음	83(64)	
기초생계비 받지 않음	114.3(52)	

주: 응답자 사례수 116 명.

<그림 Ⅲ-13〉기초생계비 수급여부별 월지출액 중간값





58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임신, 출산, 양육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추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린 자녀 양육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 여성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업무상 몰입정도가 낮은 직업으로 바꾸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양육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을 전후로 이들의 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표 Ⅲ-13〉 임신초기 주로 하던 일 및 현재 주로 하는 일

(단위: %, 명	병)	명)	%,	:	(단위
-----------	----	----	----	---	-----

	임신초기 주로 하던 일	요즈음 주로 하는 일
학생	6.9(8)	5.3(6)
진학 취업준비 직업훈련 등	0.9(1)	9.7(11)
구직활동(실업상태)	16.4(19)	8.8(10)
소득활동	75.9(88)	49.6(56)
자녀양육	_	26.5(30)
합계	100.0(116)	100.0(113)

<그림 Ⅲ-14〉 임신초기 주로 하던 일 및 현재 주로 하는 일



(단위: %)

〈표 Ⅲ-13〉을 보면 양육미혼모 대다수가 임신초기에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소득활동에 종사자는 비율이 75.9%이고, 구직자는 16.4%로 총 90% 이상이 경제활동에

주: 임신 초기에 주로 하던 일 응답자 사례 수 116 명. 요즈음 주로 하는 일 응답자 사례수 113 명.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크게 감소한다. 양육미혼모 조사시점에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49.6%로 출산전 75.9%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조사대상자의 4 분의 1 이상이 소득활동에서 퇴장한 것이다. 출산후 자녀양육에 전념하는 비율이 26.5%인데 이것은 소득활동에서 빠져 나온 비율 26.3%와 유사한데, 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 III-14〉는 출산을 전후로 직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출산 이후 근로소득 분포 변화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직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없는 경우가 출산 전에는 13.9%에 불과하였지만 출산 후에는 47.9%로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200 만원 이상 소득자는 13.9%에서 6.8%로 감소한다. 자녀출산과 양육을 계기로 이들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득의 저하는 혼외임신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직장 내부의 부정적 시선과 강요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커리어가 단절되고 소득이 감소한다.

⟨표 Ⅲ-14⟩ 임신초기 월평균 수입 및 지난달 직업활동 수입

(단위: %, 명)

	임신초기 월평균수입	지난달 월평균 직업활동 수입
소득없음	13.9(16)	47.9(56)
50 만원 이하	6.1(7)	5.1(6)
51~100 만원	24.3(28)	15.4(18)
101~200 만원	41.7(48)	24.8(29)
201 만원 이상	13.9(16)	6.8(8)
합계	100(115)	100(117)

〈그림 Ⅲ-15〉 임신초기 수입 및 지난달 직업활동 수입

(단위:%)



주: 1. 임신초기 월평균 수입 응답자 사례수 115 명.

- 2. 임신초기 월평균 수입은 월급(세금공제 전), 용돈, 아르바이트 비용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함.
- 3. 지난달 월평균 직업활동 응답자 사례수 117 명.

V. 양육미혼모가 경험하는 차별

1. 혼외임신을 수용하지 않는 직장문화

집단인터뷰를 통해서 직장생활을 하던 양육미혼모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법적으로는 혼외 임산부에게 출산휴가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들에게 배타적인 직장 분위기에 압도되어 많은 미혼 임산부들이 사직서를 낸다. 혼외임신이 알려질 경우 직장 내에서 일으킬 파장을 두려워하면서 고민하다. 직장을 다니는 것은 유일한 생계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에 맞설 자신이 없는 임산부는 출산휴가 요구도 해보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 혼외임신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법으로 보장된 근속이나 출산휴가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는 말을 들은 기쁨은 잠시, 나는 결혼하지 않은 나의 임신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생각해야 했다. 그것은 앞으로 맞닥뜨릴 수많은 난관에서 나와 아기를 지켜줄 힘이 될 것이다. 태교는 꿈도 못 꾸었다. 내 머릿속은 계산으로 바빴다. 사직서는 언제 내야 적당할까,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오래도록 생활에 도움이 될까.... 만약 결혼하지 않은 내가 만삭이 되도록 회사에 출퇴근하고 출산휴가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될까. 산전휴가 조항엔 결혼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임신 중의 여자조합원에게 시간의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모성은 결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일까, 미혼에 출산휴가를 쓴 선례는 없을까. 그러나 내겐 그럴 만한[출산휴가를 쓸] 용기가 없었다. 특별히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남다른 기술도 갖지 못한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은 '밥줄'을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군다나 출산 후엔 혼자가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나는 남이 알아채기 전에 사직서를 냈다. 그리고 서러움을 주체할 수 없어 집으로 오는 좌석버스에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민들레 2002, pp. 622-648).

직장에서 사람들의 온갖 눈초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전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을 나와 미혼모의 집에 입소하였습니다.... 회사 내에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중절을 했었던 여직원이 일하는 도중 하열로 쓰러졌고, 그 소문으로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던 중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34 세 미혼모, 9 세 딸 양육).

혼외임신에 대한 직장 구성원의 반응은 차가운 눈길 정도의 소극적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이며 공격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산부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어느 날 제 싸이가 테러를 당한 거에요 애 아빠가 누군지. 직원들이 1 촌은 다 들어와 본 거에요.... 남자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저를 불러다놓고 '어디 뻔뻔하게 이렇게 하냐' 이러고 저도 부른 배 안고 '나 임신했다, 임산부한테 지금 이러는 거 할 짓이 아니라는 거 모르냐'그렇게 응대하고.... 임신 4 개월. 입덧도 하고. 제 [밑에] 직속 직원도 임신했는데, 그 사람은 축하받고, 임산부라고 과일도 챙겨주고. 쉬라고 하고. 저도 과일 먹고 싶은데, 저는 팀장이니까 열외가 없죠. 쉴 수도 없고. 이 여직원은 매일 빠졌는데. 제 스타일이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직원들 확인하고, 그래서 실적도 좋고 그랬거든요(35 세 미혼모, 27 개월 딸 양육).

혼외임신에 부정적인 직장분위기는 임신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있거나 상사가 허용하여도 계속 직장 다니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법으로는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출산휴가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임산부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직장 분위기에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2. 구직과정에서의 차별

혼외임신으로 다니던 직장을 중단했던 경험도 미혼모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후 미혼모라는 사실 때문에 구직과정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력서나 가족관련 서류를 통해서 미혼모 가장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직업적 자질과 상관없이 채용이 기피된다.

이력서 호주란에 본인이라 기재할 때마다 당혹스러움을 떨칠 수 없다. 내 이력서를 받아보는 쪽에서 미혼모인 여성호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품행이 방정치 않다거나 결격사유로 여기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나의 이력서는 낼 이유가 없는 휴짓조각일 뿐이다. 취직도 못하면서 내가 미혼모임을 광고하는 효과 밖에 없으니까(민들레 2002, pp. 622-648).

열심히 노력하여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미혼이라는 사실을 밝혀지면 노골적으로 무시를 당한다. 미혼모라는 상황과 작업수행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과정에서 차별당하고 있다. 구직하는 미혼모를 혼인지위나 출산과 관련하여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이를 출산하고 직업학교를 다녔고, 바로 졸업 뒤에 전문대에 지원을 해서 1 등을 놓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밤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 온갖 부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격증도 다른 사람보다 두어 개를 더 취득했고, 취업에 운전면허가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말에 운전면허 취득비용를 벌기위해 청소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운전면허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여러 군데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고, 한편으론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의 마지막을 앞두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성적도 내 자격증도 제가 미혼모라는 사실에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미혼모라고 밝히는 순간의 표정들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 시간만 아깝게 됐잖아' 등 여러 가지 반응들이더군요. 결국 미혼모라고 밝히고선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34 세 미혼모, 9 세 딸 양육).

미혼모라는 이유 때문에 채용이 거절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한 미혼모들은 미혼모라는 사실을 감추는 방식으로 차별을 피하고 있다. 서류상 미혼모가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미혼 대신 사별이라고 말하며 면접에 응하기도 한다. 도덕적 판단에 근거하여 미혼으로 홀로 아기를 키우는 여성은 채용하려고 하지 않는 회사의 관행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근데 면접을 다 보는데, 근데 다 물어 보는 게, 서류를 다 내잖아요. 큰 회사들은 서류를 다 그걸 내야 되잖아요. 왜 에기랑만 둘이 있냐. [무슨 서류를 내는 거죠? 가족관계에 대해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관계...큰 회사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뭐 가족관계까지 다 내니까....[지원할 때 그 서류를 내는 건가요?] 아니요. 다 합격하고 나서죠. 예. 이제 면접 갈 때, 면접에서 거기서 다 물어보는 게 제가 이제 그 질문이 하도 귀찮아서 이제는, 애 아빠 죽었다 그냥, 얘 아빠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면접관들이 마치 아픈 데를 건드려서 자기들이 미안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33 세 미혼모, 17 개월 딸 양육).

3. 사회복지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우리사회에도 저소득 양육미혼모를 지원하는 기초적인 복지체계는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서비스가 양육미혼모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순조롭지 않다. 일선에서 사회복지 전달 업무를 맡고 있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수준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미혼모들은 기초적인 정부의 복지급여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사무소 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제가 000[미혼모시설] 중간의 집[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있었어요. 거기서 4 개월쯤 있다가 홍제도 옆 홍은동으로 왔는데, 시설에 있으면 수급자유지를 해주는데, 독립해서 동사무소 갔어요. '수급자격 유지해 달라'고 하려고 동사무소 갔는데. 제가 000 시설에 있다가...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000 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더라. 다 설명해서 수급자 유지는 해줬는데, 사회복지사[사회복지 담당공무원]가 또 바뀌었는데, 모자원을 모른다...홍은동이면 00 모자원을 신청했더니 모자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날 신청을 못했어요. 신청을 3 월에 했는데 6 월에 성북구청으로 넘어갔어요. 요즘은 모른다는게 말이 안되는데, 모자원 신청을 갔더니 두꺼운 책을 뒤지면서 이사람 저사람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39 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모자원 입소하려면 동사무소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동사무소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하는지를 모른다. ... '나는 양식을 가지러 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자원이라는

곳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서류를 줘야 하는지를 알아보래요. 그래서 '여기는 미혼모 안 사느냐'물어보면, '한부모가정은 사는데 이렇게 와서 물어본 사람[미혼모는] 없다' 그래요(38 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법적으로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기가 싫어서 준비를 했어요 출생신고양식을 미리 써보기도 하고. 신기하게도 아기 이름이 정해지고, 출생신고서 작성하고 바로 양수 터졌어요. 제가 기초수급을 신청한 날이 상담 받은 날이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대부분 그 다음날 구청에 접수를 하는데, 그 하루 사이로 제가 기초수급자가 받는 출산비 지원을 못받게 됐다. 기초수급자가 출산하면 50 만원 출산급여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받은거지... 사회복지과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인 거죠. 출산예정보다 3 주 일찍 출산한 경우라(28 세 미혼모, 12 개월 아들 양육).

정부서비스 전달에 문제가 많은 것에 추가하여 양육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초하여 이들을 모욕적으로 대하기도 한다. 미혼모의 사생활을 보호하거나 존중하는 태도는 없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도 있다.

자신감 있게 아이 키웠는데, 동사무소에서 미혼모라 재수없다는 말도 들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사회복지사는 아니었고. 제가 우리 집에 엄마[미혼모]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잖아요, 사회복지사[사회복지 담당공무원]는 좀 세게 나가면 눈치를 봐.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서류 떼 주는 사람[공무원]이 '미혼모보호시설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동사무소가면 수급자는 서류 떼는 비용이 무료인데, 미리 수급자는 말을 해야 해요...근데 제가 그날 많이 떼서 1600 원 나왔어요..전 미리 말했어야 되는 걸 몰라서 다 떼고 나서 수급자라고 했더니 '수급자면 미리 말을 하셨어야죠',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돈을 줬어요. 근데 뒤돌아서 가는데, '아니 수급자인게 무슨 자랑이야? 아침부터 재수없이.' 아, 그 엄마가 모욕을 당하고 애를 입양보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저 같은 경우는 미혼모가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을 원해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티에서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구청직원은 시설로 가란 식으로 말하였고, 기초생활수급은 미혼모를 위한 것이 아니란 식으로 말하더군요. 누구마음대로 기초생활수급은 미혼모를 위한 것이 아니니 시설로 가라는 것인지. 결국 아주적은 돈이 나오더군요 [얼마요?]. 왜 그런 금액이 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하였더니 전화로 더 이상 문기 어렵게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인터넷으로 민원으로 문의하였더니 [구청에서] 전화가 와서 사람[저를]을 무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며, 바쁘니 금액 조정되는데 두달 정도 걸릴거라 하였어요. 결국 제가 기분이 나쁘다며 사과를 요구하였죠(26 세 미혼모, 12 개월 딸 양육).

[동사무소에 수급신청 하러 갔어요?] 예. 한부모 신청하러 갔는데, 기초 수급자 신청하라고. 네 그 담당자는 좀 착한거 같아요. 다른 엄마들은 공개된 자리에서 [미혼모냐고]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서류만 주고. 아는 어머니 중에... 그 동네 수급자가 많은 거예요. 수급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길인가? 그쪽인데 신길동인가? 되게 막 직원들이 불친절하고 당연히 수급 신청하러 왔으려니 하고 불친절하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32 세 미혼모, 19 개월 딸 양육).

[성북동 동사무소가 친절하다는 거죠?] 그게 다 수급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거야.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게 동사무소 직원을 잘 만나야 해 정말이야. 그것도 자기 복이지 그럼(39세 미혼모, 6세 아들 양육).

IV. 양육미혼모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10 대와 성인미혼모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필요

오랫동안 미혼모 관련 정책은 출산후 서비스 제공과 입양 연계에 집중되었다. 양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진 시기는 2000 년 중반부터인데, 이때는 양육 희망 미혼모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미혼모에 대한 자료는 시설 미혼모를 중심으로 축적되었고, 관련 정책도 이것에 기초했다. 본 연구에 의하면 10 대 미혼모와 성인미혼모들은 동질적 집단이기보다는 양육의지, 시설 의존도, 교육 및 직업적 배경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10 대 미혼모 비중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미혼모 시설 자료에 근거한 기존 정책은 미혼모를 미성숙한 존재이며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데, 이것은 시설에 입소한 10 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성인미혼모의 교육수준을 근거로 여느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는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10 대와 성인 미혼모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각 집단에 적합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성인미혼모 정책은 사회적 차별로 인한 경력 단절의 회복과 어린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10 대 미혼모 정책은 학업지속 지원, 성교육, 향후 진로지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미혼모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 금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혼외임신부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근로능력이나 양육자로서의 자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여느 임신, 출산 여성근로자에게 보장된 출산휴가와 직장을 계속 다닐 권리가 이들에게 거부될 이유가 없다. 임신과 출산을 전후로 미혼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이들을 백안시 하는 사람들의 편견이다. 미혼모에 대한 직장에서의 편견과 차별은 미혼모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이러한 편견으로 많은 미혼모들이 예기치 못한 임신과 출산을 거쳐 빈곤하게 된다. 근로의욕과 직업능력을 갖춘 미혼모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혼외임신부를 퇴직하게 만드는 관행이 불법이며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하여 이들의 권리를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각 사업장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육아지원 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다. 미혼모가 예기치 못한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쓰면서 직장생활을 계속한다면 빈곤자로 전락할 필요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며 살 수 있다. 혼외임산부에 대한 직장에서의 차별은 여성노동자의 권리 침해이고, 양육미혼모의 자립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불필요한 사회적 편견은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복지비용만 증가시킬 뿐이다. 대대적인 캠페인, 언론을 통한 홍보, 관련 부처의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서 미혼모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이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

3. 양육미혼모 자조 모임 활성화 적극 지원

정책적 차원에서 미혼모에 대한 시각이 변해야 한다. 과거에 비해 자율성과 개성의 존중이 점점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미혼모가 미성숙한 존재이며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이들이 원하는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미혼모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이들이 거점기관과 협력하여 복지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속담이 있듯이 미혼모 당사자들은 자조모임을 통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가장 빨리 수집할 수 있다. 자조모임의 지원 강화로 미혼모 보호에 투입되던 정부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그동안 관련 정책은 미혼모를 미성숙한 존재로 보며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최근 대다수 미혼모들의 교육수준을 고려하면 스스로 자조모임을 통해서 취업과 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2000 년 이후 직업훈련, 아동양육, 보건 . 영양, 복지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수혜자의 범위와 서비스의 질은 해마다 확대되고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산물이다. 미혼모들에게 필요한 것은 본인의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취업, 아동양육, 기타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받는 것이다.

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적절히 홍보되고 전달된다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서도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설립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과 복지전달자인 동사무소가 미혼모 자조모입과 협력하고 교류하면, 지역사회 양육미혼모복지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4.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개선

지역사회 양육미혼모에게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는 출생신고 단계에서부터 동사무소에서 관련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이다. 자녀 출생신고 과정에서 양육미혼모인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동사무소는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매뉴얼 제작과 담당공무원 교육이 시급하다. 동사무소에서는 양육미혼모 개인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계나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하였을 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확인되었다.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2000 년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자녀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복지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아동양육비 지급, 아아돌보미 서비스 제공, 집에도 돌보는 아동에 대한 육아수당 제도가 2000 년 이후 신설되고 확대되었다. 산전후 검사, 해산급여, 산모도우미, 영양프로그램 등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서비스이다. 미혼모는 산전후 서비스나 복지급여를 시설에 소속된 경우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도 받을 수 있다. 기초생계급여를 통해서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고. 미혼한부모를 위한 거점센터를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전후 검사나 예방접종, 영양제공 서비스는 무료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양육미혼모들은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료로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한 정부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이 요구된다.

5. 새로운 형태의 모자보호시설(모자원) 확대

양육미혼모가 입소할 수 있는 모자보호시설의 대대적인 확대가 절실하다. 모자 보호시설은 3 년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무료 주거공간인데, 모자보호시설이 미혼모자공동생활 보다 좋은 점은 부엌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가족의 사적공간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이 10 대나 양육과 진로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에게 적합한 시설이라면 모자보호시설은 독립된 거주공간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필요한 시설이다.

새로운 형태의 모자보호시설을 제안하고 싶다. 현재 모자보호시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여러 세대의 한부모 가구세대가 밀집하여 살고 있어, 이웃주민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외부에 노출되는 밀집거주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책집행자들이 미혼모를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데서 벗어나,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존재로 본다면 관련 정책의 접근 방식도 변화할 것이다. 모자보호시설을 확대할 때 현재와 같이 밀집된 거주지 형태보다는 2-4 가구가 이웃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모자보호시설 물량을 확보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에 수량을 배분하고 관리를 위임한다. 구청과 동사무소 차원의 관리가 힘들다면 미혼모 자조모임과 협력하여 광역지자체 차원의 관리 인력을 지원한다. 양육미혼모 가구의 입퇴소 및 시설 사용과 관련된 규칙은 일반 세입자와 집주인의 계약에 준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렇다면 보호와 개입을 위해 미혼모나 한부모 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제공하지만 공급 물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양육미혼모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미혼모는 양육과 생계를 홀로 감당하며 저출산 시대 우리나라 미래 구성원을 키워내느라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미혼모가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최대의 입양송출국이 된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다면 양육미혼모의 주거공간 제공과 관련하여 현재의 소극적 태도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양육미혼모에게 있어서 출산 후 처음 3 년에서 5 년 사이의 기간은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며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다.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못해 한국의 수많은 아기가 해외로 입양되었던 부끄러운 역사를 생각할 때 미혼모 가족을 위한 모자보호시설의 대대적인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6. 미혼부 책임 강화

미혼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비동거 부모의 자녀양육비 지급 체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이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이혼절차에서 양육비 집행을 용이하도록 2009 년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아내기는 어렵다. 미혼부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청구하고 지급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소송은 오랜 시일과 비용, 그리고 감정적 소모를 동반한다. 정부는 2007 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확보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사업을 맡고 있다.

정부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미혼모들은 미혼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정부의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을 반기지 않는 양육미혼모들이 많은데, 아기 아빠와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였기에 소송이라는 과정을 통해 상대와 접촉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같이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징수하는 기관이 없고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여건은 양육비가 절실하여도 미혼부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게 만든다. 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위해 미혼부의 소득 및 재산정보나 소재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정보를 법원에 협조해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또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미혼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할 때, 정부가 아동의 복리를 위해 대지급하고 후에 미혼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미혼부의 책임과 관련하여 한부모가족 양육비 집행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7. 양육미혼모 관련 통계구축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혼모에 대한 포괄적 통계가 없다. 정부는 기초생계수급이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도 복지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서비스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양육미혼모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를 통해 취합하여 인구 및 사회경제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포괄적 통계는 복지정책 수립과 관련 예산 책정에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68

참고문헌

강영실(2002), 미혼양육모! 어떻게 도울까? 제 7 회 서울시 여성복지세미나 자료집. 서울특별시 여성복지연합회. 공일숙(2005), 양육미후모의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논문. 김유경 외(2006), 『 미 혼 모 의 출산 ·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영·선보영·김은영·정재훈(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민들레(2001), 「어느 미혼모의 육아일기」, 『신동아』 2002. 12. 01 통권 519 호 622-648. 박숙희(2001), 미혼모의 아동양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흥주.조영미.채명숙(1993), 미혼모 정책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 25 호. 안순덕 외(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발생요인 설명과 복지대책 모색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이미정.김혜영.김승연.류연규(2009), 『한국의 미혼모 복지에 관한연구:해외입양,관련통계,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2010), "사 회 적 편견과 미혼모관련 통계"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 방안』 제 60 차 여성정책포럼. 2010 년 2 월 24 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삼식(1998).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재정(2003), 양육미혼모의 욕구에 대한 질적분석과 사회복지실천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종수(2003), 미혼양육모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석사학위논문.

허남순 외(2005), 『미혼모부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허남순·윤성승(2005), 『헤이그협약 비준 준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Living Conditions of Unmarried Mothers

Lee Mijeong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ntroduction

In Korean society, the issue of unmarried mothers is deeply related with overseas adoption history (Mijeong Lee et al, 2009) because the majority of overseas adoptees are the children of unmarried mothers. Adoption can be an alternative form of welfare for the children who need protection, but the 1993 the Hague Convention states that the State makes every effort for the children to live with their biological parents prior to adoption. (Her Namsun \cdot Yun Sung-seung, 2005). Our society's discrimination against unmarried mothers stems from social prejudice. Moral stigma against the out of wedlock birth resulted in adoption, and unwed mothers had no choice but to hide their grief from inhospitality of society. Due to so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ere are no comprehensive statistics available about the unmarried mothers. (Mijeong Lee, 2010).

Recently our society has begun to pay attention to unmarried mothers' families. According to a national survey on unmarried mothers, our society now makes less moral judgment against the unmarried mothers. (Kim Haryoung and et al, 2009). The attitude of unmarried mothers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has also changed toward unwed childbearing. More and more unwed mothers also try to raise their children by themselves. Although the government was passive in supporting unwed mothers, recently it tends to actively support unwed mothers and seems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raising children.

Our society has a basic welfare system to support unwed mothers when they are in economic hardship. Although we have a policy and services to support for raising children, in reality, this support is not readily available to people who are in need. Although the government offers various services, such as supporting single parents and children and guarantees a basic livelihood, it reality this service is not as readily available as is desirable. According to a survey of unwed mothers, many of them do not know at all about the welfare allowance and service for them, thus they could not ge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Until now, studies of the unwed mothers have been focused on shelters. Therefore, when unwed mothers gave birth without the support of a shelter, there was no information available. Until 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wed mothers have been represented by unwed mothers who stayed at shelters. So we could not compare unwed mothers who have experienced the shelters and those who have not experienced shelters. Regarding the welfare of unwed parents' children, the trend changed from adoption to nurturing by the biological paren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know living conditions of the unwed mothers, who despite economic difficulties raise children by themselves.

In this paper, I conducted survey with the both unwed mothers who stay at the shelters and those who are not staying at shelters. Based on this data, I analyzed the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and residences of unwed mothers, before and after giving birth, and according to the ages of their children. Also I will discuss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and the problem of welfare service, and by doing so I will propose relevant policy.

Contents

In 2010, I conducted a national survey of unwed mothers, and 117 mothers responded to my survey questions. Among respondents, 86.2% did not stay at the shelters, which is different from prior surveys which focused on unwed mothers staying at shelters. This survey shows the specific lives of unwed mothers outside the shelters. In this survey, around the time of giving birth, 46.7% of the mothers stayed at shelters, and when raising children, 47.4% of the mothers lived in their own places. Among the respondents, 52.1% of the unwed mothers had income, while 47.9% of them had no income. The source of their income is as follows: 54.7% received income from the government's basic livelihood scheme, 22.2% received welfare allowance as single parents, 18.8% received help from extended families, and 8.6% received support from the child's father.

High-income unwed mothers tend to not use the shelters at the time of birth. High-income unwed mothers tend to stay at their own places rather than shelters or parents' houses. In terms of income distribution, there are differences when the children are 36 months old; when the unwed mothers' children become 36 months old, their income tends to be higher. This figure shows that the unwed mothers' economic activities are restricted until their children are 36 months old.

Unwed mothers' expenditures show differences according to their children's age; when their children are less than 18 months old, they spend less money than when the children are 36 months old. Mothers who have children older than 36 month old children have the highest expenditures. As the children getting older, unwed mothers tend to raise the children on their own. On the

other hand, when the age of children is younger, unmarried mothers tend to stay with their parents.

Like other women, unwed mothers' economic activities changed a great deal around the time of giving birth and raising children. Up until the fifth month of pregnancy, 92.3% of respondents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Then, after giving birth and the time of raising the children, only 58.4% of the respondents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Of the respondents, 26.5% focused on raising children, which means the unmarried mothers' economic activities were restricted because of raising children. This restriction of economic activity resulted in a sharp decrease in income at the time of early pregnancy and after giving birth; in early pregnancy, only 13.9% respondents did not have income but after giving birth, this figure increased as much as 47.9%.

Although maternity leave of unmarried mothers is guaranteed by law at the workplace, in reality, unmarried pregnant women were hassled by their workplaces and eventually, without much choice, had to quit their jobs. Unwed mothers seeking employment also faced also similar problem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a basic welfare infrastructure for low-income single parents, its implementation from community centers is not as good as one might wish. Civil servants at the community centers do not know about welfare service for the unwed mothers very well, or sometimes civil servants look down on unwed mothers or ignore them. In view of this, welfare services at the community center need to be improved dramatically.

Policy suggestions for unwed mothers to raise children independently

1. Necessity of differentiated policy for teenaged and adult unwed mothers

For a long time, the unwed mother related policy focused on offering postpartum service in relations to the adoption. From mid-2000, attention and support rose for nurturing the children. From this time, more and more unwed mothers wanted to raise their children by themselves. For a long time, the data on the unwed mothers was aggregated from the unwed mothers' shelters, and the corresponding policy for the unmarried mothers was also based on this. According to this study, there are enormous differences between teenaged and adult unwed mothers in terms of their will for nurturing children, independence, and educational and career backgrounds. Also there is no verification about increase of teenaged unwed mothers, some media has pointed it out. The existing policy of the shelter based on unwed mothers characterized them as immature and in need of protection. This analysis, by and large focused on the teenaged unwed mothers. However, we ought to treat adult unwed mothers the same as other adult mothers who can solve problems by their own initiatives. If we see unwed mothers from
different point of view, it will bring also different policy. So the government needs differentiated policies for teenaged unwed mothers and adult unwed mothers. For example, for the adult unwed mothers,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programs to seek jobs and to raise children; for the teenaged unwed mother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urther education, sex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for the future.

2. Ban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at the workplace

Although the Labor Standard Act guarantees maternity leave for the unwed mothers, in reality, this act is rarely implemented for unwed mothers. Of course, having children outside of marriage is not related to one's ability at the workplace. Pregnant women have a right to take maternity leave. But due to social discrimination, unwed mothers have a hard time during pregnancy and childbirth. The rights of the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have been jeopardized by th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of workplaces.

Due to such prejudice, many unwed mothers became severely impoverished during the process of pregnancy and giving birth. We should provide a guarantee for the labor rights of unwed mothers. The Labor Ministry should make it illegal for employers to not allow maternity leave for unwed mothers and should issue guidelines at the workplace regarding unwed mothers' rights. By doing so, the government also can cope with challenge of the low birth rate.

If unwed mothers were able to continue their careers even after pregnancy by using maternity leave, they could raise their children independently without poverty. Discrimination of unwed mothers in the workplace is a violation of women's rights and an obstacle to the independence of unwed mothers. Welfare expenditures increase due to unnecessary social prejudice. The government should ban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in the workplace by launching a full-scale media campaign and PR, guidance and supervision.

3. Active support of unwed mothers through the activation of self-help meetings

In terms of policy-making, our view should change toward unwed mothers. Compared with the past, nowadays we tend to respect the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ce of each individual more and more. In this respect, rather than treating unwed mothers as immature beings, we should treat them as responsible and independent beings, and thus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and emotional support for them. In view of this,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self-help meetings of unwed mothers and provide information on welfare and job training. Then the unwed mothers can actively exchange and accumulate information for their independence. If the government supports the self-help meetings of unwed mothers, then ultimately, the government is able to save on public spending for the protection of unwed mothers.

Until now, government policy has treated unwed mothers as immature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of education and protection for them. However, as numerous studies have pointed out, most unwed mothers are highly educated nowadays. Considering this element, unwed mothers have the capacity to collect information on jobs and welfare by themselves through self-help meetings. Since 2000, various governmental services have been provided in the fields of job training, childcare, health and nutrition, and welfare allowance. At the same tim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these services are being improved for the beneficiaries every year. This change is the fruit of governmental efforts to cope with the increasingly low birthrate and an aging society. Unwed mothers need to get precise information on job training, jobs, bringing up children and welfare services.

If the government offers a variety of appropriate welfare service and programs, the unwed mothers, without relying on shelter, can raise the children by themselves. If the community centers, as messengers of welfare services, cooperate with the self-help meetings of the unwed mothers, the welfare of the unwed mothers could be improved remarkably.

4. Improvement of public officials' service for social welfare

One of the best ways of delivering government welfare service starts from the time of the birth report at community centers. The community center should provide all government-supported welfare information to unwed mothers during the process of reporting a birth. Corresponding education is urgent for the related officials, as well as the production of manual. Community center officials should respect the private lives of unwed mothers.

According to this study, problems occurred during the process of delivering various welfare services. When anyone made inquiries about welfare service policy for the single parents and people in the low-income bracket, officials did not know very well about services and were impolite to the inquirers. Thus, education is necessary for officials dealing with the welfare service of the government.

After 2000, as the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became prevalent, correspondingly, related welfare services spread rapidly. The government began to provide and extend the child benefit and babysitter service since

2000. Also, medical checkups, childbirth benefits, midwife services, and nutrition services are available from the government. So now, unwed mothers are entitled to receive maternity services and benefits not only from shelters but also at their own places. Unwed parents are entitled to receive basic livelihood benefits and childbirth benefits. Health centers also provide free health checkups, vaccines, and nutrition during maternity. As low-income unwed mothers are entitled to receive various services either free of charge or at a low price, welfare officials need to be educated in order to deliver such services effectively.

5. Extension of a new style of facility for mothers and children

Full-scale facility extension is necessary for unwed mothers and children. Low-income single parents can use this facility free of charge up to three years: since facilities have private kitchens, it is helpful to preserve the privacy of users. While communal homes for unwed mothers and children provide help for teenage unwed mothers, this kind of facility provides more privacy for unwed mothers.

I would like to recommend new style of facility for mothers and children. One of the main problems of the current facilities is a lack of privacy, since various generations of single parents live closely in one place. As social prejudices are prevalent against unwed mothers, the current style of facility is not advisable.

Policymakers should not see unwed mothers as objects of education, but see them as responsible and independent beings so the related policy also will be changed accordingly. In view of this, when the government extends facilities for mothers and children,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m on a small scale, such as two- or four-household style rather than a densely built-up communal style.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purchase such facilities and distribute and commission district offices and community centers to do the management. If the district offices and community centers are unable to manage these facilities properly, the unwed mothers' meetings,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run such facilities. The rules and contracts of this facility should be similar to general rent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This is also cost-effective, as the unwed mothers and single parents would run the facility by themselves.

Although the government provides rental housing, due to a massive shortage of supply, most unwed mothers give up trying to use such housing. Unwed mothers suffer alone as they try to raise children in this time of the low birthrate. Because the gov ernment has been passive in supporting unwed mothers, we became the largest sending country in terms of international adoption in the world. Considering this, the government should take a more active and bold role in order to support the unwed mothers. The first three to five years are an important period to unwed mothers for raising children and establishing a base for independence. As the government did not provide decent living space for unwed mothers and children, countless children sent have been away as overseas adoptees. That is why we have to actively consider the full-scale extension of facilities for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6.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unwed fathers

The unwed fathers have duty to provide child support for their children even if they do not live with their children. Since child support is important factor in child welfare, in 2009, the government amended a law which made it easier to receive fostering expenses during the process of divor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eive fostering expenses from unwed fathers. When unwed fathers do not voluntarily pay the child support, it is possible to sue the unwed fathers and receive fostering expenses by force. However, lawsuits are time-consuming, expensive, and emotionally exhausting. From 2007, the government has provided free legal service for single parents so they can receive fostering expenses. Korea Legal Aid Corporation and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are taking care of this work.

Despite governmental support for lawsuits, most unwed mothers experience difficulties receiving child support from unwed fathers. Unwed mothers are also reluctant to sue unwed fathers because they do not wish to meet each other. Unlike in the USA, there is no agency in Korea that works to receive child support from unwed fathers on behalf of unwed mothers. The lack of such an agency also makes unwed mothers give up on claiming child support from unwed fathers. Moreover, in order to file a lawsuit, unwed mothers need information about the unwed fathers' property and residence for the court. However, at the moment, the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Home Ministry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s insufficient.

Also,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consider providing a payment to unwed mothers when unwed fathers face financial difficulties and cannot pay, and then demand that unwed fathers pay afterwards. Further study is necessary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child support payments to single parent families in relation to unwed fathers' responsibilities,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7. Accumulation of statistics on unwed mothers

There are no comprehensive statistics available regarding unwed mothers in Korea. While the government supports low-income single parents, there is no systematically accumulated information available regarding the welfare beneficiaries. In view of this, it is necessary to build up basic statistics by accumulating information on the beneficiaries (e.g., unwed mothers' social and economic backgrounds and demographic data). Comprehensive statics of the beneficiaries can be used as basic data when the government sets up welfare policy and relevant budget.

최형숙(양육미혼모)

🕈 미혼모로서 나

35 살. 적지 않은 나이에 엄마가 되었다. 세상이 두려워서 아이도 포기하려 했었고 수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미혼모로 살기를 선택하였고 그렇게 8 년이 지났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왜 그렇게 힘들고 날마다 죽고 싶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미혼모라는 말조차 입에서 내뱉지 못하였고 내가 미혼모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한참동안 힘들었다. 아이와 살아야 하기에 앞만 보고 살아오면서 이 세상이 왜 미혼모에게 힘든 세상인지 알게 되었다. 1 년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되어 간 직장에서, 미혼모라는 사실 때문에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5 일 만에 그만두게 되었을 때, 세상이 미혼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알게 되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와 산속에서 살았다.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 나올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내 아이를 위해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내 아들은 이 사회에서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굴레를 평생 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아이를 책임진 것뿐인데 세상은 나에게 잣대를 대고 비난하고 그 비난들이 내 아이에게도 돌아오고 있었다.

◆ 엄마로서 나

나는 8 살 준서의 엄마이다. 언제나 미안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엄마이지만 그런 엄마를 항상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하고 사랑한다는 아들을 둔 행복한 엄마이다. 나는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기관에 보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엄마이기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하다. 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시간만큼 더 많이 사랑하려 노력하는 엄마이다. 나도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에게 화내고 고함지르고 가끔은 회초리도 들지만 언제나 아이에게 미안하고 또 감사하며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다. 아이는 그저 아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온 8년이었다.

열심히 살아가면 세상이 나를 인정하리라. 그렇게 내 아이를 지켜 주고 싶었고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얼마 전 이유 없이 아이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음을 쏟아 냈다. 왜 우느냐고 물어보니 그냥 마음이 아프고 슬프단다. 무엇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아프게 하는 것이지 몰라 그냥 같이 아프고 힘들었고 그냥 안고 울기만 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지치고 힘이 들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이에게 화를 내었다. 그런 내게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엄마가 나를 낳았으면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내가 왜 헤아리지 못하였을까? 내가 저 아이를 낳은 엄마인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아들인데. 미혼모라는 이유로 아이를 데리고 고향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친정 엄마의 생신 날, 아이에게는 출장 간다고 말하고 친구네 맡겼다. 내가 내려간 날 밤에 준서는 잠들기 전 이렇게 말했단다. "이모, 엄마 포항 갔어요, 외할머니 집에." 다 알고 있으면서 따라가겠다고 떼쓰지 않을 만큼 마음이 깊고 엄마를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나는 아이의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했다.

학교 입학 전 취학통지서를 받고 나 스스로가 대견스러웠고 혼자서 정말 열심히 살면서 아이를 잘 키워 온 게 자랑스러웠지만 나는 잊고 있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지탱해주고 중심이 되어준 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이제 아이는 학교라는 또 다른 사회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 8세 준서를 키우며 겪은 희노애락

8 살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미혼모가 되었다는 소식을 부모님께 전하기까지 출산 후 6 개월이 걸렸고 얼마나 힘들어하실지 너무도 잘 알기에 많이 망설였다. 아이를 키우면서 아들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다. 아이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고 싶었고 커가면서 이쁜 모습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었지만 지병이 있으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난 죄인이었다. 그렇게 홀로 버티기 3 년이 지나고 열심히 살아가는 내 모습에 부모님도 마음을 열고 계신다.

이제 8 살이 된 아들은 매일 잠들기 전 내게 숙제를 낸다. 너무도 어려운 숙제이다. 왜 아빠가 없이 엄마랑 둘이만 사는 거냐고. 또 어느 날에는 함께 목욕탕을 갔는데 5 살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목욕탕을 못 간다고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아빠랑 안 살아서 그런 거라고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고 나도 함께 울었다. 또 미혼모가 뭐냐고 물어보기도 한다. 나는 그냥 이야기해 주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엄마 미혼모라고. 그랬더니 나쁜 거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엄마가 나빠?" 하고 물었더니 아니란다. 세상에 모든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랑 함께 사는 건 아니라고 했더니 "응, 할머니랑 사는 애들도 있어." 한다. 살던 집에서 모자원으로 이사를 한 날 방도 하나뿐이고 집도 좁다고 아이에게 괜찮으냐고 물어보았더니 "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고 아주 의젓하게 엄마를 토닥여주는 아들. 그러고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엄마에게 "엄마, 엄마하기 힘들지?"라고 한다.

나는 이래서 늘 마음이 아프면서 행복하다. 언제나 함께할 내 아들이 있으니까. 아쉽게 흘러간 시간 속에서 아이가 내게 준 행복한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면 가슴이 벅차 오른다. 통통한 볼을 내 얼굴에 갖다대며 "엄마 사당해." 라고 말했던 순간, 고사리 손으로 삐뚤삐뚤 "엄마 생일 추카해요."라는 편지를 받던 날, 어느 해인가 아이의 키가 10 센티나 자란 걸 알게 된 순간, "나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편지를 받은 순간, 아이는 내가 그 어디서도 느끼지 못했던 벅찬 감동을 주었다.

◆ 한국에서 미혼모로 살아가기

한국에서 엄마로 살아가리란 참 힘들다. 특히 미혼 엄마들의 경우는 더 힘이 든다. 우리는 대부분 임신과 동시에 회사나 학교에서 퇴출당하고 출산 후엔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 많은 회사들이 편견 때문에 미혼 엄마들을 범죄자 취급 한다. 학교의 경우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지만,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이들에게는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닌다.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참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는데 왜 미혼모가정에 대해선 더욱 차별이나 편견이 심한 것 일까. 나는 결혼 제도가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선택은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우리에게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미혼의 엄마 중에 많은 수가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죄책감을 느끼며,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그렇게 몰고 간 경우가 많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제는 가족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조금이나마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강인한 엄마이며, 저출산 시대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일꾼을 키우는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많은 미혼모들이 더 이상 움츠리지 말고, 세상에 당당하게 맞서는 엄마가 되었으면 한다.

Human Library

Choi Hyung-sook(Child-rearing unwed mother)

As an unwed mother

I got pregnant at the not-so-young age of 35. Scared of the world, I was ready to give up my baby but after lots of thinking and agonizing, I decided to live as an unwed mother and I've been living as such for the past 8 years. Looking back, misgivings started to form about why it was so hard and way every day I wanted to die.

In the beginning, I couldn't even bring myself to say the words "unwed mother" with my own mouth, much less admit that I was an unwed mother myself so Ii went through a hard time for quite awhile after my son was born. Because I had to make a life for myself and my son, I only looked forward and as I lived as an unwed mother I began to realize why the world is so difficult being an unwed mother.

After finishing a one-year contract with a company, I was scouted to work for another company based on my credentials. However, because of the negative reception I received from my co-workers when I revealed that I was an unwed mother, I ended up quitting my new job within five days and it was then that I understood the way the world viewed at unwed mothers. For one month after that, I lived secluded with my son – I couldn't face the world, it seems so scary and overwhelming. But I realized that if I had to do something for my son. I realized that if the world didn't change, my son would live for the rest of his life in this society unable to escape the prejudice of being the son of an unwed mother. All I've done is chosen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son, but the world is criticizing and judging me based on a double standard and that criticism and judgement is reaching my son as well.

🛧 As a mom

I am the mother of 8-year-old Junseo. I always feel sorry and insufficient as a mother but I am a happy mother, because of my son, who can love a mother such as me and who thinks of me as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I'm a mother that after giving birth to my son, I sent him to an adoption agency for a week before I went back for him. Because of that, whenever I think of that time, I feel endlessly sorry to my son. But for as much as we couldn't be together during that time, I love him even more and am motivated to work even harder. Just like other mothers, I am a mother who gets angry at my son and yells at him and sometimes even spanks him but I am always sorry and thankful to him and I always love him.

I wanted to protect and raise my son, thinking that if I work hard and raise my son well, the world will eventually acknowledge my efforts and my family. I believed that was possible. Awhile ago, my son suddenly and with no reason buried his face in my chest and started crying. When I asked him why he was crying, he answered just because he was sad and his heart was hurting. I'm not sure what could make a young child cry like that but I just hugged him and we cried together, sharing our hurts together.

One day, exhausted and grouchy after getting off of work, I got angry with my son for no real reason. He said to me, "Mom, why don't you understand my feelings? You were the one who chose to have me..." I couldn't say a word to him after that for awhile. I wondered why I couldn't even understand what a young child was feeling? One that I had even given birth to, my son who I loved more than anyone in the world and who loved me unconditionally.

Because I am an unwed mother, I can't take my son to my parents' house, so for my mother's birthday I left him with a friend and told my son I was going on a work trip. My friend told me that before going to sleep that night, my son said, "Mom went to Pohang, to grandmother's house". Even though he knew the whole time, he played along with me, pretending not to know, for my sake – out of his deep love for me, this big-hearted son of mine. Why couldn't I understand even a little of what he was feeling? Before he started school, I received his enrollment documents and I was proud of myself for working hard to raise my son well all alone, but I had forgotten. I had forgotten that the reason that its was all possible was because of my son who helped support me along the way and centered me. Now my son has started school and his own foray into society.

The joys and sorrows experienced while raising 8-year-old Junseo

It has been a journey to get to this point with Junseo, now 8-years-old. I couldn't even tell my parents that I had become an unwed mother until six months after giving birth to my son. I hesitated because I knew how devastated they would be but while raising my son, he has been a huge source of strength for me. I went to create a family for my son and as he got older, I wanted to show my parents that their daughter was living well, but to my parents and the rest of my family, who live in the country, I had become a sinner. But after three years of seeing me working hard to raise my son, my parents finally opened their hearts back up to me. Now I give my son homework every night before he goes to sleep. It's a difficult problem to solve. I ask him every night, why does he live without his father, just with his mother. One day, we went together to the public bathhouse. In Korea, the cut-off age for children to go with their moms is 5-years-old and even

though I lied and said he was 5-years-old, we were denied entry. That day, sobbing in the middle of the street, he said it was my fault we couldn't go in, because I didn't live with his father. I cried with him. He also asked me what the word "unwed mother" means. So I told him, "an unwed mother is a mother who didn't get married and had a baby." He then asked me if that was a bad thing. So, I asked him, "Is mommy bad?" and he answered, "No."

When I explained to him that not all children in the world live with both their mom and their dad, he responded, "Right, there are some kids who live with their grandmas too." When we moved into the subsidized housing for unwed mothers, I asked him if our new house was OK, if it wasn't too small, with just one room. He maturely answered, "I"m fine, don't worry about me", trying to soothe me. And then seeing me carrying heavy boxes up the stairs, he said to me, "Mom, it's hard being a mom isn't it?" This is why my heart aches but is happy at the same time. Because of my son who is always there for me. If I start to recall the happy moments that my son has given to me, in this time which has flown by, my heart feels overwhelmed. The moment

when he said "I luv you" as he pushed his chubby cheeks against mine. The day he excitedly waved around a birthday card that he had moved for me in his little hand. The moment that I realized that at some point he had grown over ten centimeters in one year. The moment I received a letter for him that said, "Thanks for getting better and raising me". I had forgotten all those moments. My son has touched me by giving me all of those feelings and emotions that I could not have received from anywhere or anyone else.

Living as an unwed mother in Korea

It's hard being a mother in Korea and even harder being an unwed mother. For most of us, we are forced to quit school or our jobs when we become pregnant and after giving birth it only gets harder. In a lot of cases, due to prejudice, companies still treat us like criminals for being unwed mothers. In the case of schools, unwed moms aren't able to re-enroll and instead must prepare to take the GED, but it's not easy to study while raising a child alone. For the children of unwed mothers, this label follows them. There are a diverse range of family forms – multicultural families, families grandparentgrandchild families, one-parent families – and yet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families harsher than other families. While I think the marriage system does have its value, I also think it's the choice of the individual.

But even still, we must acknowledge this truth and in order to live well with our children, we must raise our presence. We have the right to be happy too. Among unwed mothers, there are many who feel guilty, thinking of themselves as someone guilty of committing a crime. An there are even many unwed mothers who even though they don't feel that way about themselves at first, they are made to feel that way by the people around them. We're not criminals. The world is changing quickly and so are the forms of families. If we are to acknowledge this fact, shouldn't we be able to escape this guilt even a little? I think unwed mothers should be applauded because we are mothers who have chosen to protect life tenaciously, we are mothers who are raising the children who will become the workers and citizens of Korean society, which is facing a population crisis. Unwed mothers should no longer cower and hide from society and instead, I hope we can become mothers who face the world with confidence.

인간도서관

김선영(양육미혼모)

행복한 런닝맘

32 살인 저는 미혼모입니다. 미혼모가 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혼모가 되는 거죠. 준비하지 못했기에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도 TV 에서 봤었어요. 어린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 대단하다 생각했지만 불쌍했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왜 사고는 쳐서... 돈도 없는데 아이를 왜 낳았을까? 낙태라는 선택도 있었을 텐데...'라고 그냥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나도 미혼모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혼모가 된 후 알았습니다. 미혼모는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학력도 상관없고 저소득층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아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 그리고 입양과 낙태라는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27 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혼모라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갈 때도 됐는데 미혼모라는 이유로 되풀이해서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당분간 계속 괜찮았다 힘들어졌다를 반복할 것 같습니다. 제 나이 32 살이지만, 그동안의 사회적 경력이 많아서 능력이 뛰어나지도, 모아놓은 돈도 집안사정이 넉넉한 편도 아닙니다. 20 대의 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꿈이 있었어도 '그 꿈이 실현이 될까? 나는 안돼.' 하고 싶었어도 한 달의 월급으로 월세비와 생활비와 이것저것 제하다 보면 남는 게 없다며 넉넉하지 않은 집안사정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왠지 결혼을 하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행복해질 것만 같은 상상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저는 요리도 웬만큼 하고 알뜰살뜰 살 자신도 있고,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아내로서 참 괜찮은 사람일 것 같았거든요. 흔히들 여자 팔자 남자 잘 만나면 된다는 말들을 어른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이를 혼자 키우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도 당연히 한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 나이 29 살이었습니다. 29 살에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아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누구보다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항상 우리 집 앞까지 데려다 줬고, 보고 싶다 말하면 달려와 주었고, 저보다는 어렸지만 일도 성실히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면서! 월급도 저보다 많았고, 저한테 충고도 해주고, 제가 하는 말도 잘 들어주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헤어지자 하면 정말 질리도록 끈질기게 사과했고,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물도 많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때 회사동료가 남자친구를 보았고 저희 팀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선영이 남자친구 완전 잘생겼어. 건축회사 다닌다며? 좋겠다." 그런 소문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연애를 하는 것이 싫지 않았고, 주위 친구들이 결혼해서 사는 모습의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요.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차도 없고 저와 비슷한 가정환경. 그때 당시에는 집 앞까지도 가보고 대화 내용들로 생각해봤을 때 나보다는 형편이 나은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보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인 것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을 만나고 출근하고, 매일 통화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면 안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임신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제가 임신하면 당연히 책임질 거라고 말했고 저는 당연히 그 말을 믿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말했을 때 "당연히 같이 키워야지."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며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30 살이 되기 전에 나도 결혼이란 걸 하는구나. 결혼식 올릴 생각은 안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었고 그런 형식적 절차보다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고백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알려줬던 집도 본인집이 아니고, 회사도 다니고 있지 않다고, 그렇지만 자신은 아직 젊으니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평생 갚으면서 살게. 사랑해.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이고 임신한 상태였고,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얘길 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꾸 시간이 갈수록 '집에 사정이 안 좋아서 말을 못했다. 시골에 내려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너 내려가겠느냐. 집에 빚이 너무 많아서 혼인신고를 할 수가 없다. 집에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내가 책임지겠다. 기다려 달라. 아니면 내가 왜 이러고 있겠냐.' 등등 대학교 다닐 때 연극부 회장이었다더니,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너무나 잘 흘렸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계속 거짓말임이 알았을 때는 이미 만삭이었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받았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은 계속 나오고 자살을 생각했고, 입양도 생각했고, 미혼모 시설도 알아봤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된 그 사람. 그래도 내가 만났던 시간이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이 있는데. 내가 진짜 사람을 못 봐도 이렇게 못 봤을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설득도 해보고, 토닥여도 보고, 미친 짓도 해보고, 이해도 해보고, 잘해줘도 봤지만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저한테 약간의 보조만이라도 해줬더라면, 아마도 좀 더 오랜 시간을 저는 참았을 겁니다.

그 사람은 단지 말만 계속 "책임지겠다." 라고 했을 뿐, 돈도 한 푼 주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같이 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급할 때 연락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며 생활비며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갚겠다고 빌려간 돈은 갚을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사람이 왜 살인을 하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그렇게 우습고, 우리 가족이 우습고 만만했었나 봅니다.

그 사람의 가족들! 가족들이라고 다를까요? 손은 안으로 굽더군요. 그래서 아이가 10 개월이 됐을 때, 아이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소송을 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최소한 본인이 한 아이의 아빠라는 건 당당하게 밝히고 살아야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들더군요. 사람들이 왜 양육비 소송을 안 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1 년 6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분명 그 상대편의 아버지한테 소송을 하겠노라고 밝혔고, 상대가 전화번호를 바꾼 상태라서 그 여동생한테도 소송중임을 밝혔지만, 어떤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아직 친자확인 검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고, 뚜렷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소송 안내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법 절차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거라서 그런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약자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고작 30 만원의 양육비 때문에, 안주면 받기도 힘든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양육비 소송 얘기가 처음에 나올 때 그러더군요. "내가 안 주면 너 받지도 못해. 내가 평생 회사 안 다니면 어쩔 건데?"이 사람은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사지도 멀쩡하고요. 술,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남자들은 참으로 편하구나. 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도망 다니면 되는구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거구나.

저는 아이를 행복한 사람으로 잘 키우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저는 천기저귀를 사용하고, 거의 두 돌 때까지 모유를 먹이고, 이유식도 제가 만들어서 먹이고, 아이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스킨십이라고 생각했기에. 또 이 시기가 아니면 아이를 언제 이렇게 많이 안아줄까 하는 생각에 정말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했고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는지 몰라서 부모교육이며 책이며 인터넷이며 노력하면서 키웠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며 키우려 합니다. 아직까지는 원 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이 주라서 아빠의 역할이나 아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듣거나 읽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면서 잘 키울 겁니다. 저희 아이는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행복해. 지후 행복해" "엄마 좋아~ 지후 좋아" "사랑해"라고 말을 합니다. 신중하고요. 백만불짜리 웃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 아이를 보면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애기 얘기에 팔불출이 되는 저는 엄마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이가 20 개월 때까지 제가 미혼모가족협회를 통해서 모니터링,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아르바이트도 하고 피부미용, 발마사지 자격증도 취득하고 정부보조도 받고 제가 모아둔 돈도 조금 있었고요. (점점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지만)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고, 제가 아이로 인해서 참 많이 성숙해졌음을 느낍니다.

아이가 25 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고 적응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일을 하는데 아이가 고열로 주말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그 주 일주일 동안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독감이니 단체 활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저로써는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변수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요즘 들어 다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저는 힘을 내야 합니다. 제 아이가 저를 보고 웃고 있거든요. 이 기간이 지나면 또 잘해 나갈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이를, 아직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11 시간씩 맡기면서 일을 하기에는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들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 상황이 다른데 내가 남들과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혼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뛰어야 된다고도 합니다. 예. 저는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집안 살림부터 아이 돌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가족과 주위사람들과의 관계유지도 하고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면서 그렇게 저는 뛰고 있습니다.

왜 저희 같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잘 키우는지 기준이 경제적인 부분에만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아이를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유아 시기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하는 시기고, 인생의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 행복은 아이이고 자산도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저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끝에는 항상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긍정적인사고를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의 굴곡에서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부모를 보고 아이는 너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 많은 것을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모자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혼모라고, 미혼모의 자식이라고 사회에서 가하는 배제와 편견도 저는 너무도 잘 압니다. 저 또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문제아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못나서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도 없는 것들이 애만 싸질러 놓았다는 말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을. 자기 자식을 책임 지지 않고 도망 다니는 남자를 비난하고 책임지우는 것이 맞는거죠.

제 주위에 미혼엄마들 많이 봤지만, 누구보다 아이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욱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산업이 너무 큰 발전을 했지만, 그로인해서 문제점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잘사는 사람보다 못사는 사람들이 더 많음에도 TV 광고 속에는 소비를 부추기고 여러 종류에 대출상품들은 늘어나고 가계 빛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명품을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좋은 차가 있어야 하고, 외적으로 반듯해야 하고, 남들의 시선과 나의 이기심들. 사람들은 경쟁사회에서 너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아이들의 인성문제와 성교육문제 등은 뒷부분으로 물러나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혼모가 됐을 때 내가 선택을 했고 개인의 문제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님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좀 더 앞을 내다봤으면 합니다. 국가의 가장 작은 단위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미혼모의 가정도 하나의 다양한 가정으로 인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됐으면 하구요.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고 있는 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아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계속되면 낙태는 계속 증가가 될 거고, 낙태를 못한다면 입양 쪽으로 증가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지 않나요? 뱃속에서 7 주만 되도 심장이 뜁니다. 뱃속에서 심장을 힘차게 뛰던 아이가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현실과 이 나라의 아이들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서 살아가는 현실이요. 국내입양이 많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국내건 국외건 입양한다고 해서 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한 정신의 부모 밑에서 끝까지 행복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도 미혼모로 살면서 사실 많이 움츠러드는 게 사실입니다. 당당해지고 싶지만 당당해 지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가 27 개월이지만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에 관한 제 소신은 뚜렷합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의 굴곡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런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한걸음 나아갈 것이고 그렇게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면서 행복할겁니다.

Human Library

Kim Sungyoung(Child-rearing unwed mothers)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I am 32 years old and a single mother. No one wishes to be a single parent. Most just end up being one. I was not prepared, so I was scared and terrified. I still am.

Watching TV, I used to see individuals who were raising a child on their own. The parent's endeavors were applaudable. At the same time, I could not stop myself from feeling a little bit sad for them. "They could have been more careful. They're so young. Why would one give birth to a child without any other plans or the sufficient economic background? They could have chosen abortion." These thoughts reeled through my mind. At that time, it was so easy to judge. I was not one of them and never thought I would be.

When I ended up in the same situation, I had a realization. Single parenting was not an issue just limited to the teens. It was not about age or education. It was not something of concern only to the low-income group, but something that can happen to anyone, even me. That was when I came to see adoption and abortion issues in a new light.

Even though little by little, I've gotten used to the idea of being a single parent my self-esteem can still drop because of being an unwed mother. It gets tiring. But then it becomes OK again, and I trust that I won't go through this cycle of emotion again for some time.

I am 32. I do not have a huge amount of social experience or social skills. I do not have much money saved up. My family is far from being rich. When I look back on my twenties I spent the day to day putting limits to my dreams saying, "It won't come true. I'm not fit for it." In addition to these thoughts, the monthly salary did not leave me much choice either. After taking out the rent and living expenses, I was left with a humble sum. This made me resent my own family situation.

One the other hand, I dreamt that marriage would be my turning point. I imagined myself being happy and exempt of all worries. I was confident that I would make a great wife. I could cook, manage the house, and be a trusted life companion. Many elderly people say a woman's destiny depends on who

she meets. No one I knew was a struggling single parent. Therefore, I did not have any doubts that I would meet a man, get married, and make a happy family.

Then I met one man. I was 29. He was not the first man in my life. He was just more dedicated to me than anyone I ever met. He would take me home every night, and come running to my house when I said I missed him. He was hardworking even at a younger age. He would tell me it was every man's duty. His earnings were above my own. He would give me advice and listen to all my troubles. He always tried to be his best in front of me. Even when I told him I wanted to end things, he would apologize and beg for me to return. He covered all dating expenses, and presents were commonplace.

One time, a colleague saw my boyfriend and told everyone at work, "Seonyeong's boyfriend is really good-looking. I heard that he works at an architectural firm". "Good for you!" they told me. The gossip was not bad. I came to enjoy it. It was not at all bad for others to be envious of who I was dating. Moreover, I wanted to live like my friends who were married. I did not doubt for a second that he loved me. Therefore, I was convinced I would be happy with this man.

Even though he did not have a car, I believed that we had similar family backgrounds. Guessing from our conversations in the past, I presumed that his family was a little better off than mine. That was also something that comforted me. I preferred marrying someone like me, as marrying someone with a background too different from mine would have made me feel small.

We met up every day before work, and called each other whenever we could not be together. These days, no one says you can't sleep with anyone before marriage. We also talked about pregnancy when dating. He was determined that if such a situation were to happen, one must take responsibility. I never doubted him for one moment.

When I found out that I was pregnant, he told me, "Of course we have to raise the baby together". I was more than excited. I could finally marry someone I love. I was finally getting married before 30. We did not plan a wedding. There was not enough money saved up and I considered the process superficial. The future was more important.

Then one day, he told me that he had something to confess. He told me that he lied to me. The house of which he told me was not his, nor was he working. But he told me he loved me, and he said that he would make it up to me from now on. He was sorry, but he also swore he loved me.

I still loved him. I was pregnant. He was kneeling before me, desperately promising his love and dedication. I did not doubt his love.

But as time passed, he started making excuses. "My family situation isn't good. We might have to live in the country. Is that ok with you? My family is in debt so we can't report our marriage. I have told my family, but there is

nothing that they can help with. I'm working part-time. I'll take care of you. Please bear with me. Why would I be doing this if not for you?" The list was endless.

He once told me he was the captain of his university theatre team. Maybe that was why he could bring up those tears whenever he needed. Everything that came out of his mouth was a lie. When I found out that everything was fabricated, I was at the full term of my pregnancy.

I experienced an incredible amount of stress while I was pregnant. I cried every day. I even thought about killing myself. I thought about adoption. I looked for single parent facilities, but I could not find the courage. Even though he was not the man I knew, that did not change the fact that this man was someone who I once loved. I could not forget the time we spent together, the things he did. I still could not believe that I did not see this coming. I did not want to admit my mistakes.

I was not ready to raise the child by myself. I tried every option of which I could think. I tried persuading him, begging him, cursing him, and screaming at him. Still nothing changed.

I could have more easily endured if he at least worked part-time and shown me any sign of effort. That never happened. He repeated the words, "I will take of you". But he never acted upon it. He did not support me; he did not report our marriage. We did not even live together. I could not even get a hold of him when I needed. I complained about the expenses for raising the child, and that I did not have enough money. He ignored me, and did not even think to return the money he borrowed from me. At that moment, I could understand the urge to kill someone.

He must have taken me for a fool. Our family must have felt so easy to him. His family! His family was no different. "The skin is nearer than the shirt," they say.

When the baby was 10 months old, I chose my child and my child only. I filed a maintenance order for my child's father to provide support. I thought it was the least he could do. I did not care about whether I could marry someone else or not. The least one can do for the child is to take responsibility as a parent, and to raise the child to be clean and honest. I believe taking ful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out in the open is the least a parent can do.

The lawsuit was tiring. I came to understand why people do not go though with maintenance trials. For me, the lawsuit continues on as we speak. A year and a half has passed already. This man changed his phone number. Therefore I still have not had the chance to move forward with the paternity test. I told the ex-father-in-law and ex-boyfriend's sister about the trial and keep them updated. The man has no fixed house address and does not have a stable job. Therefore, it is hard to communicate with him. The documents concerning the case take forever to move through the legal process, and the trial complications make it all the more burdensome. As the Korean Legal Aid Corporation carries out the case for free, I experience many obstacles. I realized that only people with no money end up being victims. For such a mere sum of money! Just 300,000 won for the child and even that is so hard to gain. When I first mentioned the lawsuit he told me, "You won't get a penny if I don't concur. What are you going to do if I don't work for the rest of my life?"

I blame myself for not seeing who he really was. My judgment was wrong. He served in the military. There is nothing wrong with him physically. He does not smoke and does not drink. I came to think how easy life is for a man in Korea. They can just run from it. Keep running. They can abandon their child and still getaway with it.

I want to raise my child with happiness. I want my child to be happy. In order to cut costs, I used fabric diapers. I breastfed the baby for nearly 2 years and by myself made the baby food. I believed the best way to make the baby feel loved was to keep one close to the skin. Also, I believed this was the only time I could hold the baby as close as I can. I kept the child close to me all the time. I tried to choose the best words to speak to the child and overcome my inexperience by looking up related books and information online. I will continue raising my child with all the effort I have.

For now, parental education is about family. Therefore, it hurts me when I see or hear the influence that a father figure has on the child. I admit there are some limits to what I can do. Nevertheless, I believe I am doing well, and I will try to keep it that way. My child started to speak. Since he started speaking, he frequently says "Mom, I am happy. Jihu is happy." "I love you mom. Jihu loves you." "I love you". He is prudent. He has a million dollar smile. Everybody loves him. When I start talking about him, I become such a fool.

Up to when he was 20 months old, I started part-time jobs including monitoring, survey, interviews, and so on and so forth through the Single Moms Family Association. I acquired a foot-massage and beautician license. I receive government support, in addition to money that I saved up (although it is gradually running out). I am more mature and happier as a result of the time I spend with my child as a parent.

When my child was 25 months old, I registered him to a playschool. He had to adjust to the change as I had to find part-time jobs. Then one day he came down with a fever. The doctor told me that he had to be kept isolated for a week and I had to be by his side all the time. As I had no other person to look after the child, I had to leave work.

I still have to think about what I should do when facing these kinds of problems. These days, my thoughts get complicated. But I have to pull myself together. My child smiles when I do. I believe at the end of the day, there will be a rainbow in the sky. There will also be more economic problems. I do not deny that I have difficulties leaving the child at playschool and balancing work at the same time. The child is still young and it may be too much to ask of him. "Everyone lives through it just the same." I heard that said many times. But I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to all the others, so I believe that I do not have to walk in their paths. I have to be more patient and endure more weight because I am alone. Yes, that is true. I work as hard as any other person. I manage the house, take care of my child, work and maintain my social network for a stable future. I work hard to pull through all the prejudice in society.

Why do financial issues have to be the sole judging factor for single parents? Is money the key to raising a happy child? Can money guarantee a child's life?

Childhood is the time when a child should get all the love they can get from the parent. This is the time that decides all the rest of the child's life. It is the first major step.

My child is my happiness. My child is my fortune. I thought over and over about what could be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child. At the end of the day, all I ask is for his happiness. I want my child to be abundant in body and mind. I want my child to have an optimistic view to life. I want my child to have the strength to go through all troubles life can bring.

A child learns so much from the parents. As such, I have to be the first one to change. Thus, I am continuously trying to do so. I lack so much. I know that because I am a single parent, the child will also suffer prejudice. I used to have prejudice myself. I now believe that a single parent does not raise a problematic child. A single parent is not alone because they are not worthy of a partner. Words that describe single parents in such terms are irresponsible, insufficient, and are way too biased.

I have seen a lot of single moms around me. They all love their child more than anybody in the world, and they work diligently. As they are a minority group, I admit the problems may seem more problematic. It draws more attention and seems like a bigger problem than it actually is. But isn't this largely due to the society's prejudice? Korea's economic growth outruns all other countries. But because of it, there are many problems we face. We can see this from the news.

There are more low-income groups than the high-income groups. Nevertheless, advertisements on television urge people to spend more and more money. All kinds of loans are taken out and household debt is increasing at an unbelievable speed. Still, people demand to have expensive 'brand' items. You have to have a shiny car, 'look decent', and be aware of the eyes of society. People live so fervently in a competitive society. Yet they forget what is truly important for a child. They forget to teach the child love. They disregard sex education as unimportant. They refuse to teach the child how to be happy. When I first became a single parent, I thought of it as a personal problem. I thought of it as a result of my choice.

I thought I could handle everything by myself. But when I started to raise the child, I realized that I could not rear the child alone. The child lives in a society, and the society is more than an individual can change. We have to look forward and into the future. They say a family is the smallest unit of a country. Families need to be happy for the country to be happy. I hope that single parents are recognized as a family in the near future. This is family in its own special way.

I hope there are more job opportunities provided to single mothers. Raising a child alone is nothing of which to be ashamed. It is not wrong to take responsibility for one's own child. Moreover, if the prejudice against single mothers lives on in our society, abortion will become common and gradually adoption rates will rise.

This is a tragedy. Even after 7 months, the baby's heart starts to pound. Isn't it sad that they are robbed from seeing the light? Isn't the reality of these children sent all across the world ever so tragic? Though domestic adoption is rising, this still does not guarantee the happiness of the child.

I, as a single parent, feel small from time to time. I want to be proud of being a parent, but the harsh reality makes this difficult. My child is now 27 months old. I am not absolutely sure what I should do, but my ideals and belief in my child are concrete.

I wish my child his happiness. I want him to grow up knowing he is loved and that he can pass through any ordeal the world brings. I work hard and live hard to reach that goal. I will take a step forward today. I will fall and rise now and then, but I will be happy to live as a parent of my child.

인간도서관

박희경(가명, 입양 생모)

안녕하세요!

37 년 전 한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 사람으로서 요즘 젊은 미혼모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부럽기도 하고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혼모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아이를 입양한 가정보다 턱 없이 적게 지원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 미혼모들과 아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더욱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견 또한 사라져야 한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아무 가진 것 없는 아이 아빠를 만나 노력만 한다면 잘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처음 월세 단칸방에서 지냈지만 그조차 어렵게 되어 기거할 곳이 여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 아빠를 의지할 수 없다 생각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찿았지만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입양 보낼 결심을 했습니다. 저 자신이 데리고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저의 삶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아픔과 죄의식 속에서 용기 없이 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엄마들이 없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해지고 자신의 아이를 아이 엄마가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다면 정말로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나 아이나 모두 가슴앓이를 합니다. 미혼모의 아이들이나 입양아들은 그 고통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은 자라면서 '내 친부모가 아니야. 난 피부색이 달라. 난 생김새가 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주위의 시선과 편견들로 인해 더 큰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소중함을 아신다면 더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우리 미혼모들을 좀 더 배려해 주시고 주위로부터의 편견이 사라진 안정적인 가정과 삶으로 회복시킨다면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양아들이 불행한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에게 양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해 주질 않고 거리로 내몰아 노숙자 생활을 하다 한국으로 강제추방되어 두 번 세 번 버림받는 아픔을 겪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양기관은 생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양부모들은 사회적으로 지성인들이며 지식도 꽤 높고 부유한 가정이라고, 그렇지 않다면 입양할 수 없다고, 입양 후에도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종교 단체 또한 임신한 미혼모들을 돌봐주고는 아이를 낳으면 입양시키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돌봐주고 그 아이를 입양시키기에 앞서 미혼모들을 일정 기간 돌봐주어 자립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엄마와 아이를 한 가정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 전 내 아이를 입양시킬 때 관여한 사회복지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지금 입양은 보내지 않고 그동안 보내진 아이들을 관리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그 시설을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는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아닌지요? 종교 단체에서 먼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의 이산 아닌 이산가족이 생겨나지 않고 한 평생을 아픈 멍울을 안고 살아가는 엄마가 더는 없었으면 하는 한 입양 생모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Human Library

Park Hee-kyeong (pseudonym) (Mother who lost child to adoption)

Hello!

As a mother who sent my baby to the U.S. 37 years ago, I think that it is a good choice for single moms not to send their kids away. It is a very hopeful sign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single moms; however, assistance to single mother families is less than that given to domestic adoptive families. I think authorities should support single moms and their kids more than ever so they don't lose courage and hope. Plus that, prejudice against single mom families should disappear sooner or later.

I delivered a baby girl with thoughts that my family could live together if the baby's father and I did our best. We lived in small monthly rental rooms, but things were getting worse. I decided to no longer depend on my baby's father, so my girl and I moved into my parents' house. I was trying to get a job, but I couldn't find a job while taking care of a baby only a few months old. Finally, I decided to give my baby up for adoption. I thought adoption would be better. I have lived with shame, pain and guilt for giving my baby for adoption.

I hope there are no more moms like me. Wouldn't South Korea will be a better country if it encourages single moms to raise their children? Many parents and children have a hard time when the kids arrive at puberty. Single mothers' children and adoptees go through painful times and they think that their parents are not their biological parents; their skin color and appearance are different from that of their adoptive parents. Prejudice against them makes the situation worse. We should care about single moms if we think children are very important and are our future in Korean society. Society will be healthier if single moms can live in South Korea without stigma. Not all adoptees are fortunate, however. Some who were adopted to the U.S. have been deported to South Korea because the adoptive parents didn't get U.S. citizenship for their children. It makes them homeless. I am very sorry to hear that news. Adoption agencies are telling lies and giving false information to biological mothers; I had heard that only parents who are intellectual and wealthy are allowed to adopt kids and that even after adoption the adoption agencies constantly gave services to adoptive homes. So how did this happen? In addition, religious organizations do their parts to take care of pregnant single moms and help them to give their babies up for adoption.

In my humble opinion, single moms should be encouraged to increase their independent living skills before organizations take care of single moms and help them give their babies up for adoption.

Not so long ago, I visited the adoption agency where I sent my child. Now the agency is no longer sending children for adoption, but it is doing services for those who were adopted. It is planning to build a facility to increase single moms' independent living skills. Isn't that a wonderful idea? I think religious organizations should first set an example. I hope single moms and their children no longer live with pain and regret their entire lives. Thank you.

로라 클런더(해외입양인)

내 이름은 로라 클런더이다. 나는 미국입양인이며, 내 어머니의 딸이다.

내가 입양되기 전에 친어머니는 가족, 공동체, 문화로부터 버려졌다. 이러한 부당함의 결과, 어머니는 내가 다른 곳에서 안락한 가정과 가족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를 포기하셨다. 그리하여 나는 입양되었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계급특권을 가진 백인가족을 얻은 대신 나의 정체성, 가족, 문화, 언어를 상실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친어머니를 향한 가부장적 폭력은 여전히 내가 미국에서 자랄 때 나를 대상으로 계속되었다. 나는 입양가정에서 맞았고, 쫓겨났으며, 버려졌다. 나는 학교에서도 쫓겨났고 병적이라고 낙인찍혔다. 집을 나와 길거리 생활을 하면서, 나는 추행당했고, 폭행당했으며, 버려졌다.

그 와중에서도 죽, 나와 같이 생긴 사람들을 악마취급하고 착취하는 인종차별적 미디어 메시지의 공격을 당했다. 나는 한번도 백인 입양가족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백인 커뮤니티에서 나처럼 생긴 롤모델을 가질 수 없었다. 그 결과 나는 내 몸을 혐오하고 나의 한국인 정체성에 분개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내가 경험했던 혐오가 싱글맘들이 그들 자녀를 키울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구조적 폭력과 연관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어머니와 연대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나는 여러해 전 어머니와 나를 분리시켰던 억압적 힘으로부터 우리의 집단해방 없이는, 나를 입양보내며 친어머니가 꿈꿨던 삶대로 살 수 없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아동권리옹호자들이 가족보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미혼모들과 입양인들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동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취약아동의 가족이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미혼모에게 가해지는 차별, 그리하여 그들 자녀들의 복지를 위협하는 차별에 대항하여 싸움으로써 미혼모들의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99

Human Library

Laura Klunder (Overseas Adoptee)

My name is Laura Klunder. I am a Korean American Adoptee. I am my mother's daughter.

Before I was adopted, my mother was abandon by her family, community, and culture. As a result of this injustice, my mother relinquished me in hopes that I may have home and family in another place. Thus, I was adopted. This means my identity, family, culture, and language were removed in exchange for a White family with socioeconomic class privilege.

Still, the patriarchal violence that targeted my mother continued totarget me as I grew up in the United States. At home, I was hit, chased, and thrown. At school, I was dismissed and labeled pathological. On the streets, I was harassed, assaulted, and discarded.

All the while, I was bombarded with racist media messages that demonized and exploited people who looked like me. I never saw myself reflected in my White, adoptive family. I had no role models who looked like me in my White community. Consequently, I learned to loathe my body and resent my Korean identity.

I now understand the hatred I experience as an Asian American woman is a continuation of the systemic violence that positions single mothers as unworthy of their own children. Thus, I return to Korea to be in solidarity with my mother. I wholeheartedly believe that I cannot live her dreams for me, without our collective liberation from the oppressive forces that separated us years ago.

Therefore, I urge child advocates to join unwed mothers and adoptees in the struggle for family preservation. In order to promote child welfare, the families of vulnerable children must be protected. Thus, those concerned with child welfare must be also be advocates for unwed mothers by fighting against discrimination that targets them and threatens the well being of children.

인간도서관

마이클 문(강용문, 해외입양인)

저는 두 번 입양이 됐었습니다. 첫 번째 저를 입양한 가족은 제 남매들과 저를 거의 1 년 동안 학대하고 고문하듯 괴롭혔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그곳에서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은 결국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16 살 때 제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도망쳤습니다. 저와 제 남매들은 학교에서 유일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였고, 그러한 괴롭힘으로부터 제 자신과 남매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미국전역을 여행하면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몇 년간 방황하였지만 가는 곳마다 인종차별에 부딪쳤습니다. 이제 35 살이 된 저는 폭력과, 마약, 인종차별이 있는 미국에서 벗어나 제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기로 결정 했습니다. 저는 두 번 입양되었지만, 가족이 없습니다.

2006 년 저는 제 친생 가족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 이후 3 번 더 방문했습니다. 제 한국 가족들도 매우 문제가 많았고 제대로 된 가족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가족 재회에 대한 향수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친가족들로부터 저의 입양 이야기와 왜 우리 남매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어머니와 그녀의 가족에게서 빼앗은 후에 어머니의 동의 없이도 아이를 입양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아버지는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양의 시스템과 사업이 번창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면서 이러한 과정은 억제되지 않고 오히려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제 남매들이 어떻게 미국으로 입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미혼모가 아니셨지만, 그녀는 남성들 또는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이나 자녀들의 권리를 빼앗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한 한국의 가부장적인 관습의 피해자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남자가 여자를 임신시키고도 그녀와 아이를 버릴 수 있고, 별다른 지원 없이 떠날 수 있으며 여자는 그녀의 가족, 친구, 회사로부터 미혼모 혹은 한부모라는 이유로 경멸과 차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이 오랫동안 미혼모의 아동들이 입양보내진 아동들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녀의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자녀와 그 어머니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법에 배우자 부양이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에 대한 실행조치나 강제집행은 없는 듯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 운전면허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되고,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혼모가족에 대한 낙인을 영속시키고, 가족보존과 미혼모 지원을 위한 의식을 높이는 활동조차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정부와 사회 또한 입양산업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십만의 한국 아이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들의 가족과 문화로부터 떨어져 한국 밖으로 내몰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매우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로부터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주목할 만한 경제력을 이룩하였다는 점입니다. 대단히 감탄스러운 점입니다. 저는 한국이 입양과 미혼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싱글맘들과 그 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고, 가족보존(family preservation)을 지원함으로써 그간 이룩해온 발전과 위상에 걸맞는 사회로 조속히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Human Library

Michael Moon(Overseas adoptee)

I was adopted twice. The first family abused and tortured my siblings and I for nearly a year, luckily we were rescued from them. The second family ended up being very dysfunctional. I ran away from them when I was 16 surviving on my own. I learned to fight at an early age to protect myself and my siblings from being bullied because we were the only Asian kids in school. I travelled all of America, wandering for years looking for a place to call home and encountered racism and discrimination everywhere I went. I am 35 now and decided to return to my birth land to get away from racism, drugs, and violence in America. I was adopted twice but have no family.

I first came to Korea in 2006 to meet my birth family. Since then I have made 3 more trips back. My Korean family is also very dysfunctional and no one seems like each other. The nostalgia of reunion seems to have worn off. I learned from them my adoption story and why we were relinquished. I learned that in Korea a father can kidnap the children away from a mother and her side of the family and give them away for adoption with no approval from the mother and without consequences to him. That a thriving adoption system and business and a lack of government oversight allows these activities to go unchecked and even encouraged. This is how my siblings and

I ended up adopted to America. My mother was not a single unwed mother but none the less she was a victim to Korea's patriarchal customs giving men/fathers the freedom to commit crimes against mothers and children's rights. I have learned that in Korea a man can get a woman pregnant then abandon her and the child, leaving them without his support and left often on the receiving end of scorn and discrimination from her own family, friends, and work environment for being an unwed or single parent. This I learned is a major factor contributing to around 90% of children being sent for international adoptions for some time now. The father of this child faces no responsibilities and does not have to financially support this child and mother. If there is a law stating spousal support there seems to be no enforcement or implementation of it. In America if a father does not pay child support he will receive penalties from the state like fines, revoking drivers licenses, and I've heard of cases of imprisonment.

The government and society are also complicit in this adoption industry by perpetuating the stigma around these cases and by not actively raising awareness for family preservation and support for these single mothers. I am disappointed to have learned that these are the real reasons hundreds of thousands of Korean children have been systematically driven out of Korea away from our families and culture. I like Korea for many reasons, one of them that korea has developed itself into a considerable economic power so quickly from the destruction of wars, its admirable. I hope that soon Korea will match these accomplishments by developing its understanding and fulfilling its obligations to single mothers and children's rights and support family preservation.

한국사회의 해외 입양과 친모에 관한 보고

김 호 수

뉴욕시립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스태튼 아일랜드 캠퍼스)

들어가며

한국에서 해외입양은 지난 50 여년 간 정부 추산 약 십 칠만 여명, 비공식 루트를 통해 입양이 이루어진 해외입양 숫자까지 더하면 약 이십여 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에 준하는 수의 여성들이 친모로서 해외 입양을 보낸 경험을 한 셈인데, 그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입양을 보낸 친모들에 대한 기록은 입양 초기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아나 미아라는 이유로 친모나 친부의 동의 없이 해외 입양을 떠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은 기록은 더욱 부재한 상황이다. 그들은 누구이며, 왜 자식을 해외로 입양 보내어야만 했던 것일까?

흔히들 해외입양의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경제적 빈곤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은 한국전쟁 이후 총체적인 대붕괴를 겪은 후 들어선 군사정권이 수립한 '선성장 후분배'를 기조로 한 경제개발정책 하에, 국민 복지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요구는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복지 제도의 부재로 인해, 각 가정의 경제적 파탄은 곧 가족의 해체를 의미했으며, 이는 특히 여성과 아동을 취약하게 하였다. 이처럼 국가 정책이 전혀 부재했던 상황에서 해외 입양은 여성과 아동이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편이자 유사 아동복지제도로 기능하였고, 이는 사실상 복지에 대한 부담을 해외로 전가하는 국가의 정책적 방향성이 초래한 회복할 수 없는 상처이다. 둘째, 무책임한 미혼모들이 해외입양을 보낸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해외 입양의 역사에서 통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또한, 미혼부와 양가 가족은 거론하지 않은 채, 아이 낳은 여성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가부장제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미혼모=해외 입양의 등식은 깨어져야만 하며,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하고 싱글맘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술사 참여자에	대한	인구학적	분류
----------	----	------	----

이름	출생	혼인	입양	입양	기	입양	아이와	입양	상봉
이금	연도	상태	연도	국가	관	결정	이별장소	시기	여부

1. 노할머니	1937	S	S	1974	미국	· 야말 – 티	본인	공항	14 살	Y
2. 임순자	1948	S	М	1975	미국	<u>호</u> 트	본인	기억안남	5 살	Y
3. 김성희 (2)	1959	М	М	1985	미국	·야말 티	남편/ 시숙	병원	출생직 후	Y
4. 박혜숙	1966	S*	М	1985	미국	·야희 또	본인+ 남편	아동일시 보호소	2 개월	Y
5. 김순애	1954	S+	S	1977/ 8	스위스	ふ 11日	본인	입양기관	11 개월	Y
6. 신영은	1960	D	М	1987	프랑스	형	본인	입양기관	9 살	Y
(2)				1987	프랑스	트			5 살	Ν
7. 이재기	1954	М	М	1980	덴마크	<u> きまい 100</u>	본인 **	병원화장실 앞	11 개월	Y
8.				1984	미국	동 방	본인	수녀운영 모자원?	출생 직후	Y
정윤숙 (2)	1948	M	S	1985	미국	· 야희 - 프	본인	성남 홀트 관계 병원 [교회장로]	출생 직후	N
9. 이미경	1965	S	М	1983	프랑스	 전 	본인	미혼모 시설/병원	출생직 후	Y
10. 김정민	1990	S	S	2008	모름	대 한	본인	미혼모 시설/병원	출생직 후	N
11. 유채림	1990	S	S	2005	미국	한 국	본인	미혼모 시설/병원	출생직 후	Ν
12. 장연자	1959	М	S	1976	미국	대 한	당숙모	친척집	11 개월	Y
13. 신선희	1940	М	М	1978	네델란드	한 국	본인	조산소	출생직 후	Y
14. 박애경	1960	М	М	1993	미국	에 피	본인	미혼모 시설/병원	출생직 후	N
15. 이미순	1935	S	S	1975	벨기에	대 한	본인	입양기관	5-6 개월	Y
16. 조복순	1951	М	S	1982	프랑스	るも 王	남편	병원	출생직 후	Y
17. 박미희	1953	D	М	1980	프랑스	호텔 트	남편	이혼 후 남편이 데리고 감	3 살	Ν

18. 양숙자	1959	S	S	1986	미국	·야희 또]	본인	병원	출생직 후	Y
19. 수연	1964	S	S	1982	미국	에미 비	본인	입양기관	출생직 후	Ν
20. 민예진	1981	S	S	1997	미국	동 방	본인	병원	출생직 후	Ν
21. 김소정	1976	S	М	1999	미국	동 방	본인	미혼모 시설/병원	출생직 후	Ν
22. 김주희	1983	S	D	2001	미국	うちょう ほう	본인	병원	출생직 후	Ν

위의 표에 등장하는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음을 밝혀둔다. 구술연구 참가자의 혼인상태는 미혼은 S, 기혼은 M, 이혼은 D 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입양 간 자식과의 상봉 여부는 Y = 예, N= 아니요 로 기입하였다. 이들 중 세 명의 친모가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입양 보냈으며, 그 수가 이름 옆 괄호 속에 표시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바탕이 된 친모 구술사 연구는 2005 년에 시작하여 2012 년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각각 2005 년 5 명, 2010 년 6 명, 2011 년 7 명, 2012 년 4 명이 참여하였다. (친모 21 인, 친부 1 인) 친모의 연령대는 인터뷰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23 세부터 76 세로 폭넓게 걸쳐 있고, 그들이 입양을 선택하게 된 배경 및 경위로는 혼혈아동, 빈곤, 미혼모,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 그리고 아동의 장애 등으로 다양하다. 입양을 결정했을 시점의 친모의 나이 또한 열 여섯부터 마흔에 이른다. 이들 중, 혼혈아동 출산은 2 명, 혼외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는 2 명, 미혼모로 아이를 낳은 경우는 7 명이다. 그 나머지 11 명은 소위 '정상가족'의 틀 안에서 아이를 출산, 입양을 보내었다.

[1] 입양을 보내게 된 계기 및 배경

구술사 서술을 한 친모 중 상당 수에 있어 입양을 결정하게 된 큰 요인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삶에서 입양은 단발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때로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여성이 그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필연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1) 성폭행 : 스물 두 명 중 네 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고 그를 시작으로 입양을 간 아이의 친부와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당사자들은 "옛날에는 여자가 몸을 버리면 그 남자랑 그냥 사는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결혼하고 출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증언한다. 또한 이는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05 년 십대 중반에 임신을 경험하고 입양을 결정한 서채림 씨 또한 골목에서 여관으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로 임신을 경험하고 입양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2)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직접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폭력 뿐만 아니라 가정을 돌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포함된다. 구술자 중 네 명이, 입양을 보내게 된 계기 및 배경으로 상시적인 가정폭력을 짚는다.

"살려고 나왔어요. 살려고. 임신상태에서 그 날도 (남편이) 막 때리니까 나와서 그런 도와주는 데 갔다가 여기(미혼모 시설)로 왔어요. 처음에 입양을 보낼 생각도 없었어요. 딱 죽고만 싶었어요." (박애경 1993년 입양)

"그 때 그 사람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했어요. (울먹이며) 처음엔 몰랐는데 (…) 그 날도 밤 늦게 들어와 가지고 막 때리니까. 그 때 이층에서 살았어요. 그 날도 막 도망 나오다가 이층에서 구른거야. (…) 한 몇 달 친정에서 누워 있었어요. (…) 나는 이혼하러 가자고 막 끌고 가니까 나는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나는 이제 이혼하기 싫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해방이 되는 구나. 그걸 엄마한테도 말을 못 했어. 맞은 걸. 혼자서 당하고. (…) 그랬는데 애기를 데려가거나 난 그 생각은 못했죠. 에기는 줄 줄 알았죠. 막 억지로 잡아 뺏다시피 해서 애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기를 뺏긴 거지. (…) 그래서 난 어디서 잘 키우고 있는 줄만 알고…" (박미희 1980 년 입양)

"여기 나 머리가 없어. 하도 에 아빠가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우리는 정말 집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 때 당시에 무스탕 비쌌어요. 애 아빠는 무스탕 입고 차 끌고 그렇게 다녔지. 제대로 된 직장은 없고 여기 저기다 돈 빌려다 쓰고 그러면 내가 그 돈을 갚아야 되고 (…) 그러다가 아이들을 입양하게 됐어요. 두번째 입양할 때는 배가 아파 올 때 성남에 있는 홀트를 갔어. 거기서 남편은 안에 안 들어올라고 하니까 밖에 있고 내가 들어가서 싸인하고 애 낳고 그랬어요." (정윤숙 1984, 5년 입양)

"자기가 노가다라도 나가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되는 데 전혀 그건 없고 여전히 경마장만 다니는 거야. (…) 그라더니, 나를 데리고 한 날 어디 좀 가재요. 나는 뭐도 모르고 애기를 업고 쭐래쭐래 따라갔지, 어디 가는 버스인지도 모르고 타고 따라갔어. 거기가 미아리라는 데예요. 미아리, 그 인자, 그 피를 빼서 파는 데라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피를 한 번 빼 가지고 파는데 그 때 당시에 6000원 받을 때. 그 때 당시 6000원. 그 간호사가 하는 소리가 "아유 아저씨 더 이상 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또 오셨냐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고." 나보고 피를 빼래요. 밥도 못 먹이고, 항상 젖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밥도 못 먹어서 젖도 안 나오는데 (…) 도저히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 그래서 내가 애를 업고 그 자리에서 뛰쳐 나와버렸어요. 나를 마당으로 불러내더니 (…) 이종언니한테 돈 좀 빌려오래요. (…) 그래서 더 이상 말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나왔어요. (…) 에기 두고, 그 상태에서 나왔어요. (장연자 1976년 입양)

[2] 입양 절차와 관행에서의 문제점

구술사 연구 중 만난 친모들의 서술에서 종종 입양기관에서 부당한 처우, 권리의 침해 및 박탈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것이 비단

입양기관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사설 기관에 여성 및 아동 복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적절한 지원이나 감독에는 소홀했기 때문에 그처럼 잘못된 관행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미혼모 시설⁹에 미혼모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자유를 일임한 과거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실질적인 법적 근거로써 많은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한 주범이었다. 아래의 소개된 친모들의 서술은 정부의 묵인 하에 가능했던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두며, 지금이라도 입양 절차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친모 양숙자씨는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성폭행을 한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 남자와 헤어지기를 원했다.

"아빠가 가정이 있는 남자였는데 모르고 동거를 시작하고 한 몇 개월 지나서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걸 알았죠. 그런데 이제 헤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거생활을 유지하는 사이에 입양 간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애의 호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식으로 결혼한 부인 밑으로 호적을 올려야 되요. 그러니까 내 단독으로 엄마 밑으로 호적은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고 엄마 밑으로 만들려고 하면 동거인으로 올려야 되요. (…) 첩의 아들로 사회생활은 어렵다고 보셔야 돼. 그때 당시에(…) 그래 애가 어떻게 어떻게 학교는 졸업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회사에 취직하는 거는 공무원도 안되죠. (…) 임신 육개월째인가 잡지를 보고 홀트 아동복지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좀 좋은 가정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나는 해외입양은 절대 반대다. 해외입양이 될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달라. 조금 우수한 한국가정에 갈 수 있으면 내가 입양을 원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다시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홀트를 찾아서 일단은 맡기고 보냈는데 (…) 내가 분명히 입양보내기 전에 단서를 정했잖아요. 나는 한국입양을 해 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나한테 다시 얘기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보내고요. (양숙자 1987 년 입양)

1982 년 이미경씨는 열여덟의 나이에 큰 방직공장에서 미싱일을 하며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한 살 많은 고향 오빠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어린 나이와 뜻밖의 임신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낙태를 했었으나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몇달을 기다리다 낙태시기를 놓쳤다고 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형님이 저를 동네 조산소에 데리고 갔어요. 조산소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저를 그리(미혼모 시설)로 보냈어요. 저는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갔어요. 근데 어디 봉고차에 나를 태우고 갔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신랑 허락도 안 받고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가게 됐어요. (…) 거기서 병원에서 애기를 낳았는데 낳고 나서 삼 일 만엔가 간호사가 와서, 간호사가 아니고 홀트 직원인 거 같아요. 아이를 안고 와서 아기를 한 번 볼 거냐고(…) 그래서 안 본다 그랬어요. (…) 그리고 그냥 보냈어요. (…) 제가 애를 보내고 삼 개월 있다가 홀트를 한번 찾아갔어요. 그때 저를 담당하셨던 분이 우리 애를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홀트에서 그래서 그런 줄 만 알았어요. 몇 년 동안을 계속 미국으로 간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안 사실인데 프랑스로 갔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민우가 6 개월 됐을 때 간 거예요. 그 때 당시 3 개월 때 여기 있었던 거야.

⁹ 과거에도 현재도 미혼모 시설은 전부 사설 기관이며 국가가 직접 전담, 운영하는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근데 나는 그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엄마가 찾아갔으면 그 쪽에서 상담이라도 해 줄 수 있잖아요. 애를 키울 수 있겠느냐 아니면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느냐 그렇게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미국으로 입양갔다가 (…) 이미 보낸 상태가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한 거죠." (이미경 1983년 입양)

민예진 씨는 열여섯의 나이에 아이를 임신하고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9 개월 쯤 할머니 손에 이끌려 보건소에 가게 되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보내게 되었다. 보건소에서 아이를 낳기 전에 어떤 종이에 아무 설명 없이 자신의 사인을 받아 갔다고 했다.

"낳으면 아이를 보내야 하는 걸 알아서 혼자 도망가려고 했는데 (…) 딴 데 가서 낳으려고. 거기서 낳으면 보내지는 걸 아니까. 보건소 사람들이, 내가 나가려고 준비하는 찰나에, 마주친거야. 집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 간 거죠. (…) 초음파를 하고 의사선생님이 그 보건소 사람들하고 무슨 얘길 했는지 몰라도, 의사가 날 딱 부르더니, 하는 말이 "아기를 보지 말고 보내자' 그 때 의사선생님도 그 전에는 한 번 봐라 이렇게 얘길 했었고, 근데 이제 바뀌었으니까 나도 멍하죠. 근데 나는 당일 날 아이를 낳아야 되고. (…) "싫다고" 그랬더니, 내가 지치도록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못 보게 된 거죠."(민예진 1997년 입양)

또 아이가 입양을 가기 전이라 하더라고 만남을 백일 이후에 처음으로 허용한다던지 그리고 횟수를 정해놓고 친모에 면접권을 제한한 사례도 있다.

"백일 지나서 처음으로 봤죠." (서채림 2005 년 입양)

"며칠 있다가 처음으로 봤어요." (김정민 2008 년 입양)

"자꾸 이렇게 마음 약해지면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면) 앞으로 애기를 못 볼 수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소정 2000년 입양)

2000 년 이후로 입양을 보내게 된 경우, 해외입양을 공개입양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서양에서 공개입양은 친부모가 입양을 보내고 난 후에도 입양인의 성장과정과 입양 가족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대안적인 가족의 연대를 형성해 나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공개입양은 편지와 사진을 받을 수 있는 입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많은 친모들은 절대비밀보장을 원칙으로하는 국내입양에 비해 아이의 성장과정을 사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공개입양, 다시 말하면 해외입양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래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진 서신 교환은 입양부모가 계속 할 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이에 친모는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

"저는 키우고 싶었는데 다 입양 보내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서 미혼모 시설 들어가서 입양을 보내게 됐어요. 해외입양은 공개입양이고 애기를 입양하기 전까지 만날 수 있는데 국내입양 같은 경우에는 완전 비밀로 하기 때문에 생전 찾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 저는 공개입양이라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 입양기관에서 갑자기 데려가려고 하는 양부모는 반공개만 원한신다는 거예요. 반공개는 그 때 처음 들었어요. 반공개는 사진을 한 번 받을 수 있대요. 아니 사진을 두 번 받을 수 있대요. 그게 (처음) 일 년 동안 사진을 두 번 받을 수 있고 그게 전부래요. 그 다음부터는 연락을 할 수 없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 보내고 나서 그 일 년 안으로 사진 두 번 받고 그 이후로는 받을 수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애기는 보냈지만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편지를 주고 받고 애기가 어떻게 크고 있고 사진도 볼 수 있고 제가 어떻게 해서 보낼 수 밖에 없었는지를 얘길 해 주면 그 부모도 그걸 아기한테 얘길 해 줘서 그렇게 선입견을 갖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이런 걸 바래서 공개로 했던 건데 그게 다 안 되고 그냥 사진 두 번 받는 걸로 땡이라고 얘길 하니까 되게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보낸다고 했을때는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좋게 좋게만 얘기해 주더니 이렇게 보내고 기관에 가고 나서는 이렇게 말이 바뀌어 돌아오는 거예요." (서채림 2005 년 입양)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절차에 대한 설명이 미비했다. 특히 친모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기도 했다.

"몰랐어요. 그냥 명함에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온 황재필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나? 예 그랬더니. 주희씨를 도와주려 왔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와주러 왔으니깐 자기들만 믿고 따라주면 된다고.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자기들을 불렀을때는 다른 답이 없다고. 찾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막 얘길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도장만 우선 찍으면 된다 해서 도장 찍고. 보내고 (…) 서류가 다시 하나 더 달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때 이제 그 다음 날 읽어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전화를 했죠. 아니다 했더니 벌써 가고 없다. 어쩔 수가 없다. (…)

포기가 되요? 안 되더라고요. 이길 수가 없는게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갔다고 하면 얼마든 찾을 수 있대요. 돈만 있으면, 데려올 수 가 있대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렇게 얘길 하는데 그 나라랑 네가 애 하나때문에 (…) 그리고 애 하나 때문에 싸울려면 되겠냐고. 그리고 이 계기 하나로 미국이란 나라에 우리나라 애들을 입양을 못 보낸다하면 이 많은 애들을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정부에서도 책임을 못 지지 않냐? 그래서 입양을 보내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김주희 2001년 입양)

많은 친모들은 입양기관의 서비스가 입양부모로부터 제공받는 수수료 (약, 한화 1500 만원)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신 입양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를 찾아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돈을 받는 줄 알았으면 입양을 안 보냈지요. 그러면 애기를 판 셈이잖아." (정윤숙)

"몰랐어요. 입양이 뭔지도 몰랐고 돈을 받고 주는 줄도 몰랐고." (김주희)

[3] 사후 서비스

스물 두 명의 구술사 참가자 중 대다수가 입양 간 아이의 소식을 찾으려고 입양기관에 먼저 연락을 취하고 입양인과 연락을 닿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입양기관 상담원으로부터 제대로된 정보제공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다. "지금은 담당자도 바꿨어. 벌써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바뀌었어. 담당자가. 전화하면 다른사람이 받고. 또 전화하면 다른 사람이 받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다 얘기하고. 성질 나더라고요. 나 진짜 며칠에 한 번씩 전화했었는데 요즘 전화 안한지 몇 달 됐네. 나더러 술집에서 애기 낳아서 버렸다는 둥, 여인숙엔가 있었네 (…)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바탕 싸웠어.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수연 1982 년 입양)

"내가 2007 년부터 우리 애를 찾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갔을때 담당이라는 사람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했을때 얘가 내 애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아버님 하면서 똑같은 사람 참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 그 쪽에서는 찾아줄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 쪽에서 연락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연락을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길 하니까, 찬 누구든지 거기에 찾으러 가면 기분 얹짢고 잘 대해주지 않습니다. 찾아줄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들한테 득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안 찾아줘요. (…) 그래서 텐마크 입양인 두 분하고 같이 갔어요. 언쟁이 벌어지고 그 사람하고 언쟁을 하니까 보스, 높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얘기를 했죠. 3개월을 기다리라고. 그때서야 찾아보겠다고 (…) 3 개월을 기다리라고 근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해서 오니까 이미 3 년 전에 2003 년도에 애가 찾아와서 메일을 냄겨놓고 누가 찾는다고 하면 연락해달라고 남겨놓고 갔더라고 이미 벌써." (이재기 1980 년 입양)

[4] 친모 증후군

친모 자신이 선택했든 아니면 친척이나 가족에 의해 강제 되었든 간에 입양은 모든 구술사 참가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엄마가 아이를 버렸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많은 이들이 입양 후 우울증, 무력감, 자괴감에 경험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가을 될 때, 찬바람 불 때. 하여간 찬 바람불면 내가 며칠 몇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우울증 같은 그런거 있었던 거 같애. 하여간 찬바람만 불면, 애가 어디서 추운데서, … 떨고 있는 거 같은거야.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겠고, 몇날 며칠동안 이불 쓰고 누워있고. 맨날. 지금 사는게 살아있는게 아니었어. … 지금까지도 진짜 밥을 먹어도 내가 맘을 편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한번도 잠을 편하게 자본적이 없어. 내가 너무너무 진짜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죽고 싶어 그냥". (박미희)

"그거 채워질 수 없는 거야. 아무리 아무리 뭘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고 공허함이지 공허함. 가슴이 뻥 뚫린 걸 뭘로 막아요. 바람이 지나가면 …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 같애. 이렇게 스쳐지나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 같야. 여기가 가슴 하나도 없는 거 같애. 몰라요. 아무 느낌도 없고. 나는 그 뒤부터 애들이 싫어요". (신영은)

"죄책감이 얼마나 … 난 산 게 사는게 아니야. 죽지 못해 살았다고 봐야 되고. … 정신이 딴 데 가 있는데 혼이 빠져 나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허상이야 허상". (박혜숙)

놀랍게도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열명의 친모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서술하였다. "죽으려고 했던 때가 아마 저희 에기가 미국으로 입양가고 나서 그 후에 인제 너무 속상해서 앞에 보이는게 인제 그때 못 조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걸로 죽으면 어떨까 … 그때 저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에기가 가고 나서 더 심해진 거죠"(서채림)

"그래서 갓난아기 놓고도 … 우울증이 그렇다. 나 3 년 동안 정신과 다녔어요. … 자꾸 (우울증 약) 먹으니까 내가 둔해지는 거 같애. … 나 딱 자살직전까지 갔는데 누가 날 잡아 가지고 그걸 살려놓은 거지. 못 먹는 술 먹고 차 끌고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어". (조복순)

"내가 그랬어. 애들을 입양기관에다 놓고 나오는데 거기가 이층이었는데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지. 애들을 보내놓고 내가 약을 먹었지. 애들 보내고 내 인생을 다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산다고 했으면 안 보냈을 지도 몰라". (신영은)

"몇 번 죽을려고 했지. … 난 아주 쌍칼 마누라야. 여기. … 입양 보내고 십 몇년 지났을때 아이 아빠가 죽고 두 아이를 내가 혼자 길렀어요. 그러다 큰딸이 열여섯살 됐을 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온거야. 그래서 … 지금도 잠을 못자". (박혜숙)

[5] 친가족과 입양인의 상봉 이후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필요

과거 한국 정부가 해외입양을 오랜 시간 동안 유사, 유일의 아동복지정책으로 삼아왔기에 그와 관련된 친가족들의 수백 만이 넘는 실정이다. 흔히 친가족과 입양인은 상봉만 하면 곧바로 가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친모와 친가족, 그리고 입양인에게 상봉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또한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아 상봉이 일회적으로 끝나거나 가족 관계의 시작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입양인을 만난 친모들의 고민을 들면 아래와 같다.

(1)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 상봉을 하지 못하는 점

구술사연구에 참여한 22 명 중 14 명이 입양인과 상봉을 했다. 이들 중 두 명은 서로의 소식을 확인하고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만남조차 성사시킬 수 없었다. 상봉한 이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왔다가면 좋지요. 그런데 애들 먹는 게 그러니까 금방 삼백에서 오백은 그냥 깨지는 건 시간문제인 거예요. 아무 표시도 없이.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살잖아. 온다고 하면은 좋아요. 얼굴 보고 하니까. 근데 문제가 돈이야. 걱정이 앞서는 거야. 걱정이 왜냐면 온다고 하면은 얼굴 보고 그러니까 항상 좋은데 인자 걱정이 앞서는 거야. (…) 우리 엄마들이 좀 뭉쳐서 엄마들 목소리가 좀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서라도 (…) 뿌리의 집 마냥, 코룻이라도 하나 마련을 해 주면 얘네들이 와서 진짜 편안하게 묵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만" (장역자) (2) 언어장벽, 문화장벽으로 인한 오해와 진정한 관계 맺기가 힘들다는 점

"첫째가 언어문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하니까 너무 … 우리가 응어리가 안 풀리는 거야. 응어리가. 몇 수십년 쌓였던 거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다 못하니까. 애들은 다 이해한다고 해요. 왜 보냈는지.. 엄마의 아픈 마음을 안다고 하지만 그 깊은 속을 모르잖아. 그걸 다 툭 털어놔야 어휴 후련할 거 같은데 그게 안돼. 겉으로만 왔다갔다하고 진짜로 깊은 정도 못나누고 겉만 자식이지 호적은 거 가 있고 거 문화에 젖어있고 진짜 한국이라는 저 뿌리를 찾으려고 지들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모든 게 낳아서 부터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씩 정거장처럼 왔다가는 그런 데고, 모든 게 거기에 젖어있잖아요." (조복수)

구술사를 진행하는 동안 내내 친모들은 영어 못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통역과 번역을 누가 부담없이 해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맡기기도 부담이 가서 눈치 보여서 이메일을 자주 쓰고 싶어도 자주 안 쓰게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였다. 현재 친모들은 입양인 단체나 또는 입양기관 또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통, 번역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나가며

본 보고서는 싱글맘의 날을 맞이하여,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여성들의 삶과 상처를 기억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되었음을 밝혀둔다. 구술사 서술에서 읽을 수 있듯, 해외입양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그리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부재가 만나 생긴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해외 입양의 원인을 가난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 정책의 부재 및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는 외면하는 협소한 시각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까지도 해외 입양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낼 수 없다. 또한, 해외 입양을 미혼모 문제로 보는 시각은 불평등하고 이중적인 성도덕과 규범을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강제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오랫동안 미혼모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보호받을 자격 없는 모성이자,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모성으로 간주되어 입양을 강요당해왔다. 이것이 해외 입양이 결코 개인사에 그치지 않는 이유이다. 즉, 해외 입양의 역사는 가부장제적 사회질서와 국가가 함께 만들어 낸 이민사이자 여성사이다.

부록

2012 년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 공동 NGO 제출 보고서 2 차 사이클, 14 세션

제출: TRACK, 뿌리의집,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민들레회 문의: Ross Oke: <u>rossoke@gmail.com</u>

인권적 입장에서 본 한국의 국내외 입양

I. 서론

1. 다른 모든 대부분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입양, 특히 해외입양비율은 아주 높다. 이 글은 인권적 입장에서 국가정책이 만족한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두 가지 유형에 대해 확인한다: 입양과정에 남용을 통제하지 못하는 실패, 사회정치적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실패, 이 두 요인이 높은 입양을 만드는 요인이다.

2. 한국의 오래된 입양역사에도 불구하고, 입양과정에서 폭넓게 벌어지는 남용에 관해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규제 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를 교정하라는 국제시회의 반복적 요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적합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이 글은 이러 문제와 관련한 몇 가지 주요문제를 확인하고 행동을 위한 권고를 한다.

Ⅱ. 한국상황

3.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해외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 보다 가장 많은 시민을 해외입양 보냈다. 심지어 지금 현재도, 한반도에 휴전에 선포된 지 60년이 가까웠지만, 한국은 세계4위 해외입양국 이다. 4. 공식적으로 164,894 명의 아동이 2010 년 까지 한국에서 입양되었다.¹⁰ 그러나 이중 수만명의 아동은 입양서류가 없이 미군들이 입양했을 것이다. 2010 년에는 1,013 명 아동이 해외입양 보내졌다.

5. 공식적으로 1939 년 이래로 94,281 명의 아동이 국내입양 되었다. 2010 년엔 1,462 명의 아동이 국내입양 되었다. 그러나 국내입양아의 실제 숫자는 항상 공식적 숫자보다 많다. 2007 년 3,014 명의 아동이 '몰래' 국내입양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 국내입양아 숫자는 1,388 명뿐 이었고, 117%의 차이가 있다.¹¹

6. 약 12 만 명의 공식적 해외입양아들은 미혼모 자녀였다. 그리고 1990 년 대 이래로 매년 약 90% 정도의 해외입양아는 미혼모의 자녀였다. 국내입양아는 85% 가 미혼모의 자녀다. 그리고 수천 명의 미혼모의 자녀들이 '몰래' 국내입양 된 것으로 여겨진다.

7. 우리가 미혼모라고 하면서 미혼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한국의 가부장 문화를 강조하고, 여성이 여전히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몇 십 년까지 기혼남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져왔다.

8. 우리는 "미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혼모들이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이며, 그 표현은 과부나 이혼녀와 구별되는 표현으로, 이들은 미혼모만큼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

Ⅲ. 한국과 입양관련 규제 협약

아동권리협약

9. 2003 년부터 아동권리협약 위원회가 반복해서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¹² 한국은 계속해서 1991년 비준된 유엔아동권리협약 21조 (a) 절의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

10. 아래 절은 당사국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 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¹⁰ 보건복지부는 입양에 관한 모든 통계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¹¹ 한국 미혼모 복지 재검토: 선진국 해외입양, 관련 통계와 복지정책, 한국여성개발원 이미정박사, 2009.
 ¹² 아동권리협약 최종견해, 2003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¹³

Ⅳ. 아동권리의 주요 침해

A. 출생 "등록제" 대신 이용하는 출생 "신고제"

¹³ 2003 년 아동권리협약이행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의 서면 답변은 B 섹션 1 에 설명되어있는데 한국정부는 2 조(a) 항의 유보철회를 꺼려하고 있다.:

대부분 경우, 입양부모는 입양사실을 노출하기 보다는 입양아를 자기 친 자녀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강한 성형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약이 제시했듯이, 입양하기 위해 정부 소관관청의 허가가 요구된다면, 잠재적 입양부모는 공식입양절차를 밟는 것을 단념할 것이고, 결국 국내입양 감소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른 말로, 정부는 현존하는 "비밀입양"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 비밀입양을 통해 아동은 입양부모의 친 자녀로 법적으로 신고된다. 이러한 입양관행은 완전히 한국법의 밖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국내입양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가 한국정부에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관행의 지식이 논리와 정책으로 병합되었다. (이미지를 의식하는 한국정부는 지금 국내입양권장을 해외입양에 대한 대안으로 증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아동을 양육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라는 자문 대신에 "어떻게 하면 해외입양을 줄일까""라는 자문을 한 것 같다.)

2011 년 아동권리협약 위원회에 한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서면 답변했다:

2011 년 6 월, 국회 상임위는 입양증진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의하면 입양을 원하는 자는 가족법원의 허가를 요청하는 입양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 정부는 아동권리협약 21 조(a)항의 유보철회를 준비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법수정은 4 가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의해서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원래 4 가지 법안 중, 단지 하나의 법안이 최영희의원의 후원에 의해 전면 개정된 것이다. 우리 입양인들, 미혼모단체, 아동을 입양으로 잃어버린 부모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들은 공익변호사그룹공감과 3 년 동안 이 법안을 전부 작성했고, 최영희의원의 지원을 받았다. 다른 말로, 이 법안 사실 정부가 아니고 거의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전면개정 되었다.

2012 년 3 월 이 법을 시행한다는 발표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코리아헤럴드에 실린 "입양법 수정 표적이 되다"는 기사는 입양기관의 사회봉사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법원에 간다는 의미는 입양이 공적인 일이 될 것이며 모든 법적 단계를 거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입양부모는 자기의 사적인 입양을 비밀로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입양부모 희망자는 법원테두리 밖에서 입양할 뜻이 있는 싱글맘을 구할 것이다." 이 뜻은 여전히 사설입양기관들이 국내입양을 위해 아동인권침해는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정부아동입양기관이 없다. 모든 입양기관은 사설이다.. 11. 한국의 자발적 출생"신고제"로 인해 아동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있고, 이 신고제는 관공서에서 할 수 있다. 미혼모의 유아는 입양부모의 아동으로 신고 될 수 있다. 입양이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서 주선되면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고, 입양기관이 입양을 주선하면 관공서에서 부모는 입양기관이 원하는 데로 "신고서" 양식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출생증명서가 병원에서 주어지고(어떤 때는 아동의 이름이 없이도) 그것은 국가의 공문서나 법적 문서가 아니다. 게다가, 관공서에서 자발적 출생신고를 위해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지는 않는데, 이 출생증명서는 법적 문서로 아동의 장래 신분확인 용으로 제공된다. 이 자발적 가족신고제는 과거의 유물로 당시 집에서 출산이 흔한 일이었다.

12. 2007 년엔 3,014 아동이 몰래 입양 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당시 입양기관 없이 또는 아동의 친부모가 출생신고서에 어떻게 신고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양이 이뤄졌다. 이 숫자는 미혼모에서 태어난 아동 중 통계가 잡히지 않은 숫자를 추정한 숫자이다. 이 숫자는 총 미혼모에서 출생한 아동 중 계산 가능한 아동(고아원, 국내외 입양아, 미혼모 스스로 키우는 아동)을 빼고 계산 한 숫자다.¹⁴

13. 이것은 아동권리협약 7 조(1), 장애인권리협력 18 조(2), 인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4 조(2) 전부를 위반 한 것이고 - 이 조항들은 아동이 출생직후 등록되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14. 2003 년 아동권리협약 최종견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내입양은 소관관청의 허가나 관여 없이 이루어 질 수 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동의 최고이익을 위해 고려 한 것이 아니다."

15. 2011 년 아동권리협약 위원회 최종견해는 다시 이렇게 명시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현재의 법률과 관행이 어떤 상황에서건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보편적 출생 등록을 제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가 우려하는 바는 양부모 또는 공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출생등록이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엔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을 포함하여, 적절한 사법적 감독 없이 사실상의 입양으로 귀결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생 등록이 난민과 보호소를 구하거나 비정규 이주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데도 우려한다."

16. 가족등록법 49 조(2)(2)는 아동은 합법적 혹은 사생아로 태어났는지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미혼부모에게 태어난 아동을 불공정하게 낙인을 찍는다.

<u>권고</u>

¹⁴*Ibid*, 이미정 (2009)

17. 2007 년 가족등록법은 개정된 새법률을 통해 아동이 출생직후 자발적으로 부모에 의해 관공서에 신고되는 대신 주치의, 조산사에 의해 법적으로 출생등록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은 허위정보에 대해선 처벌을 해야 한다.

18. 정부는 출생등록이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무관하게, 이루어 지게 해야 하며, 그 등록이 아동 친부모와 일치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¹⁵ 더욱이, 이러한 등록이 미혼모 자녀에게 영원히 낙인을 찍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입양규제 실패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동의와 상담 남용

19. 우리는 아동권리협약 21 조(a)의 입양과 관련한 "통보된 동의"에 대해 우려한다. "그러한 상담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한국은 그와 관련한 사항을 유보하고 있고, 이 분야가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던 분야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유보사항이 철회된다면, 아동을 엄마로부터 분리시키던 관행이 "사회복지"로 한국의 역사만큼 존재 해 왔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국가는 상담과 입양 양도에 대해 적합하게 규제 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봉사자는 친모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 해 줄 정도로 훈련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려한다.

상담의 이해충돌

20. 소위 상담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의해서 하는 바 이것은 이해충돌에 저촉된다: 이러한 기업은 수수료를 받는 입양기관이고 임산부를 머무르게 하는 시설이며, 친모가 입양을 고려하는 동안 아동이 친모로부터 분리되는 시설인 것이다.

21.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1 년 국회는 2015 년 7 월 1 일부터, 입양기관이 임산부수용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을 통과시켰다. 그럼으로 현재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은 한 부모가족을 위한 사회복지기구로 변경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22. 그러나, 이 법의 정신과 목적을 교묘히 회피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입양기관은 벌써 법이 변경된 후에도 미혼모에게 "상당"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이미 요청한 상태다.

상담을 위한 최소기준도 없다

23. 정부는 상담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기준에 필요한 법이나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필요조건은 부모와 아동의 권리에 부속 될 수도 있다; 그 법은 친권포기, 포기에 대한 법적 결과 와 입양을 부속한다; 또한 관련 지원서비스(물질적, 감정적, 중재, 대가족 상담 등)를 부속한다.

¹⁵ 아동권리협약 최종견해, 2011

중요정보 은폐 혹은 허위정보제공

24. 위험에 처한 친모가 필요정보와 상담을 받지 못한다: 친모가 객관적, 사실, 기본적 정보를 받지 못한다. 입양에 관한 고려를 하고 있을 때 (예, 아동 양육에 관한 정보).

25. 친모는 공개입양을 원하면 해외입양을 "선택"하도록 상담 받는다. 해외입양을 통해서 입양부모와 서신과 사진교환 아동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듣는다. (그러나 한국 해외입양인들과 현재 입양부모들은 그런 입양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26. 반면, 국내입양을 할 경우는 아동을 만날 수 없다는 상담을 받는다. 왜냐하면 보통 국내입양인은 "비밀입양"때문에 자기가 입양 된 것을 모른다.

정부는 강제동의 혹은 동의 없는 아동포기를 허락한다

27. 미성년 미혼모 아동을 그 부모인 조부모가 입양 보냈다는 보고가 있다. 물론 법에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법은 없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이러한 관행이 받아들여 지고 있다. 2011 년 유엔아동협약 최종견해는 이렇게 그 입장을 밝혔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우려한다: 다수의 미혼모 아동은 입양을 위해 포기된다. 십대 미혼모의 동의 없이 그 미혼모 부모나 법정후견인에 의해서 자녀가 입양된다."

28. 아동 친부에게 통보 없이 친모가 해외입양을 위해 아동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입양기관들은 아기양육은 친모에게 만 달렸다고 아동포기문서에 서명을 강요한다. 그럼으로써 입양기관은 친부와 상의 하는 것을 회피한다. 이것은 친부의 친권을 위반 한 것이고, 친부는 아동이 태어난 것 조차 모를지 모른다.

29. 입양기관 상담의 첫 순서부터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친권포기 양해각서를 친모에게 요구한다고 친모들은 말한다. 비록 이 각서는 민법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친모들에겐 그런 것을 알려 주지 않고, 만약 친모들이 아기를 키운다고 하면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입양기관은 아동을 친모로부터 강제 분리시킨다

30. 아동을 입양 보내기로 했던 친가족이 아동을 스스로 키우고자 결정하면 입양기관은 그 동안의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한다. 이 경우 입양기관은 신용카드 지불은 거부하고 현금을 요구한다. 만약 친모가 현금이 없으면, 아동을 돌려 받을 수 없다; 그럼으로 친모가 충분한 현금을 가져 올 때까지 아동은 인질처럼 잡혀있다.

31. 입양기관에 머무른 한 여성이 아동 출산 후 아동을 스스로 키우려고 결정하고 입양기관으로부터 도피하여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신고했다. 그런 결정을 내린 그녀를 처벌하기 위해, 비록 친모가 아동과 같은 건물에 있고 가슴이 고통스럽게 부어 올랐는데도 입양기관은 친모가 아동을 보거나 수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정부는 권리 혹은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32. 정부는 소책자, 웹사이트, 현지출장을 통해서 권리와 서비스에 대한 알맞은 정보를 제공 해 주지 않는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편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 준다. 그러나, 입양과 아동복지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데 책임을 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33. 그 결과, "미혼모 상담"은 입양기관에서 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입양기관은 아동양육이나 다른 자원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여성이 아동을 입양 보내도록 상담해 준다. 입양기관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사인, 지하철 광고, 웹사이트를 통해 한다. 한국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미혼모"를 치면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로 전 페이지 링크가 걸린다. 그 결과 상처받기 쉬운 미혼모들은 입양을 가장 분명한 "선택"으로 직면하게 된다.

성인 입양인들이 신고한 절차척 남용의 경우

34. 2008 년 TRACK 은 국민권익위에 해외입양인 학대 건을 신고했다. 이 건에는 1960 년대부터 1970 년대까지 아동양도에 대한 불명확하고 위조된 문서의 다음과 같은 예도 포함되어있다; 친부모동의 없이 주변가족에 의해 입양을 보내기 위한 아동양육포기와 납치; 입양부모를 위해 입양아의 기록 위조; 아동의 출생기록부 위조; 신분증 교체 등. 추가로, 친부모에게는 아동이 유학 가는 식으로 되어서 입양 후 에도 친부모와 교류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입양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 입양부모의 직업 등 배경도 한국가족에게 부정확하게 기록되어있다.

35. 보건복지부도 우리 법 개정에 관련하여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남용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권고

정부는 아래와 같이 해야 한다:

36. 아동권리협약 21 조(a)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협의회가 권고한 것을 구체적으로 우선화 해야 한다.

37. "해외입양을 포함한 모든 입양 이행 시 분명하게 권한을 위임 받는 중앙정부기관 으로부터 사법적 감독과 규정을 충분하게 제공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8. "미성년 미혼모가 입양을 위해 아동을 포기할 때 동의를 얻는 것은 필수적이며 그 동의를 줄 때 미성년 미혼모는 감금상태에 있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한다."¹⁶

39. "강제로 아동을 입양시키려는 것으로부터 친모를 보호한다."1740. 미혼모의 집과 입양기관을 분리하는 집행일자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입양기관이 새로운 법에서 제공하는 "상담"의 정신을 교묘히 회피하지 못하게 한다.

41. 2015 년에 변경되는 법에 의해 미혼모집에 입양기관과 분리 될 것인바 그것을 준비하는 과도적 계획을 갖추어라. 그 계획엔 입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봉사자들에게 가족보호와 미혼모의 아동양육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42. 상담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정하고 입양기관과 분리된 객관적 상담을 제공하라.

43. 친부모와 상업적 기업(입양기관) 사이의 계약적 준수사항을 규제하라.

44. 친부모가 아동을 입양 보내기 위해서는 친부모 양쪽의 허락이 필요하며, 그 경우 친부모의 신분을 주의 깊게 확인한다.

45. 친권포기를 위한 양해각서를 입양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양해각서에는 분명하게 민법상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이 없다는 것을 명시 해야 한다.

46. 친부모가 아동을 되찾기 까지 아동을 인질로 잡아두는 것을 범죄행위로 간주 한다.

47. 입양특례법 3 조(4)(1)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는 정부에 있다고 명시한다. 입양과정의 모든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한국이 해외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입양은 사람의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거의 현재의 입양관행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입양인은 성인기에 친가족 찾기를 시작한다. 연구계획에는 입양인들과 그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투명성결여와 "합법적 기관"에 NGO 참가

48. 유엔아동권리협약 위원회는 2011 년 최종견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현했다. "해외입양절차에 관여하는 당사국 소관관청의 책임이 법적으로 성문화 되어있지 않고 중앙정부기관의 입양과 관련한 분명한 의무사항이 결여되어있다."

49.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중앙입양정보원은 2011 년 6 월 29 일 통과된 입양특례법 수정안 법적 근거에 의해 한국의 "중앙입양원"으로 설립되었다. 이 법은 2012 년 8 월 5 일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이 법의 이행에 대해 우려하는 데 왜냐하면 이법 26 조(1)과(3)에 따르면,

¹⁶ 아동권리협약 최종견해, 2011

¹⁷ 2011 년 아동권리협약 최종견해는 십대미혼모의 강제 아동포기 사례를 언급했다. 우리는 미혼모에 대한 보호는 성인 미혼모에게 까지 확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 운영하게 되어있고, 정관은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기로 되어있다.

50. 중앙입양원 정관작성 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 기관들은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입양특례법 개정과정에 있어서도, 정부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었다.

51. 중앙입양원 직원 중에는 입양인, 미혼모, 혹은 입양인 친가족 구성원이 귀중한 경험자로서 없다. 막대한 다수의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어를 하는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 짓는 한국 정부의 결정과정에 최소한 영어나 불어의 통역 없이는 참여 할 수 가 없다.

52. 2012 년 3 월 9 일, 당사지인 해외입양인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2012 년 3 월 29 일까지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입법예고"의 자세한 조례와 규정안에 대해서 대답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여기엔 중앙입양정보원을 위한 집행조례와 규정안도 포함되어있다. 이 안은 68 쪽의 한국어로 만 되어있고, 해외입양인들이 사용할 수 없고 한국인들만 사용하는 아래한글 파일로 한국어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있다. 우리 해외입양인들은 영어번역판을 2012 년 6 월 5 일까지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의 창의적 의견을 줄 수 있는 최종기한(3 월 29 일)이 경과 한 후다.

53. 개정된 입양특례법 25 조(3)는 해외입양인들 위해 입양기관의 장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54. 위 동일법의 36 조(4)는 대통령령은 입양인의 친가족찾기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정보의 범위, 신청방식, 정보공개절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입양인들이 대통령령안을 작성하는 데 포함시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부족한 친가족 찾기 서비스

55.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중앙입양정보원에 는 오직 한 직원만이 친가족 찾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입양인들과 친가족들이 접촉 할 수 있는 직원은 중앙입양정보원 에 오직 단 한 사람뿐이다. 지난 해에만 3,366 명의 입양인들이 (아마도) 친가족을 찾기 위해 입양기관을 방문했다. 중앙입양정보원은 입양인 담당 직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입양인을 위한 가족 찾기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한국가족을 위해서 서구에 있는 해외입양인을 찾아 주기 위해선 서구언어, 문화, 제도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지만 현재 중앙입양정보원은 이런 역량을 결여하고 있다.

56. 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2011 년 최종견해를 통해 이런 우려를 표현했다 "(현재의) 빈약한 입양 후 서비스, 특별히 해외입양인과 입양간 나라에서 언어적 어려움이 있는 입양인이 친가족을 찾으려고 할 때, 그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권고

정부는 아래와 같이 해야 한다:

57. 해외입양관 관련한 모든 문서는 해외입양 보낸 국가의 모든 언어로 번역하되 최소한 영어와 불어로 해야 한다.

58. 중앙입양정보원의 실무직원에 미혼모, 입양인, 친가족을 포함하라. 이 분들은 가치 있는 지식과 통찰을 중앙입양정보원에 이사들이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종종 이사는 "명의만"있고 실제 기능을 못할 때가 있다.

59. 입양기록은 중앙입양정보원의 중립적인 3 자에 의해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입양인들이 접근 가능 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도덕한 재정적 이득

60. 아동권리협약 21 조(d)는 해외입양과 관련한 "부도덕한 재정이득"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조항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61. NGO 들은 정기국회감사기간 동안 정부에게 이와 관련한 정보를 요청해도 된다. 우리 단체가 2008 년 정보를 요청 한 결과 입양 보내기 전 아동양육에 할당된 생활비(음식, 의료, 의복등)의 정부 기부금에 대한 여러 가지 오용과 남용사례를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알기로 이러한 입양기관의 남용에 대해서 처벌한 적이 없다.

권고

정부는 아래와 같이 해야 한다:

62. 매년 입양기관의 재정기록을 감사함으로써 아동보호협약 21 조(d)를 이행하여야 한다.

C. 다른 협약의 비준수

해외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63. 한국정부는 해외입양과 관련한 헤이그 아동보호협약 비준에 관한 확실한 목표일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64. 2011 년 한국정부는 해외입양과 관련한 헤이그 아동보호협약을 비준 하기 전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허가에 기초한 입양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와 그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정부는 2011년 하반기 중 관계부처간의 T/F를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을 세운다."¹⁸ 65. 사설입양기관은 정부가 새입양정책을 만들 때 일상적으로 상의하는 반면, 입양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러한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는 우리 NGO 단체들은 이러한 절차에 전혀 정부와 상의 할 기회가 없다. 정부의 T/F 에 참여하고 싶다는 우리의 요청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66. 2004 년 9 월 24 일, 한국정부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의정서의 조항 3(1)(a)(ii)은 해외입양의 아동보호와 협조 존중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선언했다.

67. 이 조항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중간단계에서 부적절하게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입양에 관한 국제법 적용을 위반"하는 것이며 당사국의 범죄나 형법에서 "범죄행위가 국내외적으로 혹은 개인이나 구조적으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충분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68. 한국은 헤이그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 중 유일하게 위와 같은 선언을 했다.

69. 게다가, 한국은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3 조(5), 10 조(1),(3) 항의 협약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간, 특히 여성과 아동, 밀매를 예방, 진압,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

70. 한국정부는 아직 인간, 특히 여성과 아동, 밀매를 예방, 진압,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 2011 년 아동인권협약과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은 최종견해를 통해 이 의정서를 권고했다.

<u>권고</u>

정부는 다음 사항을 해야 한다:

71. 해외입양에 대한 헤이그협약 비준 목표일자를 정하고 협의회가 권고한 구체적 우선화 작업을 한다.

^{18 2011} 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제가한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 서면 답변.

72.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3 조(1)(a)(ii) 의 해석을 변경하여 부적절하게 입양동의를 유도하는 입양기관종사자, 변호사, 의사, 관련 중개인들을 범죄자로 처벌한다.

73. 헤이그 컨퍼런스로부터 역량건설과 기술보조 / 해외입양과 관련한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밟기 위해 국제사법연구소와 기술보조 이용. 한국정부는 헤이그에 지원을 위한 어떤 요청도 아직 하지 않았다.

74. 인간, 특히 여성과 아동, 밀매를 예방, 진압, 처벌하기 위한 의정서 비준을 위한 목표일자를 정한다.

75. 아동입양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적절한 국제법적 도구를 준수하고 적합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확실하게 취할 것.¹⁹

76. 아동 매매를 예방, 감지, 조사, 기소, 처벌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의 협력 강화.²⁰

77. 연약한 아동매매의 원인과 뿌리 지적.²¹

V. 미혼모 권리에 대한 주요 위반

<u>A. 사회적 권리의 위반</u>

78. 2012 년 1 월, 20 세의 미혼 임신여성이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전화를 했다. 이 단체는 미혼모가족이 운영하는 유일한 단체다. 이 미혼모는 3 일 동안 음식을 못 먹었고 거주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태아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었다. 미혼모가족협회에는 미혼모를 위한 방이 두 개 밖에 없었고, 그 방엔 벌써 다른 미혼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없었고 의료지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미혼모가족협회는 그 미혼모에게 홀트입양기관에 가 볼 것을 권했다.

79. 1984 년 한국은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을 비준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입법, 법률개정, 규정, 관습과 실천 등의 조치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결혼여부에 무관하게 부모는 동등한 권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12 조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¹⁹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3조(5)

²⁰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10조(1)

²¹ 아동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10조(3)

80. 더구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계약은 "가족에 대해 최대한 넓게 보호와 도움이 따라야 하며,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라고 명시하였다. 우리 단체들은 편부모와 아동도 가족단위라고 믿는다. 한국정부는 1990 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동의했다.

81. 만약 한국정부가 이 협약의 의무사항을 지지한다면, 임신한 여성의 결혼여무와 무관하게 적절한 공적 서비스를 지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면 미혼모들은 기초생활을 위해 사설국제입양기관에 도움을 요청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재 극소수의 미혼모를 위한 시설은, 특별히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시설은 그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어떤 캠페인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미혼모들은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82. 2011 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성차별지수에서 여성 경제참여의 분야에서 한국은 135 개국 중에서 117 위, 전체적 양성평균지수에서 107 위를 차지했다. 고수입 국가 범주에서, 단지 3개국만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B. 미혼모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차별

83. 미혼모 아동도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서, 미혼모가족협회의 한 회원은 한 기혼여성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만약 내 아이가 미혼모 것과 같은 학교를 가면 우리 아이를 다른 학교에 보낼 거야."그러면서 그 기혼여성은 미혼모 아동을 아이가 아닌 "것"으로 불렀다. . 이러한 차별 태도는 아동권리협약 2조(2) 위반이며 이 협약 2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의 행위나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84. 2003 년 아동권리협약 2003 년의 아래와 같은 결론은 지금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권고에 대해 협약당사국 보고서는 부족하게 다루었다. 특별히 여아, 장애아, 미혼모아동에 대한 차별을 위한 공적 교육과 캠페인이 부족하다. 또한 미혼모 아동과 장애아동의 차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또한 헌법은 협약에 명시된 장애아, 출생 또는 신분의 차별은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C. 미혼모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위반

85. 직장도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미혼모가족협의 회원인 한 여성은 언론과 인터뷰를 한 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되었다. 다른 미혼모들도 임신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용주가 재계약을 안하고 해고된다. 그래서 미혼모들이 아동을 스스로 키우고자 한다면 빈곤상태에 놓이게 된다.

86. 이러한 차별은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11 조를 위반 한 것이며, 11 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한다."

8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가족이 없거나 전 가족이 빈곤상태가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종종 가족과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다. 더구나 이런 미혼모들은 아이 아빠로부터도 체계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왜냐하면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내도록 여전히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모 자신이 스스로 아이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아야 하는데 그 도중에 미혼모는 아이아빠로부터 갈등과 더욱 학대를 받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미혼모는 아이 아빠에게 감히 양육비를 지원 받으려는 시도 조차 하지 못한다.

88. 아동권리협약 18 조는 부모는 아동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2003 년 아동권리협약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지금도 진실을 담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많은 수의 이혼모와 미혼모가 법적으로 보장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89. 2011 년 아동권리협약 위원회 최종견해를 이렇게 명시했다.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당사국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우려한다; 미혼모 특별히 10 대 미혼모 경우는 국가지원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90. 국제인권지침에 따라 정부 지원에 대한 우선권은 현재와 거꾸로 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당 한달 정부지원금 순서는 아래와 같다: 가족집단가정시설 1 백 7 만원; 고아시설 1 백 5 만원; 양육시설 25 만원; 국내입양부모 10 만원; 미혼모나 이혼부모 5 만원.

VI. 시설화

91. 엄마에 대한 지원부족은 아동을 시설에 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입양홍보회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2 만 명이 아동이 280 개 시설에서 살고 있고 이 아동의 80%는 이혼했다. 이 아동의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1 년 12 월 한국국회는 아동을 3 년 동안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친권을 자동 종료시켰다. 이 법은 2013 년 7 월 1 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92. 국가는 이별한 가족이 재회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보다는 가족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아동이 시설에 살고 있는 한 시설은 물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아원장은 아동이 부모나 그 가족과 재회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93. 아동권리협약 25 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이 보호나 신체적, 정신적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경우 해당아동은 치료상황을 비롯해 양육 지정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94. 2011 년 최종견해를 통해 아동권리협약 위원회는 그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대안 시설에 대한 평가가 행정 관리만 있고 양육의 질, 기술, 전문가 훈련, 아동에 대한 대우를 평가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고 "또 부모와 연락을 잃은 아동의 부모 찾기 제도가 결여"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권고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95. 아동권리협약 2 조(2) 는 미혼모아동에 대한 차별철폐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을 철폐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현재의 학교폭력반대 캠페인에 사회권리 침해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 시키는 것이다.

96. 아동권리협약 다음 조항을 지지한다: 2 조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차별 반대; 7 조 아동의 등록권리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 8 조 불법 비밀입양과 합법적 입양 두 경우 다 아동과 그 친부모에 대한 원래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한다 ; 9 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20 조 아동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보조 받을 수 있는 권리; 35 조 납치, 매매, 밀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97. 아동권리협약 2003 년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위원회가 한국보고서를 검토 후 최종견해로 제기한 권고는 한국에서 부족하게 다루어졌다. 특별히 (a) 비준유보에 대한 철회; (b) 여아, 장애아, 미혼모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공공교육 캠페인 발전 부족."

98. 한국정부가 미혼모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캠페인을 해야 한다.²²

99. 정부는 미혼모와 그 아동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어야 하고 ,
 "입양주간"에 소비하는 정부예산만큼 이러한 캠페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²³

100. 10 대 임신모를 포함한 미혼모에게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한다.²⁴

101. "모든 공적·사적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보장하라. 이는 아동의 견해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가능한 한 시설입소아동을 가정환경 속에 재통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²⁵

²²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 2009

²³ 입양특례법 5 항

²⁴ 아동권리협약 최종견해, 2011

102. "법원 명령에 근거하여 또는 아동이나 양육부모에게 오명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아동양육의무를 집행하기 위한 모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강제집행을 하는 동시에 미불된 아동 양육비를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지불할 수 있는 정부기금을 조성하거나, 아동양육의무를 진 자의 봉급에서 자동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²⁶

103. 직장에서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기 위해 정부는 노동부의 감독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²⁷

104. 편부모가족복지법과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은 모든 미혼모들에게 최소 생활비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²⁸

105. "아동이 그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지원을 하고 아동을 위한 대안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²⁹

27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 시민단체보고서, 2011

²⁵ 아동권리협약 최종견해, 2003

²⁶ 아동권리협약 최종견해, 2003

²⁸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 시민단체보고서, 2011

²⁹ 아동권리협약 최종견해, 2011

Joint Sub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Second Cycle, 14th Session

Submitted by:

- TRACK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 KoRoot
- KUMFA (Korean Unwed Mothers and Families Association)
- Dandelions (parents who lost children to intercountry adoption)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TRACK: Ross Oke: <u>rossoke@gmail.com</u>

Monitoring South Korean Intercountry and Domestic Adoption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I. Introduction

1. What distinguishes the Republic of Korea from most all other countries is its high rate of adoption, especially intercountry adoption. This paper identifies two types of failures of the State to make satisfactory progress in realizing human rights: failures to regulate abuses in adoption processes, and failures to protect social and economic rights, which are key push-factors in the high rates of adoption.

2. Despite Korea's long history of intercountry adoption, despites its full knowledge of the widespread abuses in adoption processes, despite its economic capability to provide regulation, and despite repeated calls to take remedial action, South Korea does not take appropriate action. This paper identifies some major problems,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action.

II. Situation in the ROK

3. South Korea maintains the world's longest continually running intercountry adoption program, and has sent more of its citizens for adoption than any other country. Even today, nearly 60 years after a truce was declared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remains in the top four countries that send children for intercountry adoption.

4. Officially, 164,894 children have been adopted internationally from South Korea until 2010,³⁰ but perhaps tens of thousands of adoptions by U.S. military personnel, etc. have been undocumented. In 2010, 1,013 children were sent overseas for adoption.

5. Officially, there have been 94,281 recorded domestic adoptions since 1939. There were 1,462 officially recorded domestic adoptions in 2010. However, the actual number of domestic adoptions is always higher than the official number. It was estimated that 3,014 adopted children were domestically adopted in "secret" adoptions in 2007, a year in which there were 1,388 officially recorded domestic adoptions, a difference of 117 percent.³¹

6. About 120,000 of all officially recorded international adoptees have been children of unwed mothers, and since the 1990s, the rate has been at about 90% of international adoptees each year. The rate is 85% of recorded domestic adoptions, and it is presumed that the thousands of infants who are "secretly" adopted domestically all come from unwed mothers.

7. We mention mothers not to exclude fathers, but to emphasize that in Korea's patriarchal culture, the woman is still the person who takes the full blame for an unplanned pregnancy. In addition, it was socially acceptable until recent decades for married men to have affairs.

8. We use the term "unwed" because it is the term that the unwed mothers themselves use, and it distinguishes them from widows and divorced mothers, who do not face as much social discrimination.

III. The ROK and Treaties Relevant to Regulating Adop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9. Despite repeated calls from the CRC Committee starting as early as 2003^{32} , the ROK has not removed its reservation from Article 21(a)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it ratified in 1991.

10. The paragraph requires States Parties to:

Ensure that the adoption of a child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information, that the adoption is permissible in view of the child's status concerning parents,

³⁰ All statistics related to child welfare and adoption are maintain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³¹Reviewing Issues on Unwed Mothers' Welfare in Korea: Intercountry Adoption, Related Statistics, and Welfare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by Dr. Lee Mi-jeong for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9.

³² CRC Concluding Observations, 2003

relatives and legal guardians and that, if required, the persons concerned have given their informed consent to the adoption on the basis of such counseling as may be necessary."³³

IV. Main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³³ The ROK's Written Responses to the List of Issues Rais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03 explained the State's reluctance to remove the reservation in section B.1:

In most cases, adoptive parents have a strong tendency not to disclose adoption but to want the child registered as their biological child ... In these circumstances, if adoption requires authorization from competent authorities, as provided by the Convention, it may discourage potential adoptive parents from going through adoption, resulting in a decrease of domestic adoption.

In other words, the State was fully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se "secret adoptions," where the adopted child is legally reported as the biological child of his adopters. These adoptions are completely outside the Korean law. However, the Government had considered such violations of human rights to be a necessary condition for domestic adoption, and as we can see from its statement, it had incorporated its knowledge of the practice into its logic and policy. (Domestic adoptions are now being promoted as an alternative to intercountry adoption by image-conscious South Korea.)

In its written replies to the CRC from 2011, the ROK stated:

In June 2011,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passed an amendme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which requires persons who want to adopt a child to submit an adoption request for approval by the Family Court. Through this, the Government is preparing to withdraw the reservations made to Article 21(a)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t is significant that the aforementioned law revision was drafted by a public interest lawyer through the efforts of our NGO coalition, and was sponsored in Parliament by a lawmaker who worked with us for over two years. In other words, the law change may not be interpreted as an active response to CRC recommendations by the Government 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ather, the law was drafted and passed thanks to the efforts of NGOs representing adult adoptees, unwed child-rearing mothers, and parents who lost children to adoption. While the Government had started research to revise the law, it never finalized its own draft bill.

The announcement in March 2012 that the law would be enforced drew media attention. An article called "Adoption law revision draws fire" in *The Korea Herald* quoted an adoption agency social worker as saying, "Going to the court means that adoption becomes a public matter which will undergo all the legal steps. Then, adoptive parents will find it difficult to keep their adoption private and secret. They would rather look for single moms who are willing to put their babies for adoption out of the court."

This means that the private adoption agencies still believe that violating the child's human right is a necessary and justifiable condition for domestic adoption. There is no state child placement service in Korea. All of the adoption agencies are private.

A. Use of Birth "Reporting" System Instead of Birth "Registration" System

11. Child-selling is made possible by Korea's voluntary birth "reporting" system, which takes place at city district offices. Infants born to unwed mothers may be reported as the biological children of adopters. This may happen when the adoption is arranged by a delivering doctor, and it may even happen when an adoption agency arranges the adoption because parents may write down whatever they want on the birth "reporting" form at the city office.

12. Because of this system that is a "reporting" rather than a true "registration" system at the hospital, it is estimated that 3,014 children were adopted without an agency and without recognition of the child's biological parents in 2007. This number is the estimated number of babies who were born to unwed mothers who then disappeared from the statistics. It w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number of children born to unwed mothers whose form of care could be accounted for (whether through an orphanage, domestic or intercountry adoption, or raised by mother) from the total number of live births to unwed mothers.

13. This is a violation of Article 7(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18(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Article 24(2) of the International Con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all which dictate that children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14. The CRC's 2003 concluding observations noted that "domestic adoptions may be arranged without authorization or involvem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at such arrangements do not necessarily take into accoun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15.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of 2011 again stated that "current legislation and practice in the State party are inadequate in providing for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by the biological parents of children in all situations. In particula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birth registrations can be undertaken by adoptive parents or persons holding public authority, resulting in the occurrence of de facto adoptions in absence of proper judicial oversight, including in situations concerning single adolescent mother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birth registration is not practicably or consistently available for persons in refugee, asylum-seeking or irregular migration situations."

16. Moreover, Article 49(2)(2) of the Family Register Act requires children to be registered as legitimate or illegitimate, unfairly stigmatizing children born to unwed parents.

Recommendations

³⁴*Ibid*, Lee Mi-jeong (2009)

- 17.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birth registration is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parents' legal status and/or origin, and ensure and verify that the registration accurately indicates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child.³⁵
- 18. Registration should be automatically done from the hospital, and the hospital birth certificate considered the "real" registration. This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system in which the hospital issues a birth certificate (sometimes without the child's name), but the "real" registration is considered to be the voluntary report at the city's district office.

<u>B. Failure to Regulate Adop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u> <u>Standards</u>

Abuses in Consent and Counseling Related to CRC

19. We are concerned about the section in Article 21(a) of the CRC regarding "informed consent" to adoption "on the basis of such counselling as may be necessary" both because the ROK holds a reservation to it, and also because this area has been a problem historically. If the reservation is withdrawn, we are concerned that because the practice of separating children from mothers as "social welfare" has existed as long as the ROK itself, the State will not adequately regulate counseling and relinquishment, nor will social workers be adequately trained to counsel mothers in any other way.

Conflict of Interest in Counseling

20. So-called counseling is done primarily by commercial enterprises that have conflicts of interest: They are simultaneously fee-based adoption agencies and residential care for pregnant women, and care facilities for babies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during the period the mother is considering placing the child for adoption.

21. Recognizing this, Parliament passed a law in 2011 stipulating that adoption agencies may not establish or run maternity homes from July 1, 2015. Unwed mothers' homes currently run by adoption agencies should be closed or changed into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one-parent families.

22. However, in an effort to circumvent the spirit and purpose of the law, the adoption agencies are already requesting permission to continue giving "counseling" for unwed mothers after the law change.

No Minimum Standards for Counseling

23. The state has no laws or regulations that require counseling to meet minimum standards. These requirements might pertain to the rights of the parents and the child; the laws pertaining to relinquishment of parental rights, legal consequences of

³⁵ CRC Concluding Observations, 2011

relinquishment and adoption; support services (material, emotional, extended family counseling and mediation), etc.

Withholding Essential Information or Giving False Information

24. Mothers in crisis are not given necessary information or counseling: They are not given objective, factual, and essential information (for example, information on child-rearing) when considering placing their babies for adoption.

25. Mothers are counseled to "choose" <u>intercountry adoption</u> if they want an open adoption in which they can exchange letters and pictures with the adoptive parents and talk on the phone with their child. (Adult Korean intercountry adoptees and currently adopting parents know that such adoptions are nonexistent on a systematic level.)

26. On the other hand, mothers are counseled to give their children for domestic adoption if they wish to never be reunited, since domestic adoptees usually do not know that they are adopted due to "secret adoption."

State Allows Relinquishment By Coerced Consent or No Consent

27. Cases have been reported in which the parents of a minor unwed mothers release their grandchildren for adoptio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RC in 2011 noted, "The Committee also remains concerned at ... The fact t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hildren born to single adolescent mothers are given up for adoption and that the parent(s) or legal guardian(s) of single adolescent mothers are allowed to authorise the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 in absence of their consent".

28. Cases have also been reported in which fathers were not notified that their child was relinquished by the mother for international adoption. Adoption agencies compel mothers to sign papers claiming they are solely responsible for their children, meaning agencies try to avoid the responsibility of consulting with biological fathers. This violates the parental rights of fathers, who may not even know the child was born.

29. Mothers report that even during the first session of counseling at adoption agencies, social workers ask them to sig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to relinquish their parental rights. Although this MOU has no legal meaning under the civil code, mothers are not informed that it is meaningless, and it is used to bully them if they want to take their children back later.

Adoption Agencies Enforce Separation of Babies from Mothers

30. Biological families who decide to take back children whom they initially left at adoption agencies are asked to pay a daily rate for childcare. Agencies want cash, not credit cards. If mothers do not have cash, they cannot take their children back; the children are therefore held like hostages until the mothers can find enough money. The Ministry of Heath and Welfare is aware of such cases.

31. One woman who stayed at an adoption-agency run unwed mother's home reported to KUMFA that after she gave birth, she decided to keep her baby. To punish her for that decision, the agency did not allow the mother to see or nurse her baby, even though her breasts were painfully swollen and the baby was being held in the same building.

State Does Not Provide Information on Rights or Services

32. The state does not provide adequate information on rights and services through brochures, Web sites, or outreach. There is one Web site called "With Mom" run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hich provides information for single parents. However, adoption and child welfare is under a different ministr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re is no effort by the ministry actually responsible for child welfare to disseminate information.

33. Therefore, the most readily available "unwed mother counseling" is performed at adoption agencies, who counsel vulnerable women toward adoption without giving information on child-rearing or alternative resources. Adoption agencies advertise counseling services at the street level through signboards, etc. and also online. If one types "unwed mother" into a Korean search engine, a page full of adoption agency-run unwed mother facilities comes up. This means that unwed mothers encounter adoption as the most obvious "choice."

Cases of Procedural Abuses Reported by Adult Adoptees

34. TRACK brought a sample of cases representing abuses in Korean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s to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n 2008. These cases from the 1970s-1980s included examples of unclear relinquishment papers and forgery; kidnappings of children and relinquishment for adoption by extended family members without parental consent; misrepresentation of the adoptee's social history to adopters; forgery of the child's birth registration papers; identity switching, etc. In addition, birthparents were misled to believe that adoption was like a study abroad program and that children would continue to have communication with their families after adoption. Adoptive parents' social backgrounds, such as their occupations, were misrepresented to Korean families.

35.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also aware of these abuses because they were the impetus for our law revision.

Recommendations

The Government should:

36. Set a target date to remove the reservation to the CRC Article 21(a) and take concrete priority measures as recommended by the Council.

37.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that all adoptions, including those in an intercountry context, are subject to authorisation by a clearly mandated central authority with adequate capacity to provide judicial oversight and regulation."³⁶

38. "Ensure that the consent of single adolescent mothers is mandatory for the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nd that they are provided with conditions that ensure that such consent is not obtained under de facto or actual duress."³⁷

39. Protect mothers against the forced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³⁸

40. Strictly adhere to the enforcement date of the law separating unwed mothers' homes from adoption agencies, and ban adoption agencies from circumventing the spirit of the new law by offering "counseling."

41. Enact a transition plan to prepare for the law change 2015 that will include retraining for adoption agency social workers in areas such as family preservation and support for child-rearing unwed mothers.

42. Set minimum standards for counseling, and offer objective counseling independent from adoption agencies.

43. Regulate the contractual obligations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commercial enterprises (adoption agencies).

44. Require both biological parents to relinquish a child for adoption, and carefully check their identification.

45. Ban adoption agency use of an MOU of relinquishment of parental rights or require that the paper state clearly that it is not a legally binding contract under the civil law.

46. Criminalize holding relinquished children hostage until their biological families pay to get them back.

47. Legislate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o document past adoption abuses and habitual Korean adoption practices. A systematic and 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adoption system would help the ROK to bring current practices up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part by identifying practices that should be avoided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ystem that has served as a model for all other mass intercountry adoption programs.

Lack of Transparency and NGO Participation in "Competent Authority"

³⁶ CRC Concluding Observations, 2011

³⁷ CRC Concluding Observations, 2011

³⁸ The CRC Concluding Observations of 2011 refer to the forced released of the children of adolescent mothers. We believe this protection should also be extended to adult women.

48. The CRC Committee's 2011 concluding observations expressed concern over "the absence of a clearly mandated central authority to provide regulatory oversight on adoptions and legislation codifying the obligation of the State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to intervene in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s."

49. The legal basis for KCARE was established through an amendment to the Special Adoption Law, which was drafted by our coalition and was passed in June 2011. From August 5, 2012, it is supposed to act as the "competent authority." However, we are concerned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because the mandate of KCARE must be decided by a Presidential Decree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0. Our NGOs representing adult intercountry adoptees, unwed mothers, and parents who lost children to adoption, which could have been helpful in defining the mandate, were repeatedly denied access 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on the implementation of our own law. We repeatedly asked KCAR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professors who were tasked with drafting recommendations to allow our participation in formal decision-making processes, to no avail.

51. KCARE has no adoptees, unwed mothers, or birthfamily members on its working staff. It has also failed to recognize that the vast majority of intercountry adoptees were not raised in Korean-speaking environments and therefore cannot participate in Government decisions about their lives without translation into English and French as a minimum. (At the time of adoption, the agencies provide translation into not only those languages, but also the Scandinavian languages, German, Dutch, etc., as well.)

52. On March 9, 2012, adult adoptees were informed, along with the rest of the public, that we had until March 29, 2012 to respond to the "legislation notice" that was issued by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 detailing the draft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regulations. The 68-page draft in specialized legal language was issued only in Korean, on a Korean-language Web site, in a software file format (.hwp) that only Koreans use. We were informed at the time that simultaneous English-Korean interpretation would be provided at an information session on June 5, 2012, although at that time, the deadline for suggestions will have already passed.

Inadequate Birthfamily Search Services

53. According to the Adoption Special Law, the Government must provide support for birthfamily search. However, KCARE cannot effectively perform its duty as a neutral central authority performing birthfamily searches because it physically holds no records. 54. Even if the records are sent electronically from the agency, we cannot be certain that the agency will scan all the records. Adult adoptees have experienced that agencies are selective and sometimes only show them parts of their records, especially when the mother was unwed at the time of adoption, or in cases where the relinquishment may have been coerced or dubious.

55. As of this writing, there is only one person at KCARE working for family search. This one employee is the sole contact for both searching adoptees and birthparent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ast year, there were 3,366 visits to adoption agencies by adoptees, presumably for birthfamily search. It is impossible for KCARE to do its job of searching for birthfamilies because it is understaffed. In addition, conducting searches to find intercountry adoptees in Western countries on behalf of Korean birthfamilies requires competence in Western languages, cultures, and systems that the culturally Korean organization KCARE simply lacks.

56. The CRC Committee's 2011 concluding observations expressed concern over "the paucity of post-adoption services available, particularly for children who had been adopted inter-country and including with regard to addressing the linguistic difficulties faced by such persons seeking information on their biological origin."

Recommendations

The Government should:

57. Translate all documents pertaining to intercountry adoptees into the languages of the countries where they were sent for adoption, with English and French as a minimum.

58. Include unwed mothers, adoptees, and birthparents on KCARE's working staff. These parties would bring valuable knowledge and insight to the operation of KCARE that board members cannot, since board members are often "in name only" in Korea, and have no practical function.

59. Adoption records should be physically kept by the neutral third party of KCARE and made accessible to adoptees.

Improper Financial Gain

60. Article 21(d) of the CRC guards against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ose involved in inter-country adoption. The ROK holds no reservation against this article.

61. NGOs may request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during the annual Parliament audit. Our groups requested information in 2008 and found various abuses ranging from the miscategorization of donations to the misuse of Government funds allocated for the living costs (food, medical care, clothing, etc.) of children being fostered before adoption. To our knowledge, there was no punishment for the agencies over these abuses.

Recommendations

The Government should:

62. Annually audit the financial records of adoption agencies to enforce Article 21(d) of the CRC.

C. Non-conformance with Other Treaties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63. The ROK has not announced a firm target date for ratifying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64. The ROK stated in 2011 that before it ratifies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it needs to "sufficiently review and seek opinions on how to manage authorization-based adoption and how to deal with expected problems. To this end, the Government plans to set up and operate an interagency task force in the second half of 2011."³⁹

65. It should be noted that while private adoption agencies are routinely consulted when the Government makes new adoption policy, our NGO groups representing people affected by these polices have not been consulted in this process at all. Our requests to participate in the task force have gone unanswered.

<u>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 <u>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u>

66. The Government ratified the OPSC on Sept. 24, 2004, but declared that it understands that Article 3(1)(a)(ii) is applicable only to States Parties to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67. The article in question states that "improperly inducing consent, as an intermediary, for the adoption of a child in violation of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on adoption" must be fully covered under the state party's criminal or penal law, whether "offences are committed domestically or transnationally or on an individual or organized basis."

68. The ROK is the only non-signer of the Hague convention to make such a declaration.

69. In addition, the ROK is not actively carrying out its treaty obligations under of Articles 3(5), 10(1), and 10(3) of the OPSC.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70. The ROK has not yet ratified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is was recommended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both CRC and CEDAW in 2011.

³⁹ Written replies by the ROK Government to the List of Issues Rais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1.

Recommendations

The Government should:

71. Set a target date to ratify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and undertake concrete priority measures as recommended by the Council.

72. Modify its interpretation of OPSC Article 3(1)(a)(ii) and criminally punish adoption agency workers, lawyers, doctors, and other people who as intermediaries who improperly induce consent for adoption.

73. Use Capacity-building and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Hague Conference / International Centre for Judicial Studies and Technical Assistance in order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 implementing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The ROK has not yet made any requests for assistance to the Hague.

74. Set a target date to ratify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75. Take all appropriate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ensure that all persons involved in the adoption of a child act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⁴⁰

76. Strengthen cooperation with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bodies to prevent, detect, investigate, prosecute, and punish child-selling⁴¹

77. Address root causes contributing to the vulnerability of children to sale.⁴²

V. Main Violations of Unwed Mothers' Rights

A. Violations of Social Rights

78. In January 2012, a 20-year-old woman who had been severed from her family for becoming pregnant out of wedlock telephoned KUMFA, the only unwed mothers' group run by the unwed mothers themselves in Korea. The woman was afraid for her baby's health because she had not eaten for three days, and she had no shelter. Because KUMFA's shelter has space for only two unwed mothers, and those spaces were already taken, and because KUMFA has no funds for medical care, the only thing that KUMFA could do was to recommend that the woman go to the Holt adoption agency.

79. South Korea ratified CEDAW in 1984. The convention binds countries to tak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modify or abolish existing laws, regulations, <u>customs</u>

⁴⁰ OPSC Article 3(5)

⁴¹ OPSC Article 10(1)

⁴² OPSC Article 10(3)

and practices which constitut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ves the sam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 parents, irrespective of their marital status. Article 12 says that states "shall ensure to women appropriate services in connection with pregnancy, confinement and the post-natal period, granting free services where necessary, as well as adequate nutrition during pregnancy and lactation."

80.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s that the "widest possible protection and assistance should be accorded to the family, which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Our groups believe that a single parent and a child may be considered a family unit. The ROK acceded to ICESCR in 1990.

81. If the ROK would uphold its treaty obligations to fulfill its citizens' social and economic rights by adequately providing public services to pregnant women, regardless of marital status, it would not be necessary for them to turn to a private, international adoption agency to secure the basics of life. The existing few shelters for unwed mothers, in particular those that provide services to help mothers raise their children, cannot meet the need. In addition, there has been no Government campaign to decrease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and therefore these women continue to suffer from discrimination, even from within their own families.

82. In the 2011 Gender Gap Index by the World Economic Forum, South Korea ranked 117 out of 135 countries in the category of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107 in terms of gender equality overall. In the category of high-income countries, only three countries ranked lower than Korea.

B.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Being Raised by Unwed Mothers

83. Children face discrimination when their mothers are unmarried. For instance, at a Kindergarten, a member of KUMFA overheard a married mother saying that if she discovered that her child's classmate was an unwed mother's child, she would remove her own child from that school. She referred to the unwed mother's child as a "thing," not a person. Such prevalent attitudes are a violation of Article 2(2) of the CRC, which says that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are protected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the status or activities of their parents.

84. Still relevant are the 2003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RC, which noted that "most recommendations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following its consideration of the State party's initial report have been insufficiently addressed, particularly those regarding ... the development of public education campaigns to combat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girls, disabled children and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It also noted "the limited amount of information regarding acts of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from single parent families,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children with disabilities. It is also concerned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factors including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as stated in the Convention."

C. Violations of Unwed Mothers' Economic Rights

85. The workplace is also a site of social and economic rights violations. After being interviewed in local media, one KUMFA leader was dismissed from her job. Other unwed mothers are cut from their jobs when their pregnancies start to show, or their employers refuse to renew yearly contracts with them. Mothers often fall into poverty if they choose to rear their children.

86. This discrimination is a violation of Article 11 of CEDAW, which states that women may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grounds of marriage,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and that States Parties shall prohibit dismissal on the grounds of pregnancy or of maternity leave and discrimination in dismissals on the basis of marital status.

87.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people may not receive Government support unless they have either no family or the whole family is in poverty. Child-rearing unwed moms often receive no support from either their family or the Government. Moreover, they do not systematically receive child support payments from their children's fathers because laws requiring fathers to pay child support are not enforced by the State. Mothers a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money themselves, which may cause more conflict with the child's father. Therefore, most unwed mothers do not even try to collect child support.

88. Article 18 of the CRC states that parents have joint responsibility for children, and the 2003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RC still hold true.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high number of divorced and single parents, primarily mothers, who do not receive the child maintenance payments to which they are legally entitled."

89.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RC in 2011 said,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that continue to persist in the State party,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single mothers, particularly those who are adolescent, including with regard to their preclusion from State support measures."

90. The Government's priorities for support are the reverse of what they should be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guidelines. The Government's rate of support per month, per child, is as follows:

Family group home facility: 1,070,000 won Child welfare facility (orphanage): 1,050,000 won Foster care: 250,000 won Domestic adoptive parents: 100,000 won Single parents, including unwed and divorced parents: 50,000 won (US\$44).

VI. Institutionalization

91. Lack of support for mothers can lea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ir children. According to Mission to Promote Adoption in Korea, there are about 20,000 children living in 280 institutions in Korea, 80% of whose parents are divorc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adoptions of these children, Parliament passed a law in December 2011 that allows the automatic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of parents who have not parented their children for three years. The law will go into effect on July 1, 2013.

92. The state must try harder to reunite separated families, preserve families, and remove financial incentives for institutionalization. Orphanages may receive a Government subsidy, per child, as long as the child lives there. Orphanage directors should be compelled to make efforts to reunite children with parents and extended family members.

93. CRC Article 25 recognizes the "right of a child who has been plac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care, protection or treatment of his or her physical or mental health, to a periodic review of the treatment provided to the child and all other circumstances relevant to his or her placement."

94.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in 2011, the CRC Committee noted "with concern that the assessment of such alternative care institutions only evaluates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such institutions, and does not assess the quality of care, skills and training of the professionals and treatment provided" and also expressed concern at "the absence of a tracking system for children who have lost contact with their parents."

Recommendations

The Government should:

95. Enforce Article 2(2) of CRC by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children. One way to do this is to include education on the violation of social rights within current campaigns against school violence.

96. Uphold CRC Article 2, regarding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and their parents; Article 8, regarding the preservation of identity with regard to both illegally conducted secret adoptions and legally conducted adoptions, in which the original identity of the child and the identifying information of his parents is erased; Article 9, regarding non-separation from parents, except when necessary; Article 20, entitling children to protection and assistance "provided by the State" when deprived of their family environment; and Article 35 on the abduction, sale and trafficking of children.

97. Act on the CRC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of 2003, which expressed regret that "most recommendations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following its consideration of the State party's initial report have been insufficiently addressed, particularly those regarding: (a) The withdrawal of reservations; (b) The development of public education campaigns to combat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girls, disabled children and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98. Provide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unwed mothers and promote information campaigns to combat societal prejudice against them.⁴³

99. Campaign to reduce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Budget the campaign to be at least commensurate with the Government budget for "Adoption Week."

100. Provide adequate support to single mothers, including those who are adolescent.⁴⁴

101. Perform a "periodic review of placement of children in all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hat takes into account the views and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wherever possible, aims to reintegrate children into a family environment."⁴⁵

102. Enforce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based on a court order or agreements between parties in a manner that does not stigmatize the child or his or her custodial parent ... For instance, the State party might consider establishing a national fund to ensure payment of overdue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to the custodial parent while enforcement measures are enacted, or introducing a system in which child support payments are automatically deducted from salaries of those employees with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⁴⁶

103. Strengthen the Ministry of Labor's supervision to prohibit discrimination against unmarried mothers in the workplace. 47

104. Amend the Single-Parent Family Welfare Act and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o provide a minimum cost of living subsidy to all unmarried mothers.⁴⁸

105. Provide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settings with adequate support for establishing and/or maintaining contact with their parents.⁴⁹

⁴³ ICESCR Recommendations, 2009

⁴⁴ CRC Concluding Observations, 2011

⁴⁵ CRC Concluding Observations, 2003

⁴⁶ CRC Concluding Observations, 2003

⁴⁷ CEDAW Shadow Report, 2011

⁴⁸ CEDAW Shadow Report, 2011

⁴⁹ CRC Concluding Observations, 2011

언론보도 Media

• PRI's The World May 11, 2012

Single Mothers in South Korea

By Jason Strother

On Sunday, families across the United States celebrate Mother's Day. But there was a special mother's day celebration on Friday in South Korea, dedicated to women who raise children on their own.

Being a single mom can be hard anywhere, but it's especially challenging in Korea.

Kim Jee-young, a single mother in Seoul, said that earlier this year she and her son lived in a shelter after losing their apartment. She said they had nowhere else



to go.

Jane Jeong Trenka is a Korean adoptee who advocates for single mothers.(Photo: Jason Strother)

"It's very difficult in Korea for an unwed mother to live with her parents," Kim said. "There is a tremendous prejudice toward single mothers and it's an embarrassment to the family. My parents would feel ashamed to have us living them."

Kim is not her real name. She asked me not to reveal her identity.

Unwed motherhood is often kept a secret in South Korea, much like in the US more than 50 years ago. But on Friday, the stories of women like Kim were told at the second annual Single Mother's Day ceremony in Seoul.

It's not just family abandonment. These women sometimes get fired from their jobs, and they're treated like social outcasts, according to Choi Hyung-sook, who heads an advocacy group for unmarried mothers. She's one herself. Choi said most pregnant single women here have only two choices.

"When I was eight months pregnant, my brother told me that I should have an abortion," Choi said. "If not that, then I should put the baby up for adoption."

Choi said after she gave birth, she did bring her infant son to an orphanage, but quickly changed her mind. International adoption has long been the last resort for pregnant single women in Korea, who were told they were unfit to be mothers.

It started in the 1950s, after the Korean War. Since then, at least 150,000 Korean babies have been sent overseas — most to the United States. Some of those adoptees have come back to Korea as adults, like Jane Jeong Trenka. She was born in 1972 and adopted with her sister by a family in Minnesota.

Now she advocates on behalf of unwed Korean mothers. Trenka is president of TRACK,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a group that opposes international adoption.

She said South Korean policies continue to make it financially difficult for single women to raise children on their own.

"Because Korea is so prejudiced against women having children out of wedlock, they prioritize their money in a way that favors orphanages over being cared for by your own mom," Trenka said.

Shannon Heit, who is 30, said the way unwed mothers are still treated in Korea made her and other adoptees want to support them and get involved in Single Mother's Day.

"We imagine our own mothers, if they had such support from people like us, or from you know politicians or the government, maybe it could have been different" for them, she said.

Heit added that she's glad to see that these days, more single mothers, like Kim Jeeyoung, are willing to keep their children.

As for Kim, she said for now, things look pretty good. She has a part time job and she's also studying to become a realtor.

But she begins to tear-up, when she talks about her son's future. She said she's worried about when he gets older, when teachers and other parents find out that his mother isn't married.

Then he too will feel ashamed.

Link > http://www.theworld.org/2012/05/single-mothers-south-korea/

• The Korea Times _ May 1, 2012

Adoptee rallies support for single mothers

By Kim Young-jin



Jane Jeong Trenka, president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 Courtesy of Raphael Bourgeois

They say an activist's work is never done. For Jane Jeong Trenka, an advocate for Koreans adopted abroad, the adage couldn't ring truer.

Trenka, head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TRACK) and a Korean adoptee herself, is now focusing her attention on single mothers, who she says face societal hurdles here that push them to resort to adoption.

On May 11, TRACK will co-host the second Single Moms' Day after creating the event last year to "challenge" Adoption Day on the same date.

In an interview, Trenka underscored the link between the welfare of single mothers and adoption.

"The organizations that are co-hosting Single Moms' Day are convinced that if there were an adequate social welfare system, most unwed moms would choose to raise their kids," she said.

"Since these moms have historically been shunned and denied the most basic support, it is extremely rare to meet adults in Korea who have been raised by unwed mothers." More than 200,000 Koreans have been adopted abroad since the end of the 1950-53 Korean War. While the country has been held up as a model country for adoption, some scholars say the process was abused in the past to expedite adoptions amid the country'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 to organization, the government gives single parents some 50,000 won per month in financial support while providing double that amount to adoptive parents and providing orphanages with heavy support.

The vast majority of adoptees here are relinquished by unwed mothers — often frowned upon by traditional society — who mostly cite economic hardship as the reason they turned to adoption.

The groups will host awareness-raising activities through the day at the National Assembly with participants including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mmittee.

"The first Single Moms' Day brought a general, positive message about single moms to society. This year, we are specifically looking at how Korea can improve its policies on single moms, children, and adoptees by meeting its existing U.N. human rights treaty obligations," Trenka said.

The campaign comes after TRACK and others last year spearheaded the passage of a reform bill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bill aims to improve conditions by giving adoptees better access to information held by adoption agencies and shift government focus to services to help Korean parents keep their children.

If all that wasn't enough, Trenka this week will release the Korean-language edition of "Outsiders Within," a book she co-edited along with Julia Chinyere Oparah and Shin Sun-yung that explores the challenges faced by transnational adoptees.

That the book is published in Korean implies a shift in the dialogue from adoptees to their families here in Korea, Trenka said.

"I hope that this book gives our birth families a more realistic understanding of adoptee experiences, which can improve our 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m," she said.

While Trenka acknowledged that the timing of Single Mom's Day, to coincide with Adoption Day, could rub some the wrong way, she stressed that a deeper look shows why the event is important.

"Korea is not trying hard enough to prevent family separation in the first place, and growing up in one's own family is really the best situation for the child in most cases."

A book release party for "Outsiders Within" will be held May 3rd, organized by KoRoot, a resource and housing center for adoptees.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koroot.org.

The second Single Moms' Day Conference will be held at the National Assembly on May 11 from 10 a.m. Visit www.justicespeaking.wordpress.com.

Link > <u>http://www.koreatimes.co.kr/www/news/special/2012/05/177_110062.html</u>

• The Wall Street Journal _ May 7, 2012

A Day For Forgotten Moms of Korean Adoptees

May is a month of quasi-holidays in South Korea. Saturday was Children's Day and Tuesday is Parents Day. Teachers' Day is coming up and so is Couples' Day.

Amid this month of days that promote Korean ideals of family life, the government in 2006 designated May 11 as Adoption Day. The idea was to raise awareness of - and promote adoption by — Korean families.

A less-talked-about element behind Adoption Day is the hope by government officials to reduce South Korea's reliance on international couples to adopt children from Korean orphanages.

But even less talked about than that goal is the fact that most children put up for adoption are the product of relationships between men and women who don't marry. And the shame over that is heaped most heavily on the woman carrying the baby.

That's why,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several groups that promote the rights and welfare of single moms (unwed, divorced, widowed, you name it) have banded together to declare that Adoption Day also be recognized as Single Mothers' Day.

They hope to raise awareness that the problems that lead women to give up their babies for adoption could be solved if the government and society in general provided more support to them.

Of the children who are legally adopted domestically, about 92% are born to single mothers. And undocumented adoptions, which are believed to occur at three times the rate as official ones, virtually always occur because the child is born out of wedlock.

The concept of Adoption Day – while laudable in the sense of promoting a potentially better life for children – has been difficult for parents who give up their children and for the adoptees themselves.

Jane Jeong Trenka, a Korean adoptee who grew up in the U.S. and returned to South Korea in 2004 and has worked here ever since, said the awkwardness came up at a dinner she attended a few years ago with other adoptees and advocates of single mothers.

"The connection is the 92% of adoptees, the fact that most of us come from single moms," she said. "So instead of celebrating the separation of our families, we should promote the preservation of our families."

Ms. Trenka is the president of Truth &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or TRACK, a group that advocates policy changes to support adoptees and the families that give up children for adoption. Among the groups that, with TRACK, are promoting Single Mothers' Day is the Korean Unwed Mothers Support Network, whose founder Richard Boas discussed his goals with the Journal last year.

At the core of the adoption debate is that South Korean policymakers are focused on the

symptoms of the issue (for instance, a still-high rate international adoptions) rather than its causes (the welfare of the families putting children up for adoption).



Jane Jeong Trenka, president of Truth &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in Seou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rees that the best thing is for a child to be raised by his or her own family, then the second thing is domestic adoption and the third thing is international adoption," Ms. Trenka says. "Korea is playing around with number 2 and number 3, while we're asking that they look at number 1."

"If we know that, of the documented adoptions, that 92% involve single parents, then there's a pattern here," she added. "Since we agree that the best thing to do is be raised by mom, why don't we do that?"

TRACK is being joined by several other organizations in sponsoring a day-long seminar at the National Assembly on Friday to discuss issues faced by single mothers.

The Single Mothers' Day program comes just a week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Korean-language edition of a book called "Outsiders Within," a collection of essays about transnational adoptees that Ms. Trenka co-edited.

She said a long-term goal of the groups involved in the Single Mothers' Day is to change a cultural bias that says a family is only a mother and father together.

"If you think that adoption is the right answer [for children from single mothers], then you assume something about the mothers," Ms. Trenka said. "You're assuming that she is incapable of caring for her own child, that she is not deserving of support and that she is somehow not quite fully human."

Link > http://blogs.wsj.com/korearealtime/2012/05/07/a-day-for-forgotten-moms-of-korean-adoptees/tab/print/

>> 천지일보 _ 2012 년 5 월 11 일자

'고아수출국' 오명 벗기 위한 정치·사회적 노력 이어져

입양특례법 국회 통과…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 미혼모 삶 담은 영화 '미스마마' 10월 개봉 "사회적 인식개선 기대"

[천지일보=박양지 기자] 우리나라 해외입양률이 세계 해외입양의 30%를 차지하는 등 '고아수출국' 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양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사회 각처에서 이어지고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양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6 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중 일부에 따르면 친생부모는 '입양숙려제' 도입에 따라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최소 7 일이 지난 뒤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다. 숙려기간 동안 친생부모는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 내용과 입양동의 요건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

이 외에도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식개선을 꾸준히 실시해 2016 년 1 월 1 일부터는 해외입양을 전면 금지하는 등 '입양 촉진'이 아닌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입양특례법 개정에는 해외입양인 보호단체 '뿌리의 집'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노력이 큰 힘을 발휘했다. 뿌리의 집에서는 매년 5 월 11 일 입양의 날에 맞춰 '가족의 재정의,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권리 보호로'라는 주제로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입양을 보낸 부모, 해외 입양인, 세계 각국의 미혼모 등 입양과 관련된 당사자가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가와 함께 개선 방안을 찾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뿌리의 집은 또한 해마다 해외 입양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술포럼, 정책 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입양 관련 저작물도 번역 출판하고 있다. 뿌리의 집은 이를 통해 입양에 관한 담론을 다양화·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서도 2009 년 6 월부터 인식개선캠프를 시작한 이후 각종 캠프와 포럼. 세미나 등을 열어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난해 14 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반편견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10 월 말 인식개선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전주국제영화제에 출품됐던 미혼모의 삶을 담은 영화 '미스마마'가 개봉될 예정이어서 이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875

>> CBS 노컷뉴스 _ 2012 년 5 월 11 일자

"'입양의 날'이 아닌 '싱글맘 데이'로 해주세요"

"좋은 가정이라는 잣대는 외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다"

[CBS 조태임 기자]

"풍족하지는 않아도 불행하지는 않아요. 이 아이로 인해 살아가는 이유가 더 생겨요"

20개월 딸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싱글맘 감은남(36) 씨는 잠든 아이를 한참 쳐다봤다.

2년 전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자 남자는 이별을 통보하고 떠났다.

감 씨의 머리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낙태였다. 큰 마음 먹고 간 병원에서 초음파를 통해 아이의 눈과 코가 생긴 얼굴을 보자 '굶어 죽고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낳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아이를 낳았지만 주변으로부터 아무런 축하도,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게 되자 13 년 동안 다닌 직장도 그만둔 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다.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창극으로 풀어낸 연극 '리틀맘 수정이'(자료사진)

지금은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아 일을 쉬고 있는 상태다.

감 씨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거의 아르바이트 하며 일을 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버티기가 어려웠다. 감 씨는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죄인 취급을 당하고 우리 아이까지 불행한 아이인 것처럼 쳐다본다"며 말끝을 흐렸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감 씨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입양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

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옹알이를 하며 환하게 쳐다보고 특히 아이가 '엄마'라고 외치며 달려들면 입양을 고려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감 씨는 "내가 우리 딸이 없었으면 이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거라는 보장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예쁜 딸을 입양을 보냈으면 평생토록 마음에 남아서 더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감 씨는 '싱글맘 데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성글맘 데이는 국내 입양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된 입양의 날 대신 입양보다는 아이들이 친부모 아래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미혼모 단체와 입양 기관들이 지정한 날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입양인 총 1548 명 중 1452 명(전체의 93.8%), 해외입양의 경우 총 916명 중 810명(88.4%)이 미혼모의 아이들이다.

'싱글맘 데이'를 주최하고 있는 뿌리의 집 김도현 원장은 "우리사회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 때문에 미혼모들에 입양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입양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해외입양 수가 많다는 이유로 국내 입양이 답인 것처럼 제시하는 정부 정책과 사회의 시선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친생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정책을 먼저 고민한다면 해외 입양 수는 자연스럽게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8 살난 아들을 둔 싱글맘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최형숙 대외정책팀장은 "좋은 가정이라는 잣대는 외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엄마 밑에서 크는 게 좋은 가정이다"며 "'싱글맘 데이' 자체가 필요없는 그러한 세상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말했다.

출처 > <u>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40040</u>

>> 머니투데이 _ 2012 년 5 월 12 일자

'내 자식'향한 한 마음 두 생각...미혼모·양부모

[출동!사건팀]'입양의 날'·'싱글맘의 날' 찾아가보니...묘한 '다른 느낌' 감돌아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가흔이 엄마 감은남씨(36)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 홀로 아이를 키우다보니 아이가 아플 때면 남편이 있는 엄마들보다 더 발을 동동 구른다.

감씨는 힘들지만 편견에 맞서 아이를 키우는 주변의 미혼모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울산지부 대표를 맡았다. 지난 11 일에는 '제 2 회 싱글맘의 날' 행사에도 참여했다.

같은 날 서울시내 한편에서는 감씨와는 다른 사연을 가진 엄마들이 모였다. '입양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란 제목으로 열린 입양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입양가족들이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두 행사장 모두 "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가득했지만 둘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 마음으로 낳은 '내 자식'・・・국내 입양 여건 아직까진

둘째 아들을 공개 입양한 김민숙씨(43)는 처음 아들을 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김씨는 "너무 뽀얗고 예뻐서 여자애인 줄 알았다"며 "개구쟁이 아들을 보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했다.

입양가족들은 입양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혈연관계가 없어도 '내 자식'이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김씨는 "주변에서 입양을 바라보는 시선이 최근 많이 나아졌다"면서도 "이제 다섯 살 된 아이가 앞으로 학교를 가면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남의 자식'이란 사회적 편견 탓일까. 국내입양 건수는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지난 2001 년 1770 명에서 10년 후인 2011년 1548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여아 입양 쏠림 현상이나 장애아 입양의 어려움, 줄지 않는 해외입양 등을 들어 국내 입양 여건 개선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지난해 발의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의 법적 근거 명시하는 등 입양 여건 개선을 위한 시도였다.

◇ '내 자식' 남 주는 고통 겪지 않게 사회가 도와줘야

한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은 입양촉진법에 대해 불만이 많다. 아동이 원가족, 즉 친부모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란 설명이다.

입양촉진법 개정에 참여한 최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부분 미혼모들은 자식을 키우고

싶어 한다"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탓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입양의 날인 5월 11일을 지난해부터 '미혼모의 날'로 명명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 입양아동 중 미혼모(부) 아동인 경우가 93.7%(2011 년 기준)에 달해 입양 촉진과 양육 미혼모 문제는 깊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김도형 뿌리의 집 원장은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양 활성화보다 우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감씨도 "열악한 경제적 여건과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입양을 생각한 적도 있다"며 "한국 사회의 편견 속에서 혼자 아이를 낳고 또 기른다는 게 여전히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양육미혼모 가족의 생활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미혼모들은 임신사실을 알린 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 '내 자식'에 대한 마음은 하나 · · · 사회가 나서야할 보육문제

입양사업과 미혼모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두 행사 모두 정부와 사회가 경청해야할 목소리"라고 말한다.

특히 미혼모 아동 입양과 관련 "미혼모의 입장과 생각이 기준이 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미혼모 이슬하씨(가명)도 "입양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입양이 필요한 아동도 있기 때문에 입양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일련의 활동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지난 2011 년 한해 요보호아동수는 8436 명이지만 국내입양아동수는 1548 명에 그친다.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동방사회복지회 관계자는 "또한 유기아동, 결손가정아동 등 다양한 이유로 친부모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혼모 지원과 입양 활성화는 함께 긍정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51201140961297&outlink=1

>> 서울신문 _ 2012 년 5 월 11 일자

[5·11 입양의 날] 두리모 '고통'을 말하다 민들레어머니회 노금주 "입양 보낸 날부터 정상생활 못해...

가슴 아픈 이별 없게 지원 절실"

민들레어머니회는 1970~80 년대에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낸 어머니들의 모임이다. 10 여명의 어머니들이 모여 2006 년 발족했다. 이 모임의 노금주(53) 회장은 지난해 5 월 '싱글맘의 날' 제정 운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았다.



▲ 민들레어머니회 노금주 회장 노 회장은 18 세 때 덜컥 임신을 했다. 도박 중독자였던 남편 때문에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가족들은 아들을 병원으로 보냈고, 병원은 다시 아들을 입양 기관으로 보냈다. 아들을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한 노 회장은 '한국 땅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포기해야 했다. 그러다 2004 년에야 한 민간단체를 통해 아들의 소식을 접했다. 미국으로 입양돼 결혼까지 했던 것. 2005 년에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아들과 만났다. 이들 모자의 사연은 '나를 닮은 얼굴'(2010)이라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다른 어머니들도 사연은 비슷하다. 자신도 몰래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이를 입양 보내기도 하고,

먹고살기 위해 떠돌아다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도 있다. 비록 자신의 손으로 떠나보냈더라도 두리모(미혼모)를 껴안지 못하는 사회와 가난 탓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노 회장은 "아이를 입양 보낸 어머니들은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가 언제든 자신을 찾아오면 옷 한 벌이라도 사 주려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리지만, 상처받은 몸과 마음에 남은 건 지독한 가난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차라리 아이와 함께 살았다면 이렇게 불행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아이를 강제로 입양 보낸 가족들도 아이를 보낸 것을 미치도록 후회하고 미안해한다."고 덧붙였다.

어머니회 회원들은 주로 해외 입양아들의 한국 방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아이가 찾아왔을 때 조금이라도 좋은 대접을 해 주기 위해서다. 또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외로움도 함께 달랜다.

노 회장이 바라는 것은 해외 입양아들과 입양을 보낸 어머니들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일이다. 그는 "뿌리를 찾아 한국에 온 입양아들을 보면 다 내 아이 같은 게 어머니들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두리모들이 더 이상 가슴 아픈 이별을 하지 않는 것도 노 회장의 바람이다. 그는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도록 두리모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출처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1009013

>> 프레시안 _ 2012 년 5 월 11 일자

[해외입양인, 말걸기]<24>제 2 회 '싱글맘의 날'에 부치는 글

"당신은 지금도 'G 코드 인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김도현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 집> 원장, 목사

G-0001, G-0002, G-0003 이름 없는 인간에게 붙여진 G 코드이다.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이 G 코드 번호로 진료를 받는다. 이 사람에 대한 의료기록은 이 G 코드 번호가 붙어 있는 종이에 기록된다. 나는 병원이 이 사람의 진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한다. 이쯤 말하면 독자들은 필자가 말하는 일이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렇다. 이 땅에는 자신이 태어나서 G 코드를 부여받고 6 개월 혹은 1 년을 사는 영아들이 있다. '그들 역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실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리라.

헌법적 시민권을 지니고 이 땅에 출생하는 아동에게 G 코드에 따른 번호를 매겨주는 곳은 중앙입양정보원이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동의 시민권의 수준을 조절해서 시민권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을 뭐라고 해야 할까? 옷에 짙게 묻어 있는 색을 탈색시켜 주듯 G 코드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출생에 따른 권리를 잠시 유보시킨다는 점에서 시민권세탁소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중앙입양정보원은 적어도 오는 8 월 5 일까지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세워진 보건복지부가 만든 재단법인이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이들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행정 권력이 없으니, 비록 정부가 세운 기관이라고 하나 거의 민간기관에 가깝다. 정부의 행정 권력이 하면 좀 곤란한 시민권 유보 절차를 이 민간기관이 떠맡고 있는 셈이다. 또, 오는 8 월 5 일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관은 여전히 국가 공권력을 지닌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해 이 법의 개정을 주도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과 <뿌리의 집>은 중앙입양원이 행정 권력을 가진 정부 기구가 되어야 함을 몇 차례 주장했지만 관철할 수가 없었다. 이 땅 아동의 시민권을 다루는 기구를 행정 권력이 없는 기구로 남겨 두는 일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것이 우리나라가 가입하고자 하는 '국제간의 아동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이 요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1993 년 조인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직후 곧 바로 등록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조인한 국제법들이 국내법과 동일한 혹은 보다 상위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이 G 코드부여방식을 통해 범법행위가 국가권력의 묵인 하에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영아들. ⓒ연합

이렇게 해서 중앙입양정보원으로부터 G 코드를 부여 받은 영아들은 국가인구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사실상 생물학적으로는 출생했어도 우리나라의 시민으로서 사회적/법적 출생은 하지 않은 존재이기에 혹시라도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면 사망에 관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사람의 출생과 사망을 기재하는 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일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도 공식적인 이름도 없이 2 개월 혹은 6 개월 혹은 1 년을 살다가 입양이 되면, 비로소 입양가정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는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아이를 낳은 친엄마에 기록되지 않는다. 관해서는 아이의 친엄마가 따로 있음을 밝혀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합법이고 그것을 일컬어 친양자 등록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양 가정은 이 이 아이를 친생자로 등록한다. 자기 낳은 아이가 아니지만, 내가 낳은 아이라고 출생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등록이 된다. 이는 한 인간의 출생에 관한 진실, 자신의 존재에 관한 진실을 은폐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멸이자 자신의 존재에 관한 진실을 알권리를 유린하는 인권침해이다. 출생의 비밀은 이렇게 해서 생산되고, 세월이 흐른 후, 우리는 저녁이면 안방에 앉아 극중 인물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전능자의 시점을 지닌 시청자가 된다. 다른 사람의 출생의 비밀에 얽힌 아픔과 곤경과 아슬아슬한 비밀 폭로 과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관음증을 만족시킨다.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입양을 통해서 제공되는 복리에 비하면, 이런 인권침해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 복리의 획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인권침해가 갑자기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돌변하지도 않고, 비밀친생자입양의 불법이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입양하는 사랑은 이런 인권침해나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한 것일까? 관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법을 계속해서 지지해야 하는 것일까? 이 땅에서 이름도 없고 친생가족에 대한 정보도 가질 힘이 없는 아이들, 그래서 G 라는 글자 아래 따라붙은 일련번호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드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잠드는 순간 나도 이 아이들과 불과 3~4Km 떨어진 어느 곳에서 잠자리에 들어간다. 지척의 같은 땅에 등을 대고 바람결에 오가는 같은 공기를 마시며 우리는 숨소리도 고르게 잠을 잔다. 나는 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형제들과 항렬을 나눈 아름다운 이름, 가족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내 이름은 내게 시민권을 부여한다. 나는 자기의 인권적 존엄을 지킬 권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다. 그 아이들은 이름대신 G 코드만 있을 뿐이다. G 코드만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야만의 시대를 사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귀환입양인단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 대표인 내 친구 제인 정 트렌카와 로스 오크는 지난 해 가을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 스위스 제네바에 다녀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아동인권을 심사하는 회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은 유엔아동권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한국에서 출생하는 아동들 중에 비밀친생자입양으로 자신의 존재의 진실을 은폐당하는 아동이 있음을 알리고, 한국 정부가 조속히 아동출생신고제를 아동출생등록제로 바꾸도록 권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아동의 출생등록을 산부인과병원과 조산원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바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출생 등록을 부모의 자의에 맡겨 둘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와 유럽의 국가들 대부분은 아동이 병의원에서 출생한 후 72 시간 안에 병의원에서 국가출생등록부서에 등록한다. 부모는 다만 그 관공서로 가서 이미 출생등록이 된 문서를 받아볼 수 있을 뿐이다. 지난 2011년 국내입양 아동은 1548명, 해외입양아동은 916 명, 이들 중에 몇이 G 코드인간이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한다. 몇 해 전의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의 한 연구에 의하면 국내입양아동의 97%가 비밀친생자입양이라고 했으니, 국내입양아동이거나 해외입양아동이거나 입양되기 이전까지 공식적인 이름이 없이, G 코드만을 지녔던 아동이 2 천명을 상회했으리라는 짐작은 결코 지나치지는 않으리라.

우리 정부가 '입양활성화'를 위기에 처한 아동복지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로 가지고 있는 한, 그리고 오늘 5 월 11 일을 '입양의 날'로 기리는 한, 그래서 입양활성화를 위해서는 비밀친생자입양의 관행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힘을 얻는 한, 동시대를 사는 이 땅의 동료 인간에게 6 개월이고 1 년이고 G 코드만을 부여하는 우리의 만행-공정정서부실기재죄-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운영하는 <뿌리의집>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모임>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한국한부모연합>은 우리 사회가 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의 날'을 지키기 보다는, 친생가족 보호의 정신을 함양하고, 특히 이 땅의 미혼모들의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입양의 날' 5 월 11 일을 '싱글맘의 날'로 선포하고 지키고 있다. 이 땅의 아동양육체계가 과도하게 발달한 고아원과 입양기관에서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친생가족양육권 강화를 통해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좋은 친구들인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의 회원인 미혼모들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 또 다른 내 좋은 친구들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모임>의 해외입양인들은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친생부모의 품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고 대답한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 정부가 '입양활성화정책'을 폐기하고 '친생가족보호정책'을 힘차게 펼치는 날이 오면, 비록 몇 Km 의 거리를 두고 G 코드인간, 이름 없는 기호인간과 누운 땅과 흐르는 공기를 공유해야 하는 이 야만의 시대를 마감할 수 있으리라.

###오늘 5 월 11 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 2 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511100938

>> 오마이뉴스 _ 2012 년 5 월 10 일자

"엄마 아빠가 있어 정말 행복" ... 꼭 이래야 합니까

[인터뷰] 최형숙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기회홍보팀장

5 월 11 일은 정부에서 정한 '입양의 날'이다.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해외입양인모임 등은 지난해부터 이날을 '싱글맘의 날'이라 부르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정부는 시설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줄이고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해 가정 환경에서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독려하자는 좋은 뜻으로 '입양의 날'을 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입양인모임이나 미혼모가족협회 등은 '입양의 날'을 기념하는 것에 반대한다. 아이가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은, 전쟁같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친엄마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 1 만 불 이상 나라 중 해외입양 송출국은 지구상에 우리나라뿐이다. 더욱이 한국전쟁 후 절대 빈곤기에 전쟁고아를 해외에 보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 소득 2 만 불 시대인 지금도 우리나라는 해외입양 송출국 세계 4위다.

1980 년대 미국으로 해외입양 보내진 마이클 문씨는 해외입양인으로서 한국정부와 사회를 향해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한국인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최단기간 경제성장 등 여러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한국사회를 보면 대단한 IT 강국에 엄청난 선진국이다. 그러나 한국사회 껍질을 한 꺼풀 들치고 그 속을 차분히 들여다 보면 한국사회는 심각하게 망가진 사회다. 한국에서는 기본적 인권이라 할 수 있는 모성권, 아동인권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보수적인 가부장적 사회인데 남성들은 가족에 대한 권위의식은 팽배한 반면 책임의식은 결여되어 있다. 함께 낳은 아이인데 미혼모들 혼자서만 아이를 어렵게 키우고 남자들은 모른 체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 경제 3 위, 세계 경제 10 위권인 나라가 어떻게 해외입양송출국 4 위일 수 있나? 이것은 한국인들의 가치관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90%에 가까운 미혼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스스로 양육을 못하고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의 사회복지가, 그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얼마나 열악하고 또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심각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도주의가 심각하게 파손된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자기 민족구성원이 나은 아이를 이 정도 경제 규모의 국가에서 돌보지 않고 그냥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 비인간적인 범죄행위일 뿐 어떤 이유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



▲ **싱글맘의날** 제 2 회 싱글맘의날 국제콘퍼런스 ⓒ 뿌리의집

그의 말을 듣는 동안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마이클과 함께 80 년대 미국으로 입양 보내진 그의 여동생은 몇 해 전 미국에서 임신 6 개월의 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또 함께 입양 보내진 마이클의 쌍둥이 남동생은 미국에서 노숙자이자 마약중독자로 거의 폐인이 되어서 거리에서 살고 있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한 선배로부터 또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이곳 프랑스에서도 대부분 해외입양인들이 상처받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양제도와 기관의 기업화 내지는 특혜권력화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제 프랑스 선거에서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그 전부터 한국 언론에서 사회당이 집권하면 한국 입양인 출신에서 입각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첫째는 플라세 상원의원 (녹색당 대표)인데, 유망한 차세대 정치인이고 사회당과 녹색당은 상호 연대한 상황입니다. 둘째는 사회당내 젊은 여성 활동가인데 정식 장관은 아니어도 정무장관급은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플라세 상원의원이 한국에 다녀왔는데, 처음 정치인으로 알려졌을 때는 한국 언론인을 만나는 것을 피했고 "한국이 나를 버렸다"라는 나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조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사회당 여성 정치인도 "나는 프랑스인이고 한국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가진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한국에서는 해외입양이라는 방식으로 양육권을 외국인들에게 넘겨 버렸는데, 뒤늦게 그 사람이 잘 되었다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보도하고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부어 주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참 개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느 부모가 어린 자녀를 버렸다가 그 자녀가 성장해서 성공하니까 나중에 찾아가서 부모라고 밝히고 덕을 보려는 것이나 똑같은 행태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해외입양의 선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제 2 회 싱글맘의 날을 맞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미혼모이면서도 용기있게 인터뷰에 응해준, 최형숙씨를 지난 8 일 만났다. 그녀의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1 학년생이다. 다음은 최형숙씨와 뿌리의집에서 나눈 일문일답이다.

"'한부모시설 수용아'라는 표현 가슴 아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언제 설립되었고, 무슨 활동을 하며 회원수는 어떻게 되나? 또 회원의 나이는 평균 몇 세인가?



"미혼모들이 2009 년 준비기간을 갖고 2010 년 설립했다. 온라인카페 회원은 천 명이 넘고 회비를 내는 정규회원은 160 명이다. 주요 활동은 미혼모들에 대한 우리 편견을 사회 없애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미혼모 가족이 만나서 그동안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원하는 교육을 받는다. 교육내용은 주로 취업을 위한 재무경제 교육, 미혼모들이 심리적 갈등을 많이 겪기 때문에 자아 발견이나 자아 찾기 교육 등이 있다. 온라인 회원들에게는 주로 상담을 해준다. 나이는 평균 27 세 정도인데 10 대부터

▲ 최형숙씨 ⓒ 김두연

40 대 초반까지 골고루 있다."

- 아드님이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적응은 잘하나? 친구들과 관계는 어떤가?

"걱정이 많다. 어린이집 다닐 때는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일이 있으면 원장님이나 선생님을 쉽게 면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니 엄마의 개입이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것 같다. 그래서 더 긴장된다. 주위 미혼모 선배들은 내가 미혼모인 것이 알려지면 차별이 심해져서 아이에게 피해가 간다며 활동을 중단하라고 조언했다. 그래도 아직은 버티고 있다. 아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날 학교에 가서 홍보물책자를 봤다. '저소득소년소녀 가장, 한부모시설 수용아'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나는 지금 아들과 모자원에 살고 있다. 선생님을 찾아가 "수용하면 수용소나 교도소 같으니 '한부모시설거주아동'으로 표현을 바꿔달라고 부탁 했는데 거절 당했다. 학교 현장에서 좀 교육적인 표현, 차별적이지 않은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든다.

또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학교에서 글짓기 숙제를 줬는데 내용이 '부모님께 편지쓰기', '가족사진 가져오기', '두 분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 아빠엄마와 살아요' 등이더라. 좀 가치중립적 표현을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 학교선생님, 급우들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과 관계는 어떤가?

"지난 3 월 학부모회를 갔는데 어색함이 느껴졌다. 학부모회에서 내 아들이 다니는 방과 후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라 아이들이 산만하다"라는 표현을 생각 없이 쓰는 엄마들이 있었다. 참 어이가 없었다. 또 학교설명회를 하는 날에도 교감 선생님이 "못 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수시로 남발해서 참 불편했다. 교육현장에서라도 차별적 용어를 안 썼으면 한다."

- 지난 몇 년 동안 미혼모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진전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5 년 출산 당시와 비교해선 좋아졌다. 당시엔 정부 지원이 1 원도 없었다.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기저귀, 분유 지원이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미혼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 미혼모들은 기초수급자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런데 현재 미혼모 지원제도는 전부 아니면 전무다. 선택적, 맞춤형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이 필요한 가정, 의료비가 필요한 가정, 교육비가 필요한 가정 등.

더욱이 2011 년 미혼모와 관련한 여성가족부 예산은 124 억 원이었는데 금년 예산은 오히려 86 억 원으로 삭감됐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말은 24 세 미만 청소년 미혼모 위주의 지원 예산이 2011 년에 남아서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정부에서 미혼모 지원예산 기준을 엄마 나이에 맞추지 말고 아동나이에 맞추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유엔아동인권협약도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먼저" 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나이에 미혼모 지원예산을 맞추었다면 금년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내가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고민에 잠도 못 자"

-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 무엇인가, 어려움도 말해 달라.

"생활 자체에 아이에게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많다. 아이가 있기 전에는 모든 일에 내가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아이가 커가는 것과 동시에 나도 커가는 느낌을 받는다. 아이로 인해서 나도 성장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 인간이었나를 아이로 인해서 배운다. 아이 때문에 부모님과 가족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닫는다. 내가 배려해야 하는데 나를 배려하는 아이를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다.

가장 어려운 것은 주위의 차가운 시선이다. 처음에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마음먹은 것도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주위로부터 받을 싸늘한 시선 때문이었다. 그후 마음을 바꿔 부모님 반대에도 아이를 홀로 키웠다. 부모님이 5 년 동안 나를 안 만나셨다. 아이가 생후부터 5 살 때까지 내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지금도 가슴 아프다. 아이가 4 살 때,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 엄마가 우리 아이가 미혼모 아들인 것을 알고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때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고 "내가 우리 아이를 이 세상에서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 고민으로 한숨도 못 잤다.

가장 두려운 것은 조그만 잘못을 해도 내 아이가 "미혼모 자녀니까 그렇지"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많이 긴장하면서 산다."

- 5 월 11 일 "모성권과 아동인권 보호"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제 2 회 싱글맘의날 국제콘퍼런스가 열린다. 미혼모로서 우리나라 모성권과 아동인권의 보호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느끼나?

"우리사회는 미혼모를 엄마로, 여성으로 또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혼모로서 임신하고 사설 입양단체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받을 때도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그래서 미혼모로서 어떻게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를 상담해 주는 대신에 빨리 입양 보내는 방법에 대해, 또 미혼모로 살면 얼마나 삶이 어렵고 아이 인생에게 피해가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알려 주었다.

그들은 친권포기서와 입양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권장했다. 내가 거기에 서명하고 새벽 2 시 47 분에 출산했는데 5 시간 후인 아침 8 시에 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아이를 데려갔다. 그 다음 날 마음을 바꾸고 다시 찾아가서 아기를 돌려달라고 하자 정색을 하며 "행정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손이 발이 되도록 사정한 끝에 2 주 후에 간신히 아기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지금도 그때 2 주간 아이를 못 본 것을 생각하면 아이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 해외입양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점이 있을 텐데.

"남 같지 않고 가족 같다. 나도 전에는 해외입양을 좋게 생각했다. 그런데 뿌리의집에서 해외입양인들을 많이 만나며 그들이 평생 받은 상처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걸 절감했다."

- 미혼모와 관련하여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미혼모와 그 아동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미혼모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입양을 홍보하고 입양을 한 부모에게 상장과 상패를 준다. 효자효부상도 준다. 그런데 아빠나 주위의 도움 없이 아이를 꿋꿋하게 키우는 미혼모들에게는 상장이나 상패 대신 편견과 차별이 돌아온다. 나는 정부에서 미혼모 우수사례도 발굴하여 상을 주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어떻건, 아빠가 있건 없건 아이는 아이일 뿐이고 아이 그 자체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엄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미혼모 자녀를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편부모가정 등 다양한 모습의 가족형태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존중하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곧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이다.

미혼모와 그 자녀는 범죄인이 아니다. 우리 사회를 이루는 당당한 구성원이다. 미혼모와 그 자녀가 자연스럽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위축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덧붙이는 글 | 제 2 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컨퍼런스가 5 월 11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새롭게 쓰는 모성권과 아동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출처 > <u>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9960</u>

>> 천지일보 _ 2012 년 5 월 11 일자

싱글맘가족 위한 국제 컨퍼런스 열려



▲ 11 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 2 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 가운데 대담이 이어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박양지 기자] 11 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입양인 보호단체 '뿌리의 집' 주최로 '제2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의 제인 정 트렌카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모든 입양은 원 가족으로부터 아이를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하며 "미혼모들이 적게나마 힘을 부여받고 자신의 자녀를 키울 수 있다면 입양은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입양은 강요, 압박, 지원 부족 등과 함께 미혼모와 아이들이 분리된 결과"라며 "정부가 입양기관의 민간사업을 장려하여 '입양의 날'을 만들고 입양을 촉진하는 행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와 함께 진행된 대담에서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은 "프랑스의 한 노점 상인이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인이 차별받고 고생하는 것을 보며 '한국에서는 왜 미혼모를 지원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며 미혼모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소개하며 "이 일은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해외입양 반대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김영자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싱글맘의 보호와 지원 제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최한 뿌리의 집 권도현 원장은 "입양인은 내게 자기를 낳아 준 엄마와 같이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미혼모들을 만나면 그들은 내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며 "입양이라는 틀 아래 아이가 자신의 친부모에게서 양육될 권리가 훼손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매년 5 월 11 일이 입양의 날로 제정돼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입양이 우리 사회의 갈 길인지, 아니면 친생가족이 옳은 길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자는 마음으로 오늘을 '싱글맘의 날'로 기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장 저마틴 위원장과 유럽연합 여성권리와 성평등위원회 바바라 마트라 부의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고, 존 사가 유럽 연합 정치분석가가 참석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을 통해 본 유럽의 해외입양 형태에 대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외에도 금줄 세레모니, 케익 커팅, 학술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출처 > <u>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791</u>

>> 프레시안 _ 2012 년 5 월 18 일자

[해외입양인, 말걸기]<25> "입양, 자선이아닌권리에대한문제"

"여성들은결혼과상관없이자식을키울권리가있다"

지난 5 월 11 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중강당)에서는 '제 2 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컨퍼런스' 가열렸다. 이 컨퍼런스는 150여명의 국내외참가자들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사회의 아동 양육 체계를 입양이나 보육원 중심의 해결책이 아닌 친생가족 보호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한다는 점, 특히 국내외입양아동의 90%이상이 미혼모의 아동인 점을 유념해서, 싱글맘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미혼모의 양육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재생산체제의 정상화를 도모할 것 등이 논의됐다. 이 컨퍼런스의 기획자인 귀환 입양인제인정트렌카(Jane Jeong Trenka,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모임 대표)씨가 대회의 환영사를 보내왔다. 60 년 해외 입양의 역사의 그늘 가운데서 전개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아동 양육 혹은 재생산 체제에 대한 성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편집자

제 2 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환영사

제인정트렌카(Jane Jeong Trenka)/ 진실과화해를위한해외입양인모임(TRACK) 대표



'제 2 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 새롭게 쓰는 한국의 모성권과 아동인권: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권리 보호로!'에 여러분 모두를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바람은, 오늘이 회의실을 떠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깨닫고 한국 미혼모들과 그 자녀들의 인권, 경제권, 사회권, 시민권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 자리 매김하는 것입니다.

2005 년 보건복지부에서 국내입양을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해외입양아동의 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보건복지부가 내린 답은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자!"였습니다. 그 결과, 2006 년부터 매년 5 월 11 일마다 정부는 '입양의날'을 기념하느라 당일 하루 에약 1억원의 돈을 썼습니다. 모든 입양은 원가족으로부터 아이들을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011 년에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88.4%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국내입양아동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93.8%가 미혼모의 자녀입니다. 다시말해, 기록이 남아있는 총입양인 2464 명중 202 명만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반복하자면, 전체 입양인 중에서 오직 8%만이 미혼모가정외의 가족형태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미혼모들이 적게나마 힘을 부여받고 자신들의 자녀를 키울 수 있었다면 92%는 입양을 "필요로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만일 보건복지부가 '입양인의날'을 만들어 입양인들을 축복하고 우리 입양인커뮤니티를 사회적으로 더 잘 이해시키고자했다면 아마도 우리해외입양인들은 그들과함께 5 월 11 일을 입양의날로 기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양의 날은 오히려 입양의 실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를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입양은 강요, 압박, 적절한 지원의 부족과함께 그간 보건복지부의 무관심의 결과 해결되지 못한 심각한 차별을 기반으로, 구조적으로 미혼모와아이들이 분리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시민들의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사설입양기관의 민간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여성과아이들의 인권침해와 밀접하게 연결된 관행을 지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차별 철폐에 관한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과 같이 한국이 이미 승인한바있는 협정들과인권에 대한 인식의 틀보다,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에 기반해 국가가 입양정책을 추진하다니, 당혹스러울 만큼 순진한 접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해외입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것은 잘못 된 질문입니다. 그보다는 "아이들을 잘 보살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질문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아이들의 가족을 지원하자."입니다. 만약 가족 분리에 취약한 많은 아동들이 싱글미혼모에게서 태어났다면 싱글맘 가족을 지원합시다.

제가하고 싶지 않은 말은, "미혼모를 돕자." 또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입니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하향식자선(top-down charity)의 수혜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자하는 것은 모든 인 류와시민에 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안에서의 동등한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닌 권리와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미혼모문제'라는 용어는 부적절한 단어입니다. 사회가 미혼모를 대하는 방식이 문제이지, 미혼모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중내내 미혼모들의 친구이자 동료, 투쟁의 지지자로 함께하기로 다짐합시다. 우리 모두가 오늘, 내주, 내달, 내년에도 함께하며 서로의 존재로부터 격려받고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제 한국가족은 다섯아이를 해외로 입양보냈습니다. 해외로 입양보내진 다섯아이들 중 한명으로 태어난 저는 우리를 떠나보낸 정부의 중심부 중의 하나인 이곳 국회에 서게된 것에 대해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한국미혼모들과의 연대속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흩어진 모든 입양인가족들의재회를 꿈꾸며 이 자리에서 제2회싱글맘의 날 기념국제컨퍼런스를 시작하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결혼 여부나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자신이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찾아가는 일에 동참하십시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친생 가족의 품에서 자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출처 > <u>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517175618</u>

>> 여성신문 _ 2012 년 5 월 11 일자

[기고] 싱글맘의 날을 기억하자

5 월 11 일은 제 2 회 성글맘의 날이다. 정부가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촉진하고자 만든 '입양의 날'에 대항하고자 미혼모, 한부모, 해외입양인 등의 당사자 단체들이 모여 지난해 처음 선포한 날이다. 아동복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 없이 단순히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전환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시작됐다. 지난 제 1 회 싱글맘의 날에는 입양 아동의 90%가량이 미혼모의 자녀라는 점에서 미혼모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제거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통해 아동이 가족과 결별하는 것을 막자고 주장했다.

이번 제 2 회 싱글맘의 날은 '아동의 인권과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아동인권을 보호하려면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어머니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그 아동이 속한 취약 계층의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적인 입양 장려의 근거는 '아동복지'다. 그러나 소위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족'을 찾아 떠난 해외입양인들 중엔 양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나 가족 내에서의 차별,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인종차별에 상처입고, 정체성 혼란으로 방황하는 사례도 많다. 그간 입양 과정에서 국제협약에 명시된 아동인권과 복지의 최우선 고려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입양은 부모가 모두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전형적인 중산층 핵가족에 아동을 위치시킴으로써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난 다른 형태의 가족도 차별받지 않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아동 인권을 지키고 그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려면 입양 정책보다 미혼모 가족, 한부모 가족, 조손 가족, 저소득 계층 등 아동 양육에 취약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다.

성글맘의 날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해외입양인은 미혼모를 보며 어머니의 과거를 보고, 미혼모는 해외입양인을 통해 자녀들의 미래를 본다고들 말한다. 많은 해외입양인들은 입양된 후 겪은 여러 경험이 자신의 어머니들을 가족, 공동체, 사회, 국가가 외면한 결과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미혼모들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입양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갖고 미혼모들과 연대하고 있다. 싱글맘의 날은 싱글맘과 해외입양인들이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기념일이기도 하다.

5 월 11 일이 싱글맘의 날임을 기억하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를 지켜낸 용기 있는 싱글맘과 그들의 자녀들을 함께 축복하며, 그들에게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김두연 /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정책기획팀장

출처 > <u>http://www.womennews.co.kr/news/53453</u>

>> 한겨레 _ 2012 년 5 월 10 일자

"입양보다 싱글맘이동 인권...국가 책임 막중"

입양인 · 미혼모 국제콘퍼런스 대담자 마이클 문 · 최형숙씨

지금까지 정부가 집계한 국외 입양 한국인은 16 만 4612 명. 마이클 문(35·사진 왼쪽)도 그 한명이다. 한국 이름 강용문, 미국 이름 트래비스 마이클 더들리. 두 개의 성이 있지만, 한국 이름 '문'자를 따와서 이름만 서로 붙였다. 친부와 양부 모두 성씨를 물려줬지만, 온전한 가족을 주진 못했다. 그가 아버지들의 성씨를 버린 이유다.

최형숙(39 · 미혼모가정협회 기획홍보팀장 · 오른쪽)씨는 홀로 아이를 기르는 미혼모다. 2005 년 8 월 아들을 낳고 국외 입양을 권유받아 바로 입양기관에 보냈다가, 하룻만에 아이를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입양기관의 만류로 14 일 만에 겨우 아이를 데려와 모자원에서 함께 살아왔다. 현재 8 살인 아이는 노래자랑에서 반 대표가 될 정도로 밝게 자랐다.



마이클 문(35·국외 입양 한국인·왼쪽) 최형숙(39·미혼모가정협회 기획홍보팀장·오른쪽)

두 사람은 '제 2 회 싱글맘의 날'(공식 명칭은 '입양의 날')인 11 일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뿌리의 집'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이 여는 국제 콘퍼런스에서 대담자로 나선다. 입양보다 싱글맘·아동의 인권과 복지가 앞서야 한다는 행사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마이클은 6 살 때 쌍둥이 형제·여동생과 함께 미국 콜로라도 덴버로 입양됐지만 부모에게 성적· 육체적 괴롭힘을 당하다 1 년 만에 구조돼 마이애미로 재입양됐다. 인종차별·폭력 ·낙인에 시달린 끝에 부모마저 이혼해 남매는 흩어졌다. 16 살 때 집을 나와 막노동판 일용직을 전전하며 힘겨운 삶을 이어왔다. 쌍둥이 형은 노숙인이 됐고, 여동생은 2006 년 임신 6개월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다.

"한국에 와 미혼모 아이들이 입양 아동의 90%를 차지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국외 입양이 너무 쉬워서죠.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탓이 큽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하고, 경제발전도 높이 사고 감탄합니다. 그에 걸맞게 싱글맘과 그 자녀들의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고 '가족 보존'을 지원해 국격을 높이기 바랍니다."(마이클 문)

최씨는 아들을 직접 키우기 위해 주위 사람들과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아이 아빠에게는 아이를 만나줄 것을 요구했고, 미혼모를 배제하고 분리시키는 지역과 학교 등에 매순간 온힘으로 맞서며 살아왔다.

최씨는 아이를 키워보니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저는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혼모의 모성은 무시해요. 젊고 열심히 일하는데, 모성의 욕구를 가지면 안 되는 집단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국가가 싱글맘에게 개입해 임신 때부터 바른 선택을 돕고 상담·양육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는 낳은 사람이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글·사진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32286.html

173

>> 여성신문 _ 2012 년 5 월 18 일자

제 2 회 싱글맘의 날 국제 콘퍼런스 "떳떳하게 금줄 내걸 날 오기를" 싱글맘의 날 제정 후 미혼모 자존감 높아져 싱글맘 가족 권리 보호 필요



11일 열린 제 2 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서 '인간 도서관' 시간이 마련돼 해외입양인과 양육 미혼모들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 했다. ◎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이제 8 살이 된 아들은 왜 아빠 없이 둘이 사냐고 묻는다. 또 미혼모가 뭐냐고 묻는다. 어느 날은 아들이 5 살이라고 속이고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자 아들은 엄마가 아빠랑 안 살아서 목욕탕을 못 간 거라고 길거리에서 펑펑 운다. 그러다가도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면 아들이 '엄마, 엄마하기 힘들지?'라고 나를 토닥인다. 통통한 볼을 내 얼굴에 갖다 대며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고 고사리 손으로 삐뚤빼뚤 '나아(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준다. 매순간 늘 마음이 아프면서 행복하다. (양육 미혼모 최형숙씨)

"나는 두 번 입양됐지만 가족이 없다. 첫 번째 가족에게 1 년 동안 학대를 당하다 구출됐다. 그러나 두 번째 입양 가족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6 살이 되어 스스로 살기

위해 도망쳤다. 미국 어디를 가도 집이 없었고 인종차별에 부닥쳤다. 1980 년대 미국으로 함께 입양된 여동생은 몇 년 전 미국에서 임신 6 개월의 몸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고, 쌍둥이 남동생은 미국에서 마약중독자로 거리 생활을 하고 있다."(해외입양인 마이클 문)

싱글맘, 해외입양인들은 자신이 겪은 사회적 차별, 상처와 고통, 성숙 등을 담은 삶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들은 살아있는 '책'이 되어 대중과 마주하는 '인간 도서관' 자리를 마련해 힘들지만 아이를 키우는 보람, 자신이 겪은 해외입양의 폐해를 꼬집었다.

'인간 도서관'이 열린 곳은 지난 11 일 제 2 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콘퍼런스 현장이다. 올해 싱글맘의 날 행사는 '새롭게 쓰는 한국의 모성권과 아동인권: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 권리 보호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콘퍼런스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한부모연합, 뿌리의집이 공동 주최했다.

성글맘의 날은 지난해 5월 11일 시작됐다. 해외입양인을 지원하는 뿌리의집 김도현 목사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정책의 변화를 이끌고자 싱글맘의 날을 제정했다"고 했다. 싱글맘의 날이 제정된 지 1 년.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하면 사회는 낙태 아니면 입양을 권했다"며 "싱글맘의 날이 생긴 것 자체로 미혼모들의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공개적으로 '금줄'을 달아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와 아기를 환영하는 의미를 전달했다. 감은남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울산지부 대표는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지 절대 숨겨야 하는 이들이 아니다"며 "출산을 앞둔 '미스맘'들은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축복 받아야 할 생명 탄생의 순간을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을 위해 떳떳하게 금줄을 내걸 날이 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미혼모와 아동의 권리선언을 발표했다. 권리선언에는 엄마로서 자녀를 지킬 수 있는 모성권 보장, 미혼모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이용 현실화,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비양육 미혼부의 법적 책임 강화, 미혼모 반편견 교육 실시로 인식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입양특례법' 개정을 주도했던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임기를 마치자 인재근 19 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최 의원이 하던 역할을 이어받아 싱글맘 권리 찾기와 해외입양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김희선 기자 (hskim307@womennews.co.kr)

출처 > <u>http://www.womennews.co.kr/news/53575</u>

>> 프레시안 _ 2012 년 6 월 10 일자

[해외입양인, 말걸기] "이제, 당신과 나를 위한 금줄을 겁니다"

"금줄은 당신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제인 정 트렌카 작가

지난 5 월 11 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 2 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새롭게 쓰는 아동인권과 모성권: 입양을 넘어 싱글맘 가족보호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 중의 하나로 '금줄걸기 세러머니'가 있었다. 우리 조상들은 아이를 출산하면 대문에 금줄을 걸었다. 생명탄생을 온 동네에 알리고, 마을 사람들 혹은 외인들에게 스무하루 동안 무단출입을 삼가줄 것을 부탁하는 생명경외의 표지였다. 생명탄생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경외했던 이 금줄걸기의 상징적 행위 안에 우리 사회의 재생산체계는 고이 간직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허나 6.25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외로 입양 보내어진 20 만 해외입양인들의 출생과 이들을 출산한 10 만이 넘는 미혼모 여성들의 출산은 수치와 비밀, 눈물과 결별로 얼룩진 일이었다. 그들의 출생과 출산을 위해 금줄은 걸리지 못했다. 제 2 회 싱글맘의 날 준비위원회는 이런 의미에서 '금줄걸기 세러머니'를 통해 해외입양인들이 출생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미혼모들의 출산을 위로하고자 했다. 아래의 기고문 '금줄은 당신에게로 가는 길입니다'는 해외입양인 작가 제인 정 트렌카가 이 세레머니를 위해 쓴 낭독문이다. 제인 정 트렌카는 이 짧은 문학적 작업을 통해 해외입양과 미혼모가 연루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예외적 재생산체계의 한 꼭지여야 할 '입양지지 담론'의 속살에 깃든 아픔과 슬픔과 동경이 어떠한지를 엿보도록 초대하고 있다. 제인 정 트렌카가 영문으로 쓴 글을 뿌리의 집 자원활동가인 최우석 씨가 번역했다. 편집자

생일이란 것이, 선물을 받고 케이크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생일을 축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여권에 있는 생일이 진짜 제가 태어난 날인지 아닌지조차 모릅니다.

입양기관은 제가 발견되었던 파출소가 이사를 갔고 그 당시 모든 기록들이 분실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거리의 주소가 바뀌었다고 하고 저의 어머니가 미혼이었다고 하는데 부모님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태어난 날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그날은 제가 아는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날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곤 제 배꼽 뿐입니다. 입양기관이 말하길 제가 발견되었을 때 배꼽에 탯줄이 붙어있었고 그것을 보고 제 생일을 추측했다고 합니다.

어림잡은 제 생일에 제 친구들은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삼겹살과 소주를 먹고 홍대 클럽에 가서 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생일은 축하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제 생일은 생각을 하는 날입니다. 요즘 저는 제 생일에 걷습니다.

생일 아침에, 저는 가장 편한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 잠근 문을 뒤로 하고 걷기 시작합니다. 비록 제가 태어난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을

찾기 위해 걷습니다. 저는 어디서 어머니를 찾아야 할지 알려주는 어머니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서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가끔 저는 버스를 타고 아무 정류장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식당 아줌마가 요리를 하고 테이블을 닦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곤 이 아줌마가 혹시 내 엄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 엄마인지 알아볼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주문한 음식을 먹는 시간 동안 이 식당이 나의 어머니의 부엌이고 제 일상적 존재에 너무 익숙해져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저를 내버려두는 이 아줌마가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아줌마와 함께 TV를 봅니다. 잠시 후 저는 밖으로 나와 다시 걷습니다.



저는 사람으로 붐비는 지하철을 탑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있는 젊고 아리따운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러고는 그 아기가 저이고 젊고 아리따운 여성이 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모유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제 어머니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어 쉽니다. 저는 이미 태어났고 어머니의 몸 밖에 살고 있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만들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성인이 된 뒤에도 제가 태어났던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고, 제가 아이를 가지면 손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만 이 여성은 제 또래의 여성이고 그녀는 제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녀의 아이가 아닙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문이 열리고, 저는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저는 계단을 걸어 올라와 거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생일에 제 어머니 또한 저를 생각하며 걷고 있을 거라 상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저와 어머니의 몸이 똑같은 주기로 울리는 종(bell)처럼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그 소리가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저와 어머니가 알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제가 태어난 곳에서 서로를 향해 걸으며 만날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걸어갈 때, 저는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걸어가 들녘과 강을 지나 별이 총총한 밤으로 갈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농부의 작은 오두막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태어난 날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날 어머니의 가족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어머니는 부도덕하고 나쁜 여자로 그리고 저는 저의 어머니 말고는 어느 누구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남자의 쓸모없는 후손으로 여겨졌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겨울에 태어났고, 당시 어머니는 양수가 터져 치마의 뒤쪽이 젖은 채로 그녀가 사는 마을에서 강을 향해 걸었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모의 집에 갔으나 이모는 이모부가 곧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하며 제 어머니를 폐가가 되어버린 오두막에 숨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치 없는 아이를 출산하는 부정한 여자의 산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제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어머니는 제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중한 아기. 이 세상에서 저는 어머니를 사랑한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오두막에서 이틀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저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또다시 보석같이 맑은 밤이 찾아왔고 어머니는 제가 추위에 죽을 거라는 두려움에 점점 미쳐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는 결심, 아니 생존을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목도리로 단단히 싸맨 다음 이웃마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걸음을 재촉하기 위해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별을 큰 소리로 헤아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어머니는 한밤중에 저를 파출소 문 옆에 두고, 제 쪽을 보기 위해 길 건너편의 담 뒤에 숨었습니다. 저는 곧 울음을 터뜨렸고 한 경찰관이 나와 저를 파출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제가 태어난 날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죠. 할머니가 제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지도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엄마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았고 제가 태어났고 당신이 엄마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금줄도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엄마와 나를 위한 금줄을 걸으려 합니다. 금줄의 한쪽 끝은 제가 걷기 시작하는 곳이고 다른 쪽 끝은 어머니가 걷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우리 금줄의 한가운데서 만나서 엄마와 딸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엄마예요!

우리가 작은 오두막에서 만났을 때,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했을 테지요. "넌 나를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지만 나는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안단다. 나는 그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데도 갈 곳 없는 그런 여자일 뿐이야"

저는 당신께 이렇게 답할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말은 틀렸어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어요. 당신보다 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한순간도 나의 엄마가 되기를 그치지 않은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The Geumjul is a Path to You

Script by Jane Jeong Trenka on the occassion of the 2nd Single Moms' Day

From the time that I have understood that the meaning of a birthday is more than receiving gifts and eating cake, I have never liked to celebrate my birthday. Actually, I don't even know if my passport birthday is the day I was really born.

The adoption agency says that the police box where I was found has moved, and all the records from that time were lost. They say that the addresses of the streets have changed. My parents' names are unknown, though they say my mother was unmarried.

So I have no story of the day I was born; it is a day that no one I know remembers. All I have remaining of that day is my navel. They say that my umbilical cord was still attached when I was found, so that is how they estimated my birthday.

My estimated birthday. My friends want to take me out on that day. They want to eat samgyupsal and soju together, then go clubbing in Hongdae. But for me, my birthday is a day not for celebration. It's a day for reflection. These days, I spend my birthday walking.

In the morning, I put on my most comfortable shoes. I lock the door behind me, and just start walking. I am walking to find the place where I was born, even though I don't know exactly where it is. I don't listen to music because I am listening for my mother's whisper, telling me where to find her.

Sometimes I ride a bus and get off at any stop. I go inside a restaurant and order a meal, and I watch the ajumma cooking and wiping tables. I wonder if she is my mother. But there is no sign of recognition. I watch TV with the ajumma while I eat, pretending for a few minutes that this little restaurant is my mother's kitchen, and this ajumma is my mother, ignoring me now because she is so used to my daily presence. After awhile, I go outside again, and walk.

I take a crowded subway. I let a pretty young woman carrying her baby take my seat. I pretend that this baby is me, and the pretty young woman is my mother. My head is resting on her chest, where I can hear her heart, and I can smell the traces of her milk from the last time I fed. Even though I have already been born and live outside my mother, she is still making me. How amazing my mother is. She will tell me stories of the day I was born until I am an adult, and when I have my own babies, she will tell her grandchildren the stories again.

I like to imagine this, but this woman is a woman my own age. She is not my mother. And I am not her baby. At the next stop, the door opens, and I get off the subway. I go up the stairs, onto the street, and start walking.

I like to imagine that on the day of my birth, my mother is also thinking of me, and she is also walking. I like to imagine that our bodies are ringing like bells, at the same frequency, and we just have to listen to the song coming from our own bodies. If we find the song that matches, we will one day walk to each other, meeting at the place where I was born.

When I walk to my mother, I might walk out of Seoul into the countryside, past fields and rivers and into a starry night. My mother will be waiting for me, inside a small
farmer's shack, and she will tell me all about the day that I was born.

She will tell me that on that day, she was not allowed inside her family's home, nor anyone else's home. She was considered to be an immoral and bad woman. I was considered to be the worthless offspring of a man in whom no one could find any value, except my mother, in the times when he was around.

She will tell me that on the winter day I was born, she had walked up the river from her village, the back of her skirt soaking wet from her water that had broken. She came to the home of her aunt. Her aunt said her husband would be home soon, so she hid my mother in a farmer's shack that had been abandoned. No one wants to see the labor pains of a corrupted woman giving birth to a worthless child. But when my mother saw my face for the first time, she knew I was a pretty and lovable baby. Her own precious baby. In the whole world, I was the only person who loved her. I did; I adored her. She was my whole world.

We stayed together in the shack for two days, she holding me next to her body to keep me warm. Another crystal clear night came, and gradually she became crazy from fear that I would die from the cold. Then, she did not so much make a decision as an act of survival.

She swaddled me in her scarf and started walking toward the next village. She counted the stars out loud with each step, to force herself to keep walking. One step, two steps, three. Under the blanket of night, she placed me near the door of a police box, and then hid herself behind a wall on the other side of the street to watch. It was not long before I cried. A policeman came out, then carried me inside.

Dear umma, on the day that I was born, no one was happy. No grandmother cut my umbilical cord. No grandfather gave me a name. No one made miyeok guk for you. No one hung a geumjul for me, announcing that I exist, declaring your motherhood.

So I will now hang a geumjul for both of us. One end is the place where I started walking, and the other is the place where you started walking. Let us meet in the middle of this geumjul, and together give birth to a new relationship as mother and daughter. I exist! I am your daughter! And you are my beloved mother!

When we meet in the little shack, you might say to me, "You were the only person who loved me, but I knew that someone better than me could love you. I was just a woman

with nothing to give, and nowhere to go."

I will reply to you, "No, umma you are wrong. No one is better than you. No one could love me more than you. And how much I still love you -- you who have never stopped being my mother."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607110401

>> 오마이뉴스 _ 2012 년 5 월 7 일자

언론과 인터뷰 후 잘린 미혼모...너무하네요

[주장] 아직도 침해받는 모성권과 아동인권...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인 정 트렌카(TRACK 대표)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입양인이며 해외입양인모임(TRACK)의 대표입니다. 해외입양인모임은 한국미혼모 단체와 함께 해외입양인들과 미혼모들의 모성권 보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외입양인들과 미혼모들은 오는 11 일 '새롭게 쓰는 모성권과 아동인권'이라는 주제로 '제2회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국에선 5 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들과 정부가 한국여성의 모성권과 이동 인권에 좀 더 관심을 가져 모성권과 아동인권이 보호받는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글을 씁니다.

올해 1 월, 20 세 미혼 임신여성이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단체는 미혼모가족이 한국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이 미혼모는 3 일 동안 음식을 못 먹었고 거주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태아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혼모가족협회에는 미혼모를 위한 방이 두 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엔 벌써 다른 미혼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없었지요. 더구나 이 불쌍한 미혼 임신여성에게 의료지원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가족협회는 그 미혼모에게 홀트입양기관에 가보라고 했답니다. 저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있는 친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성권과 아동인권 관련하여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준한 국제협약은 지켜야한다

한국은 1984 년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입법, 법률개정, 규정, 관습과 실천 등의 조치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부모로서 동등한 권리를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 12 조는 "비준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해 국제협약은 "가족에 대해 최대한 넓게 보호와 도움이 따라야 하며,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양인과 미혼모 단체들은 편부모와 아동도 가족단위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1990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만약 한국정부가 이 국제협약의 의무사항을 지지한다면, 임신한 여성의 결혼여부와 무관하게 적절한 공적 서비스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미혼모들은 기초생활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설국제입양기관에 도움을 요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극소수의 미혼모를 위한 시설(특히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시설)은 그 수요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어떤 캠페인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미혼모들은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1 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차별지수 중 여성 경제참여의 분야에서 한국은 135 개국 중에서 117 위, 전체적 양성평균지수에서 107 위를 차지했습니다. 고수입 국가 범주에서, 단지 3개국만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미혼모가 기르는 아동에 대한 차별

미혼모 아동도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답니다. 제 친구인 미혼모가족협회의 한 회원은 한 기혼여성이 유치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만약 내 아이가 미혼모 '것'과 같은 학교를 가면 우리 아이를 다른 학교에 보낼 거야." 그러면서 그 기혼여성은 미혼모 아동을 아이가 아닌 '것'으로 불렀답니다. 이러한 차별 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2 조 2 항 위반이며 이 협약 2 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준국은 아동이 부모의 행위나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03 년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가 내놓은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는 지금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권고에 대해 협약당사국(한국정부) 보고서는 부족하게 다루었다. 특별히 여자아이, 장애아, 미혼모 아동에 대한 차별을 위한 공적교육과 캠페인이 부족하다. 또한 미혼모 아동과 장애아동의 차별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장애아와 아동의 출생 또는 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미혼모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위반

한국의 직장도 미혼모에 대한 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아는 미혼모가족협의 회원인 한 여성은 언론과 인터뷰를 한 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되었습니다. 다른 미혼모들도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고용주가 재계약을 안 하고 해고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때문에 스스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미혼모들이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혼모에 대한 차별은 여성차별철폐국제협약 11 조를 위반 한 것으로 11 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한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가족이 없거나 전 가족이 빈곤상태가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종종 가족과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못 받습니다. 더구나 이런 미혼모들은 아이 아빠로부터도 체계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내도록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혼모 자신이 양육비를 지원받는데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이 아빠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학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미혼모는 아이 아빠에게 감히 양육비를 지원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18 조는 부모가 아동에 대해 공동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 년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보낸 최종 견해는 지금도 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의 많은 수의 이혼모와 미혼모가 법적으로 보장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011 년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그 최종견해를 이렇게 명시했답니다.

"우리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당사국(한국)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 우려 한다. 미혼모, 특별히 10대 미혼모, 경우는 국가지원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다."

국제인권지침에 따라 한국정부의 미혼모와 그 아동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우선순위는 현재와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의 아동 당 한 달 지원금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집단가정시설 107 만 원, 고아시설 105 만 원, 양육시설 25 만 원, 국내입양부모 10 만 원, 미혼모나 이혼부모 5 만 원.

즉 현재 한국 정부는 친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울 때 지원금을 가장 적게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이를 생활고로 친엄마가 못 키우고 고아원이나 집단시설에 갖다 주면 친엄마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20 배 이상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아기는 친엄마 품에서 자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모르시나요? 그런데 현재 한국정부의 지원금 구조는 아기를 엄마 품으로 빼앗아서 시설에 갖다 주도록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정말 너무 하지 않나요?

시설에 보내지는 아이들

이렇게 친엄마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은 아동을 시설에 보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국입양홍보회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2만 명의 아동이 280개 시설에서 살고 있고 이 아동 부모의 80%는 이혼했답니다. 그런데 한국국회는 아동의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12 월 아동을 3 년 동안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친권을 자동 종료시켰습니다.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별한 가족이 재회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보다는 가족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아동이 시설에 살고 있는 한 시설은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시설의 원장님들이 그 아동이 부모나 가족과 재회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까요?

유엔아동권리협약 25 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국은 아동이 보호나 신체적, 정신적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해 양육 지정된 경우 해당아동은 치료 상황을 비롯해 양육 지정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위원회는 2011 년 최종견해를 통해 위 협약과 관련한 한국정부 조치에 대하여 "시설에 대한 평가가 행정 관리만 있고 양육의 질, 기술, 전문가 훈련, 아동에 대한 대우를 평가하지 않는 것을 우려 한다"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동의 부모 찾기 제도가 결여 된 것"에 우려를 표명 했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 조 2 항은 미혼모아동에 대한 차별철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철폐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저는 현재의 학교폭력반대 캠페인에 사회권리침해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에게 미혼모 자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다음 조항을 한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어른들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조 아동과 그 부모에 대한 차별 반대 ▲7 조 아동의 권리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을 권리 ▲8 조 불법 비밀입양과 합법적 입양 두 경우 다 아동과 그 친부모에 대한 원래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할 것 ▲9 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20 조 아동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보조 받을 수 있는 권리 ▲35 조 아동이 납치, 매매, 밀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그것입니다.

2003 년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유감을 표명했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한국보고서를 검토 후 최종견해로 제기한 권고는 한국에서 부족하게 다루어졌다. 특별히 (a) 비준유보에 대한 철회 (b) 여아, 장애아, 미혼모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공공교육 캠페인 발전 부족."

저는 한국정부가 미혼모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캠페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2009년 권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입양특례법 5 항도 "정부는 미혼모와 그 아동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어야 하고 '입양주간'에 소비하는 정부예산만큼 이러한 캠페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1 년 유엔아동권리협약위원회도 한국정부에게 보내는 최종견해를 통해 "10 대 임신모를 포함한 미혼모에게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도 정부는 노동부의 감독기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편부모가족복지법과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은 모든 미혼모들에게 최소 생활비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문명국은 대기업만 잘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문명국은 모성권과 아동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는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이 그 반만년 역사와 찬란한 문화에 걸맞게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서도 국제협약이 지적한 권고를 지키는 그런 국격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29349&CMPT_CD=P0001

>> CTS 뉴스 _ 2012 년 5 월 9 일자

"멀고도 험한 길" 싱글맘과 입양 기획



앵커 : '입양' 우리사회가 사랑을 가지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입양될 아이들을 실제 부모들이 직접 키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사회
현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최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 해외입양인이자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제인 정 트렌카, 19 살 때 양아버지에게 살해될 뻔 했던 그녀는 이후 자아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입양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삶을

결심하고, 그들의 삶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인 정 트렌카 /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대표 일반적으로 입양인들은 그들 가족과 제대로 융화되지 못한다는 점을 힘들어 합니다. 또한 양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많죠.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기는 약 900 여명, 수년째 OECD 국가 중 해외입양아동 수 1 위라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친생가족 보호가 중심이 아닌 아동보호기관과 입양 중심의 정부 지원이 문제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도현 원장 / 뿌리의집

친생가족 보호 움직임은 지난 2007 년 TRACK 과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이 함께 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싱글맘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가 하면 입양 촉진이 중심이었던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인식 변화와 부족한 관심 등 가야할 길이 멀고도 험합니다. 김도현 원장 / 뿌리의집 제인 정 트렌카 /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대표 더 많은 정책적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입양아의 숫자에 대한 관심보다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앵커 :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현실, 우리사회의 미혼모에 관한 현실과 대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최기영 기자, 앞서 소개한 것처럼 여러 단체들의 노력으로 법률도 개정됐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 네. 바로 '입양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개정작업은 2008 년 가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그 동안 공청회와 개정안 발의, 심의를 거쳐 오랜 노력 끝에 오는 8 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요. 핵심은 입양을 촉진하는 것이 중심이었던 것에서 입양을 보다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입니다.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입양이 행정기관 신고제가 아닌 가정법원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입양허가 심리를 위해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모성의 권리 보장도 이뤄졌는데요. 입양숙려제를 도입해서 산모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하지 않도록 출산 후 7 일 동안은 입양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입양을 보낸 친생부모의 사생활 침해와 충돌했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입양인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친생부모의 생물학적 정보가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는 입양부모의 동의없이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김도현 원장 / 뿌리의집 ... 기여한 매우 의미있는 법 개정이었다

앵커 : 개정안을 보니까 아동의 인권도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도 좀 더 강화될 것 같네요.

기자 :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쪽 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입양 생모의 92%에 달하는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싱글맘이 겪는 어려움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62.8%를 차지한 것이 바로 경제적 문제인데요.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미혼모 자활대책은 미비

지난 2009 년 아들을 출산한 미연씨, 임신 초기 아이를 낳아 함께 기르자고 했던 생부는 출산 7 개월 만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직업도 있고, 집도 있다던 생부의 말은 모두 거짓말로 들통났고, 어렵게 찾아간 시아버지는 법대로 하고 싶으면 하라며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미혼모가 돼버린 미연씨에게 더 큰 상처가 됐던 건 주변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김미연(가명) / 미혼모

그렇게 친척들이 등을 돌릴지 몰랐고, 친구들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할지도 몰랐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모자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연씨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월 33 만원, 미혼모가 양육을 포기한 채 고아원에 아이를 보냈을 때 정부가 105 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김미연(가명) / 미혼모 기관쪽에 주는 금액을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한테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더 밝고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불투명한 결과를 놓고 1 년 6 개월째 진행중인 생부와의 양육비 법률소송은 미연씨를 더욱 지치게 할 뿐입니다. 구김없이 자라주는 네 살배기 아들이 삶의 희망이라는 그녀는 무엇보다 미혼모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날카로운 눈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미연(가명) / 미혼모 모두 인식의 차이잖아요. (엄마로서) 양육을 해야 하는 부분을 당연히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저희를 '미혼모'라는 어떤 주홍글씨처럼,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생부는 거짓말, 시아버지는 문전박대 주변인들 태도변화에 더 큰 상처 김미연(가명) / 미혼모 그렇게 친척들이 등을 돌릴지 몰랐고, 친구들이 나한테 연락을 안 할지도 몰랐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부 지원, 기관·입양에 집중 김미연(가명) / 미혼모 기관쪽에 주는 금액을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한테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더 밝고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지연되는 법률 소송 도움안 돼 영상취재 전상민 김미연(가명) / 미혼모 모두 인식의 차이잖아요. (엄마로서) 양육을 해야 하는 부분을 당연히 책임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저희를 '미혼모'라는 어떤 주홍글씨처럼,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 사례를 접하고 보니까 이 시대의 싱글맘들이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정말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기자 : 네, 보신 것처럼 싱글맘에 대한 정부의 열악한 재정지원도 문제지만 양육을 함께 해나가야 할 생부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현실도 문젭니다. 앞 선 사례와 같이 미혼모의 85.4%, 열명 중 8 명 이상이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송 절차의 간소화와 권고가 아닌 강력한 제재 형식으로서의 양육비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과젭니다.

미혼모 85.4% 양육비 못 받아

앵커 : 그렇군요. 이런 현실 가운데 한국교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 물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35 개의 미혼모 지원시설 중에 17 개가 입양기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2015 년부터 해당 17 개 시설은 입양기관 이외의 다른 주체가 운영하지 않으면 시설을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뿌리의집 김도현 원장은 한국교회가 나서서 미혼모 지원 시설의 주체가 돼 준다면 낮은 자의 마음으로 미혼모의 상처를 덮어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입양기관, 미혼모 시설 운영 못해

김도현 원장 / 뿌리의집 ... 즐거움을 가지고 그 짐을 짊어져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기자 : 최근 몇 년 사이 출산을 장려하는 각종 정책과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 몸으로 낳은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는 것에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여전히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앵커 :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최기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기자

출처 > http://www.cts.tv/news/news_view.asp?PID=P368&DPID=135759

>> CTS 뉴스 _ 2012 년 5 월 11 일자

"축복받고 싶어요"제 2 회 싱글맘의 날



앵커 : 오늘은 제 7 회 입양의 날인데요. 입양의 날의 맞아 입양의 당위성과 함께 낳은 어머니가 자식을 직접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움직임도 왕성해 지고 있습니다.

앵커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사회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기영 기잡니다.

감은남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울산지부 대표

우린 또 하나의 가족이지 절대 숨겨야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출산을 앞둔 미혼모들은 아이를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생명탄생의 축복을 숨기지도 않아야 합니다. 산고의 아픔을 위로하고 생명 탄생을 축복하는 금줄이 가야금 연주에 맞춰 대문기둥에 걸립니다. 축하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이 땅의 미혼모와 양육아동을 위해섭니다. 5 월 11 일을 싱글맘의 날로 기념하고, 자기의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인 정 트렌카 /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대표 사회가 미혼모를 대하는 방식이 문제이지, 미혼모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미혼모들의 친구이자 동료, 투쟁의 지지자로 함께하기로 다짐합시다.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 집 주최로 열린 제 2 회 싱글맘의 날 국제 컨퍼런스에는 여성단체와 아이를 입양 보낸 어머니, 국내외 입양인 등 150 여명이 참가해 모성권과 아동인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양육미혼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자녀의 인권을 위한 정책 방향,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 노력 등 실질적인 방법들이 모색됐습니다.

최형숙 팀장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것처럼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에 대한 반편견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입양인들이 다른 인종 사회에서 살면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고통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 보는 책도 발간됐습니다. 해외로 입양된 25 명과 관련 학자 4 명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인종 간 입양의 사회학'은 입양이 자비로운 선행이라는 측면만 강조돼왔던 지난날을 돌아보고, 인식개선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인 정 트렌카 /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TRACK) 대표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친생 가족과 재회할 때 그 과정이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책 발간은 선험자들의 경험을 나누는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가족의 해체와 상실의 아픔을 줄여나가자는 희망의 목소리가 국가와 사회에 가족의 품같은 따뜻한 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CTS 최기영입니다.

최기영 기자

출처 > http://www.cts.tv/news/news_view.asp?PID=P368&DPID=135844

>> 서울신문 _ 2012 년 5 월 11 일자

[5·11 입양의 날] 입양아 '고독'을 말하다

해외입양인 모임 '트랙'의 트렌카 대표 "내 아픔 양부모 100% 이해 못해... 좋은 입양은 없어요 차선택일 뿐"

암울했던 시절인 1972 년 제인 정 트렌카(40)는 생후 6 개월 만에 언니와 함께 미국에 입양됐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정경아라는 한국 이름은 몇 번 불리지도 못한 채 지워졌다.

입양 기관은 어머니에게 "변호사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랄 수 있다."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미국인 양아버지는 미네소타의 금속공장에 다니는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였다. 양어머니는 가끔씩 공장에 나가거나 비서일을 했다. 무엇보다 양부모는 입양된 딸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다섯 살 때였다. 유치원에 특별한 물건을 들고 가서 설명하는 행사가 있었다. 입양을 보내며 친어머니가 넣어 준 한복이 생각났다.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한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옷은요, …" 말문이 막혔다. 왜 그 한복이 특별한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어디에서 온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친어머니가 나를 키우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죠."

미국인 어머니는 트렌카의 질문에 침묵했다. 어머니가 등을 돌려 걸어나가는 순간 그는 입양의 아픔을 양부모에게는 결코 털어놓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부모와 갈등을 겪으며 정체성을 고민하던 트렌카는 2008 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트랙(TRACK)을 시작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해외입양인 수십명이 모였다. 이들에게



'트랙'의 트렌카 대표

입양은 아픈 기억이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입양의 날'을 '싱글맘의 날'로 바꾸자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상처만 남기는 입양을 지원할 게 아니라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할 수 있도록 두리모(미혼모)를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한국인들은 흔히 아이가 어느 문화든 잘 적응할 거라고 믿죠. 어리니까요. 하지만 그건 판타지에 불과해요" 트렌카는 단호하게 말한다.

입양인의 관점에서 트랙이 요구하는 건 두리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두리모가 아이를 포기하는 이유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고, 국내 입양은 그 다음이다. 해외 입양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는 "목표는 고아원과 입양이 사라지는 일"이라고 말한다.

트랙은 해외 입양인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뿌리의 집'과 함께 11 일 '싱글맘의 날 국제 콘퍼런스'를 갖는다. 그는 말한다. "좋은 입양이란 없어요. 차선의 선택일 뿐이지."

배경헌기자 <u>baenim@seoul.co.kr</u>

출처 > <u>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11009010</u>

>> SBS 8시 뉴스 _ 2012 년 5 월 11 일자

"내 뿌리는 어디에..." 한국행 입양인 한 해 1600 명

<앵커>

오늘(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외국에 입양됐다가 뿌리를 찾아서 고국을 다시 찾는 사람이 한 해 1,6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정부 지원은 이 땅을 떠날 때나 돌아올 때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신승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빌뇌프 씨.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된 뒤 프랑스 유명 호텔의 요리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혈육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넉 달 전 직장을 버리고 고국을 찾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고모를 어렵게 찾았지만 끝내 친부모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찾겠다는 그의 열망엔 변함이 없습니다.

[마티유 빌뇌프/27세, 프랑스 입양 : 친부모를 찾는 일은 오래전부터 기대해 온 것입니다. 계속 노력할 거예요. (친부모를 만나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나의 뿌리는 어디인지, 형제, 자매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국으로 입양됐다가 한국을 찾은 사람은 해마다 1,600 명이나 됩니다.

뿌리를 찾아 일시 귀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양 가정과 불화를 일으켜 한국에 정착하러 온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서매튜/34세, 미국 입양 :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불안정한 것들 뿐입니다. 직장을 구하느라 한국어를 배울 여유도 없습니다.]

정부의 해외 입양인 지원은 대부분 친부모 찾기나 고국 방문 등 1 회성 행사에 국한돼 있습니다.

통역이나 법률 서비스 등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기 체류와 정착을 원하는 입양인에 대한 일자리나 주거 지원 사업은 민간부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김도현/해외입양인 쉼터 '뿌리의 집' 운영자 : 한 국가가 그 나라에 태어나는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지난 60년 동안 외국에 입양된 한국인은 16만 5000여 명.

뿌리를 찾아 고국으로 향하는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아쉽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황인석, 영상편집 : 박선수)

출처 > <u>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186732</u>

>> 노컷뉴스 _ 2012 년 5 월 3 일자

"TV 입양 광고? 미혼모가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해외입양인지원센터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



▲해외입양인지원센터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자료사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5월 2일 (월)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u>교수</u>)
 ■ 출 연 : 해외입양인지원센터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

▶ 정관용> 탤런트 신애라 씨가 나와서 입양 대기 중인 서른 명의 아이들, 한명씩 소개하고 아이의 특징과 입양기관 연락처를 담아서 방송에 내보낸다,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해외입양인 지원센터 '뿌리의 집'을 운영하고 계신 김도현 목사 연결해봅니다. 김 목사님?

▷김도현>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정부는 지금 이걸 통해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김도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김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기본적인 입장이 어떻습니까?

▷김도현> 기본적으로 정말 보기에 딱하고 민망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정상 가정도 출산을 꺼리는 상황인데, 정부가 나서서 가정들에게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아이들의 입양을 부탁하는 이런 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방에다가 억지로 들이밀면서 아이 좀 키워 달라, 이런 부탁하는 꼴이 됐지요.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은 일단 좋은 거잖아요?

▷김도현>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친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먼저 잘 찾아내서.

▶정관용> 물론이지요. 그러나.

▷김도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미혼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예 입양 대상 아동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우선 제일 우선 좋은 거고, 그러나 불가피하게 입양 대상 아동들이 생기게 되면 국내 입양이 그래도 나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김도현> 물론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국내 입양, 입양은 참 훌륭한 것입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이런 식의 홍보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건데, 아이들의 얼굴이 나온다는 게 문제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김도현>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결국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아이를 국민들에게 입양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결국 정부 정책의 실패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사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이 좀 키워달라고 부탁하는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의 실패를 먼저 고백하고.

▶ 정관용> 어떤 정책이 실패한 겁니까, 특히?

▷김도현>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정부가 입양이 답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요. 그것보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아이가 출산될 때, 그 출산하는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다 책임 있고 계획 있는 방법으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지난 1999년,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외를 물론하고 입양 간 아동이 전체 4만 9,283 명인데, 미혼모에게서 낳은 아이가 4만 3,763 명입니다.

최근 10 년간의 통계는 거의 90%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미혼모에게서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계획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출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문제를 느끼고, 특별히 이 경우에 4 만 3 천명의 아이들에 해당하는 미혼모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더.

▶ 정관용> 근본적인?

▷ 김도현> 계획 있는 임신이 가능하도록 사회 속에 캠페인을 충분히 좀 하고, 그런 것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국민 앞에서 정책의 실패를 고백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관용> 그리고 몇 년 전, 2007 년인가부터 해외 입양 쿼터제가 도입되었다고 그러던데.

▷김도현> 그렇습니다.

그게 주로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라고 하는 거를 추진하면서 5 개월 동안 국내 입양을 먼저 알아보고, 그게 없는 경우에 해외 입양을 보낸다, 라고 하는 게 아마 지금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가지 못한 채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국민에게 부탁해야 할 처지가 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순 없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친가족, 미혼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었으면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가 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도 정책의 실패가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입양 수는 10%씩 매년마다 줄여나간다면서요?

▷김도현> 예,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과연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러냐. 아직 그렇게까지는... 해외 입양은 매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줄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조금씩 줄이는 그런 정도이지 10%가 눈에 보이게 확확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나저나 국내 입양이 조금 늘고는 있습니까? 오히려 줄었다는 이야기가.

▷김도현> 국내 입양도 실제로는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국내 입양이든 해외 입양이든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만 한, 그 전해에 비해서 200 명 정도 올라갔는데요, 저희는 그 점은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어떤 거지요?

▷김도현>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하면, 갑자기 작년에 입양 가야할 아동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저희는 아직 통계가 없지만은, 작년에 그 낙태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정관용> 예, 논란이 됐습니다.

▷김도현> 그런데 그 당시에 입양, 미혼모의 집에서 일하는 분들의 말씀으로는 갑자기 아이들이, 미혼모들이 들이닥치고 있다,

▶정관용> 늘어나고 있다?

▷김도현> 예, 그래서 아마 약간 특별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고, 전반적으로는 미혼모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입양 가능한 아동 숫자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참 답답한 일이지요.

▶정관용> 정부는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런 TV 광고를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하겠다. 지금 일단은 케이블 TV, 정부 정책 방송에서만 나갈 예정인데, 장차 공중파도 내보내겠다, 이러는데.

▷김도현> 우선 저희가 생각할 때, 미국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일이 아니라, 특별히 아동 복지에 관한 한, 미국은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모범 국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헤이그 협약이라고 하는 아동 입양에 대한 국제협약도 2 년 전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가입 안 했지만 미국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 예가 아닌데, 그걸 따라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예, 근본적으로는 미혼모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또 만약 생겼다 하더라도 직접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이런 게 더 근본적인 대책들이 되어야 한다?

▷김도현> 그렇습니다. 그런 대책 없이 이렇게 아이들만 텔레비전에 내보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아이들에게 사실 엄마가 있었는데, 방송에 나가는 그림에는 엄마가 없잖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김도현> 그 그림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참 그 속에 감추어진 엄마, 그 엄마가 참 눈에 어릿어릿하지요.

▶ 정관용> 예,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도현> 예, 고맙습니다.

출처 > <u>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92113</u>

>> CBS 라디오 _ 2012 년 5 월 11 일자

2012 년 5월 11일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3부

"입양의 날 말고 싱글맘 데이"

<1 부>

* 있잖아요 미화씨 푸른 해양의 문이 열린다, 여수 엑스포 내일 개막! 생생한 현장의 소리 들어봅니다. ☞ **다시듣기♬** - 미스터 엑스포 조용환 홍보실장

* 여러분이 만난 사람 "문재인 목 잘린 만화 그 후.."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 ☞ **다시듣기♬**

* 원전 주변 지역. 암 발병 높다?

-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백도명 교수 ☞ **다시듣기♬**

<2 부>

* 이 시각 트윗 세상

- 지금 트위터 주요이슈를 살펴봅니다. (위키트리 손기영 기자)

* 부장퀴즈 정답자 전화 연결 🕿

* 미국 광우병 조사단 귀국. ☞ **다시듣기♬** 조사결과를 평가한다. - 가축방역협의회 광우병 분과/ 한우협회 김남배 회장

<3 부>

* 최창호 박사의 금요토크. "최창호의 억울해요" ☞ 다시듣기♬
이번 주 억울한 사연, 억울한 인물ㅜ.ㅜ
최박사가 대신 대변해 드립니다.
1)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재개발로 떠나는 이들이 남긴 유기견이 문제되고 있다는데?

2)"입양의 날 말고 싱글맘 데이"<mark>-</mark> 해외입양에 대한 불편한 진실. ☎ 해외입양아 지원센터 '뿌리의 집' 김도현 원장

출처 >

http://www.cbs.co.kr/radio/pgm/aod_view.asp?pgm=1726&mcd=_REVIEW_&num=211998&page=1

Hosts 주최

KoRoot 뿌리의 집 TRACK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KUMFA 한국미혼모가족협회 Korean Single Parent Alliance Union 한국한부모연합

Sponsors 후원

Korean Women Entrepreneurs Association of Seoul 한국여성경제인연합 서울지회 Lexcode ㈜렉스코드 Min Mi Cake 미엔미 케익 전문점 KUMSN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Donors to Single Moms' Day 싱글맘의 날 후원자

Mindle (Sweden) Hanna Johansson Sunny Jo Korean Adoptees Worldwide Lori Askeland Jayme Hansen Dong-Ho Pietsch Indigo Willing Hege Bolann Kalli Feldman Jessica Walton Margie Andreason Margie Perscheid Kristin Jordan Sun Ju Park Choi Woo-suk Katie Gagel Tobias Hübinette

Jennifer Larson Caitlin Kee Raina Smithley Linda Nguyen Lauri Lee In-Jung Shore Esther Barrett Liz Suk Rosemary Barrett Jessica Rosenberg James Lee Hanna Sofia Johansson Poshora Roettig Christy Eriksen Stacy Schroeder Kevin and Danielle Ost-Vollmers Michelle Lee Jones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tudent Council Y-Gelli/Dongabaem Books - Jiwon Im and Dongwook Cho Eleana Kim Kimberly Hyo-Jung Campell Linda Gregory Ms. Glenda Hills' Millenium Sistahs Inc. Kate O'Flanagan Kelley Bingham 은기수

Volunteers 자원활동가

Ross Oke Per Branevig Laura Klunder Shannon Heit Athena Youm Esther Barrett Tim Yee Amanda Eun-ha Lovell

오기출 Oh Ki-chul

- 김도영 Kim Do-young
- 김수린 Kim Soo-rin
- 김지영 Kim Ji-young
- 김지혜 Kim Ji-hye
- 마서정 Mah Seo-jeong
- 박소원 Park So-won
- 박정은 Park Jeong-eun
- 박지나 Park Ji-na
- 박지혜 Park Ji-hye
- 박효성 Park Hyo-seong
- 안영민 Ahn Young-min
- 윤태영 Yoon Tae-young
- 이미선 Lee Mi-sun
- 이유진 Lee Yoo-jin
- 정윤정 Jeong Yoon-jeong
- 최상지 Choi Sang-ji
- 최 진 Choi Jin
- 김호수 Hosu Kim
- 김자영 Jenny Kim
- 김준수 Kim Jun-soo

Program participants 컨퍼런스 참여자

김도현 Kim Do-hyun 최영희 Choi Young-hee 인재근 In Jae-geun 김영자 Kim Young-ja 조 형 Cho Hyeong 권미혁 Kwon Mi-hyeok 하나 크리스프 Hana Crisp 우현경 Woo Hyun-kyung 고수윤 Ko Su-yoon 장영주 Jang Young-joo 감은남 Gam Eun-nam 존 사가 John Sagar 장 저마틴 Jean Zermatten 바바라 마테라 Barbara Matera 박영미 Park Young-mee 오정수 Oh Jeong-soo 이미정 Lee Mijeong 이양희 Lee Yang-hee 오한숙희 Oh Han Sook-hee 최형숙 Choi Hyoung-sook 김선영 Kim Seon-young 박희경(가명) Park Hee-kyeong 마이클 문 Michael Moon 로라 클런더 Laura Klunder

TRACK monthly donors 트랙의 매월의 후원자

- 고은지 Ko Eun-ji
- 김대업 Kim Dae-eob
- 김병수 Kim Byeong-su
- 김성수 Kim Seong-su
- 김중수 Kim Joong-su
- 그랙 배냐 로드리게스 Greg Peña-Rodrigeuz
- 낸시 토콜라 Nancy S. Tokola
- 노혜련 Noh Hye-ryeon
- 류기홍 Ryu Gi-hong
- 모선영 Mo Seon-yeong
- 목경화 Mok Kyung-hwa
- 박상희 Park Sang-hee
- 박석현 Park Seok-hyun
- 변경섭 Byun Gyeong-seob
- 신연숙 Shin Yeon-sook
- 우승혜 Woo Seung-hye
- 이덕래 Lee Duk-rae
- 이은정 Lee Eun-jeong

이정은 Lee Jeong-eun

이훈구 Lee Hun-gu

장동주 Jang Dong-ju

표영숙 Pyo Young-sook

현근수 Hyun Geun-su

최ㅇㅇ Ms. Choi

최형숙 Choi Hyeong-suk